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구조 기준
2. 농업인의 거주요건
3. 청년농업인의 거주·농업경영 요건
4.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구성 및 자격유지 요건
5.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자격요건
6. 허가 세부기준(별표1)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기준 및 절차
9.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주민설명회 개최 기준
1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신고의 절차 및 수리
11.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승계 기준
12.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13.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기준
14.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신고 및 인정기준
15.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중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의 기준
16. 발전사업자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17. 발전사업자(협동조합, 농업법인)의 수익에 대한 주민환원
18.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조사

- 19.시정명령의 기준 및 절차
- 20.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별표2)
- 21.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기준 및 절차
- 22.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감독·조사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성 자	이름	유소영
	담당부서 (과)	농촌에너지정책과		직급	농업주사보
	국장	강동윤		연락처	044-201-2853
	과장	김소형		이메일	ryuso87@mail.g o.kr

2026. 09. 04.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강동윤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 구조 기준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5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10.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 · 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농지 상부에 장기간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영농 지속 가능성, 농작업자 안전,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은 사후 회복이 곤란하므로 허가 단계에서의 사전 확인이 필요		
	7.규제내용	○ 농지 상부에 설치되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와 태양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및 부대설비의 범위를 정함 ○ 대상 설비에는 태양광 모듈 · 지지,기초구조물 · 고정,추적장치, 인버터 · 접속함 · 전력변환 · 계측,제어,감시 · 보호,차단 · 변압 · 배선 설비, 구내 전기 및 계통연계 설비, 안전 · 방재 · 원격감시 · 유지관리 설비, 농기계 통행 · 배수 · 관수 · 토양보전 · 농작업자 안전시설 등이 포함됨 ○ 설비는 농기계 진입 · 회전 · 작업, 일조 · 통풍 · 배수, 농작업자 안전 및 농지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 ○ 일반 지상형 태양광, 농업생산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설비, 정상 생육 · 농기계 운행 · 용배수 · 농작업자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설비, 원상회복이 곤란한 설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제외함 ○ 구조 · 규격 · 설치간격 · 차광률 · 농기계 통행공간 · 배수,관수 · 안전시설 · 원상회복 가능한 기초,지지구조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이해관계자	태양광 설비 제조·시공업체, 구조·전기 분야 설계사무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폐모듈·폐기물 처리업체,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 주민, 농지 임대인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발전설비의 범위와 최소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실제 허가·운영·사후관리 과정 명확화 ○ (기대효과) 발전설비 및 부대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와 허가·감독기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허가권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보완요구 감소, 농작업자 안전사고 및 인접 농지 피해 민원 예방, 농지 보전과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의 병행 달성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	-	-	
		주요내용	○ (분석방법) 정성분석 — 제도 신설로 발전사업 실적이 없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표준모델과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정량분석이 곤란 ○ (비용) 피규제자에게 지지구조 자재·기초공사비 증가(설비), 구조검토서 및 설계도서 작성(외부서비스), 발전설비계획·산정자료 제출(행정부담) 비용이 발생 ○ (편익) 피규제자에게는 허가 예측가능성 확보에 따른 설계 재작업·보완요구 감소, 피규제자 이외 기업에는 설계·시공·구조검토 수요 발생, 일반			

			국민에게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 인접 농지 영농 보호, 농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편익이 발생 ○ (종합) 비용은 개별 사업자의 설계·시공 단계에 한정되는 반면 편익은 농지 보전과 식량 생산 기반 유지라는 회복 불가능한 가치에 관한 것으로,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행		44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70101~20291231		3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구조 기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어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2조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와 태양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태양광 모듈, 지지구조물, 기초구조물 및 모듈의 고정·추적 장치 2. 인버터, 접속함, 전력변환장치, 계측·제어·감시장치, 보호·차단장치, 변압설비 및 배선 설비 3. 발전전력을 송전 또는 배전하기 위한 구내 전기설비 및 계통연계 설비 4.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방재, 원격감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 5. 발전설비와 일체로 설치되는 농기계 통행, 배수, 관수, 토양보전 및 농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농업생산활동의 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농기계의 진입·회전·작업, 일조·통풍·배수, 농작업자의 안전 및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로 보지 않는다. 1. 농업생산활동과 독립하여 농지 지상에 설치되는 일반 지상형 태양광 발전설비 2. 지표면을 태양광 모듈·건축물 또는 불투수성 구조물 등으로 덮어 농업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설비 3. 농작물의 정상적인 생육, 농기계 운행, 농업용수의 공급·배수 또는 농작업자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설비

현 행	개 정 안
	4. 발전사업 종료 또는 허가취소 시 일반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원상회복하기 곤란한 기초·지지구조를 갖춘 설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발전설비의 구조·규격, 설치 간격, 차광률, 농기계 통행공간, 배수·관수시설, 안전시설 및 원상회복이 가능한 기초·지지구조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제도 도입)** 정부는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라는 3대 원칙 아래 농지에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6.16. 제정, 법률 제21804호) 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범위, 발전사업 허가, 준수사항, 제재처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같은 법 제2조제5호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령명	조문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5. “<u>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u>”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u>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u>재생에너지 설비 중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기존 규제 및 자율규제 등의 운영실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에 관한 기존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다음의 비규제적 수단에 의하여만 규율되고 있음
 - (실증사업 지침) 실증사업·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민간의 설계 관행) 설비 제조·시공업체별로 상이하고 공개된 표준이 없어 사업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으며, 준수를 강제할 수단도 없음

- (개별 허가권자의 판단)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영농 병행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편차가 발생

법령명	조문내용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4. 1. 2., 2026. 3. 17.>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법령명	조문내용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④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시행일: 2026. 9. 18.] 제36조

- (문제점)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실증사업·시범사업 수준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설비가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설비인지에 관한 공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설비 요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증사업 지침과 민간의 설계 관행에 의존하고 있어, 동일한 여건에서도 사업자별 설계 편차와 허가권자별 판단 편차가 발생
- 그 결과 ▲형식적으로만 농지 상부에 설치되어 실제 영농이 곤란한 설비 ▲농기계의 진입·회전·작업이 불가능한 지지구조 ▲사업 종료 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농지를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기초구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를 허가 단계에서 걸러낼 기준이 없는 상태
- 이는 개별 사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접 농지의 일조·통풍·배

수와 농기계 통행에 영향을 미쳐 주변의 농업생산활동까지 저해할 우려

나. 정부개입 필요성

- **(시장실패)** 발전설비의 영농 병행 가능성은 설계·시공 단계에서만 판단할 수 있어 사업자와 허가권자인접 농업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
 -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기반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고려할 유인이 없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인접 농지의 일조·배수·통행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외부효과에 해당
 -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이 최장 23년에 이르고 농지 훼손과 원상회복 불능은 사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므로, 사후 규율만으로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 **(비규제대안의 한계)** 다음의 비규제적 수단을 검토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보급)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를 강제할 수 없고, 미준수 설비에 대하여 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함
 - (설비 성능인증) 인증 취득이 임의적이어서 인증을 받지 않은 설비의 설치를 막을 수 없고, 인증 체계 구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
 - (사전컨설팅·교육·홍보) 종합지원센터의 컨설팅은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나 허가 요건으로 기능하지 못함

- (정책자금·보험 연계 인센티브)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유인이 작동하지 않아 규율의 사각이 발생

○ (개입의 근거) 법 제2조제5호가 발전설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내용은 발전사업 허가기준(법 제8조 제3항제1호), 준수사항(법 제13조),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법 제15조)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5. “<u>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u>”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u>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u>재생에너지 설비 중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발전사업의 허가)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발전사업부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명	조문내용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비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발전설비가 농기계의 운용, 일조량 확보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와 규격을 갖추는 것 2. 발전사업부지에서 영농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주변 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호 및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을 위하여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이 가능할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9조에 따른 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 허가 신청·심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법령명	조문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발전사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발전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의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이에 연결한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조합원이 10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10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주민참여협동조합을 말한다.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허가된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발전사업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구조 기준
	내용	시행령에 필수설비 6종과 제외설비 4종을 규정하고 설치 구조 요건을 정한 후, 시행규칙에서 차광률 100분의 30 미만, 구조물 최저높이 2.5미터 이상, 지지대 중심 간 거리 4미터 이상, 시설물 점유면적 100분의 10 이내와 농기계 통행·배수·관수·안전·원상회복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성과기준형 저장도 규제 (수치기준의 고시 위임)
	내용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영농 지속 가능성, 농기계 통행, 농작업자의 안전 및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라는 성과요건만 규정하고, 차광률·높이·간격·점유면적 등 구체적 수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지역·작물·기술 수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필수설비·제외설비의 범위와 차광률·높이·간격·점유면적 기준이 명확하여 사업자와 허가권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고, 허가 단계에서 농업생산 공간과 농작업자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으며, 사후 이행점검과 원상회복의 판단 기준으로도 기능	발전사업부지의 형상과 작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고, 기준 개정 전까지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지연될 수 있음
규제대안2	지역·작물·기술 수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사업자의 설계 자율성이 높음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허가권자의 재량 편차가 커지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사후 이행점검·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움. 고시 제정 전까지 규율의 공백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에 작물별·지역별 영농 여건, 발전설비의 기술 수준,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 반영 · 같은 조 제3항에 차광률·시설물 점유면적의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의 고시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시공업체	영농형태양광 시공가이드라인 회의 3회 (‘26.5.14., ‘26.6.18., ‘26.6.22.)	· 기후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영농형태양광 시공기준(안) 추가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발전설비 설치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 시행규칙안 제2조제1항에 태양광 모듈 배치방식, 차광률, 발전설비 구조물 설치 기준, 안전 사고 방지 기준 등 규정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규제대안 1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의 법령 규정”을 선택
- (근거 1 - 문제 해결의 실효성) 기존 규제가 없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일반 지상형 설비를 구분할 기준이 없어 농지 훼손과 영농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없으며, 법 제13조의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의무와 법 제15조의 허가 취소·원상회복 규정도 그 판단 기준을 결여하게 되어 제도 전체가 작동하지 않음
- (근거 2 - 규제대안 2와의 비교) 성과기준만 두는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 편차가 커져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시정명령·사업정지·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우며, 고시 제정 전까지 규율의 공백이 발생
 - 다만 규제대안 2의 장점인 탄력성은 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의 종합 판단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고시 위임을 통해 규제대안 1 안에서 상당 부분 흡수하였음
- (근거 3 - 이해관계자 의견) 전문가 회의에서 현장에서의 판단 가능성과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위해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수치기준을 법령에 두는 방식과 부합
- (근거 4 - 국내외 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음) 일본은 농지

일시전용 제도에서 지주 높이와 하부 영농 여건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고, 프랑스도 영농병행 태양광의 영농면적 손실 한도와 가역성 요건을 정하고 있어, 이 규정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 있음

- 국내에서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지역과 경사도·면적 등 설치조건을 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6조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원상회복 의무와 복구비용예치를 부과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유사

○ **(규제로서의 성격)** 동 조항은 법 제2조제5호의 위임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동시에 발전사업 허가의 요건을 이루어 사업자의 설계 선택을 제한하는 신설 규제에 해당함

- 다만 그 수준은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설정하였고, 지역·작물·기술 수준을 고려한 종합 판단 규정과 고시 위임을 통해 경직성을 완화하였음

3. 규제목표

○ **(주된 목표)**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지속되어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기반이 유지되는 상태

- (지표 1) 영농 이행률: 시행령안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 또는 재배” 기준의 충족 비율

- (지표 2) 발전사업부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인근 일반 농지 대비 차지하는 비율
- (지표 3) 발전사업 종료·허가취소 시 농지 원상회복 이행률
- **(부수 목표)**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사업자·허가권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농작업자·인접 농지의 안전 확보
 - (지표 4) 발전사업 허가 처리기간 및 보완요구 비율
 - (지표 5) 발전설비 관련 안전사고 건수 및 인접 농지 피해 민원 건수
- **(측정 방법)** 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2년 주기), 시행령안 제24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확인(연 1회 이상),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축적자료를 통해 측정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규제수단의 최소화

- 각 기준은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한 물리적 최소 요건으로서 다음의 근거에 따라 설정하였음

기준	설정 근거	완화가 곤란한 사유
차광률 100분의 30 미만	시행령안 제19조제1항제1호는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 또는 재배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시행규칙안 제2조제1항제1호는 모듈을 발전사업부지 전반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편중되지 않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규정을 함께 적용하면 모듈 하부에서도 경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듈의 수평투영면적이 발전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조물 최저높이(2.5미터 이상)와 지지대 중심 간 거리(4미터 이상)를 함께 적용할 때 확보 가능한 모듈 배치 밀도를 고려하여 설정	차광률을 완화할 경우 모듈을 편중되게 배치하지 않고서는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경작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시행령안 제19조제1항의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 및 법 제13조제1항의 영농 의무와 상충하게 되며, 모듈 하부의 광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파종·재배관리·수확이 곤란해질 우려
구조물 최저높이 2.5미터 이상	트랙터·콤바인·방제기 등 주요 농기계의 전고 및 작업 시 필요한 상부 여유고, 일본 가이드라인의 지주 높이 기준	이보다 낮은 경우 농기계의 진입·작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발전사업부지 전반의 영농이 곤란
지지대 중심 간 거리 4미터 이상	주요 농기계의 작업폭 및 회전반경, 농작업자의 통행과 농산물 수확·반출 동선	간격이 좁을수록 농기계의 회전이 불가능한 구간이 늘어나 실제 경작 가능 면적이 축소
시설물 점유면적 100분의 10 이내	시행령안 제19조제1항제1호가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 또는 재배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정합적인 수준으로 설정. 이와 함께 영농병행 태양광에 관하여 영농면적의 손실 한도를 정하고 있는 프랑스 등의 사례에 비추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	점유면적이 100분의 10을 넘으면 영농 이행 기준(100분의 80) 충족에 필요한 여유가 사라져 두 기준이 상충하게 됨

나. 비례성 판단 요소

- (영향을 받는 집단의 규모) 피규제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영향 범위가 제한적
- (영향의 발생 기간 및 분포) 규제의 영향은 발전설비의 설계·시공 단계에 집중되며, 이후에는 허가기간(최초 5년, 연장 최장 18년) 동안 유지관리 의무의 형태로 지속됨
 - 특정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영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음
- (집단 간 이해충돌의 정도) 발전사업자와 인접 농지 경작자(일조·통풍·배수 및 농기계 통행), 농지 임대인과 임차인(원상회복 책임), 사업자와 지역주민(경관·안전) 사이에 이해가 충돌할 수 있음
 - 동 기준은 이러한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개별 분쟁과 민원으로 전가되어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

다. 경직성 완화 장치

- 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 — 제출된 서류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작물별·지역별 영농 여건, 발전설비의 기술 수준, 농지의 보전상태, 농기계 이용 여건 및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
- 시행규칙안 제2조제3항 — 차광률·시설물 점유면적의 산정방법, 구조물 최저높이·지지대 간격의 측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여

기술 발전에 대응

- 시행규칙안 제2조제4항 — 전기·건축·소방·재난안전·환경 등 관계 법령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중복·상충 규제를 방지
- 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6호 — 열거되지 않은 설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개방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등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등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농지보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나 준수 수준이 달라지지 않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 또는 추가비용을부과하지 않는 공통 기준임.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광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등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규제 차등화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정책목표를 비강제적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음
- 설비 성능인증과 정책자금·보험 연계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농지의 훼손과 농작업자의 안전은 사후 회복이 곤란한 손실에 해당하여 허가 단계의 사전 기준설정이 불가피
- 다만 법 제21조(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제23조(컨설팅 등의 지원), 제24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를 통해 유인적 수단을 병행하여 규제부담을 완화

- 일몰설정 여부

- (① 일몰설정 예외기준) 국가의 질서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에 해당(농작업자 안전, 전기·구조 안전),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에 해당
- (② 판단) 예외기준에 해당하여 일몰 미설정이 가능하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증연구 결과 및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음

일몰설정 여부	일몰조문	신규설정 여부	일몰유형	설정기간	주기
설정	시행령안 제44조제1호 시행규칙안 제30조제1호	신규	재검토기한	3년	3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 규정은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열거
유연한 분류 체계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발전사업자의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분류 필요
네거티브 리스트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 등 발전사업의 도입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 허용 범위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바,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이 어려움
사후 평가관리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 등 발전사업의 도입 목적과 발전사업자 대상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유지할 필요
규제 샌드박스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 등 발전사업의 도입 목적과 발전사업자 대상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유지할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농림수산성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한 농지 전용 허가 제도상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2024년~)을 통해 농업기계와 농업인이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주의 높이를 약 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지지대의 높이·간격 등이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주 높이를 3미터 이상으로 개편하는 등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 중이며, '26년 내에 제도 전환 계획임
 - 아울러 하부 농지의 수확량 확보 요건과 농지 일시전용 허가기간 및 갱신 요건을 함께 규정
- **(프랑스)** 「영농형태양광 개발 및 농업·자연·산림지역 태양광 설치 조건에 관한 시행령」(2024)에서 영농병행 태양광의 요건으로 비교 부지 대비 수확량 유지 수준, 설치 전후 농업소득 유지, 사후 점검 및 통계 제출 의무를 규정
- **(규제방식의 차이)** 일본과 프랑스는 수확량 또는 농업소득이라는 사후 성과 기준으로 영농 병행 여부를 규율하고 있어, 발전설비의 차광률이나 점유면적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이 규정은 사후 수확량 확인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농지 훼손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면적 비율 기준(차광률, 시설물 점유면적)으로 규율하고, 수확량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안 제19조의 영농 이행 기준과 제21조의

재배 제한 작물 제도로 별도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 따라서 해외의 수확량 유지 기준은 이 규정이 아니라 영농 이행 기준(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경작)에 대응하며, 규율 시점과 수단이 다를 뿐 영농 병행 확보라는 목적과 수준에서는 국제적 기준과 부합함

○ 타법사례

-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하여 경사도 15도, 면적 3만제곱미터 등의 정량적 기준을 이미 두고 있어, 정량적 설치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국내 법체계에서 이례적이지 않음

구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이 규정 (시행령안 §3·시행규칙안 §2)
대상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행위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등	농지 상부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조건· 기준	사용목적·사용기간의 적 정성, 농지의 보전 및 인 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평균경사도 15도 이하,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 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토사유출 방지 및 하단 주변 수목·초본류 식재계 획 수립	차광률 100분의 30 미 만, 구조물 최저높이 2.5 미터 이상, 지지대 중심 간 거리 4미터 이상, 시 설물 점유면적 100분의 10 이내, 농기계 통행·배 수·관수 및 안전 확보
원상회복	사용기간 만료 시 원상 회복 의무 및 복구비용 의 예치·반환	일시사용기간 만료 후 복구	일반적인 방법으로 철거· 원상회복이 가능한 기초· 지지구조를 요구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법」 의 복구비용 관련 규정 을 준용
규제 수준	면적·경사도 등 물리적 기준을 두지 않고 심사 기준으로 규율	경사도·면적 등 정량적 기준을 직접 규정	정량적 기준을 규정하되, 종합 판단 규정과 고시 위임으로 탄력성을 확보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구조 기준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 구조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발전설비의 범위가 명확히 열거되어 있고 설치기준이 차광률·높이·간격·면적 비율이라는 측정 가능한 수치로 제시되어 있어, 도면과 산정자료로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허가 전에 보완이 가능하고(시행령안 제11조제2항 단서), 통상적인 설계·시공 능력을 갖춘 사업자는 준수가 가능한 수준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허가권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로서 전기·구조 분야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의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전문기관 의견청취) 시행령안 제10조제5항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종합지원센터, 감독대행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
- (자격자 작성·확인) 시행규칙안 제9조제2항은 발전설비계획에 전기·구조·건축 각 분야 자격자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설계도서와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종합 판단) 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은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함
- (지원 조직)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한

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와 시행령안 제40조에 따른 감독대행기관이 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을 지원

- (정보 인프라) 법 제20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허가·설비·영농 자료를 축적·연계하여 심사와 사후관리의 일관성을 확보
- 허가 처리기간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법 제8조 제5항), 보완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심사 여건이 확보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의 농지 관리·인허가 체계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조직 신설은 필요하지 않으나, 다음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할 계획
- (기준 마련) 시행규칙안 제2조제3항 및 시행령안 제11조제4항에 따른 세부 판단기준·산정방법 고시의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정보시스템) 법 제20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 (지원 조직)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 법 제25조제3항에 지원 근거
- (감독대행) 감독대행기관에 대한 대행 비용 — 법 제26조제5항에 지원 근거
- 위 소요는 제도 도입에 따른 공통 비용으로서 이 조항에 고유하게

귀속되는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며, 허가 단계의 기준 명확화로 분쟁·민원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기준 설정을 위한 다수의 논의 및 연구용역 등 진행
- (전문가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등 포함한 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26.7월~10월)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 해당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2개소)을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농업인 등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
- * 수도권(화성, 안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개선 등 진행할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영농형 태양광	제3조제2항부터	기술 발전, 농기계 작업성, 작	-2027년1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4항까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구조 기준	물별 재배환경 및 현장 적용 실태를 검토하여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설치·구조 기준을 정비한다. 안전성, 영농 지속성 및 농지 원상회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간소화·완화 검토	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 최초 검토는 2029년까 지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 추진
-------------------------------------	---------------------------------------	---	---

4. 종합결론

-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지 보전·식량안보 유지와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으로, 그 성패는 발전사업부지에서 영농이 실제로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음
- 시행령안 제3조와 시행규칙안 제2조가 정하는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은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차광률·구조물 최저높이·지대 간격·시설물 점유면적은 각각 작물의 생육, 농기계의 진입·작업, 실제 경작 면적의 확보라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설정되었음
- 특히 시설물 점유면적 기준(100분의 10 이내)은 시행령안 제19조

제1항제1호의 영농 이행 기준(100분의 80 이상)과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두 기준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영농 의무의 이행이 가능

- 기존 규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현행유지안은 농지 훼손과 영농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없고, 성과기준만 두는 규제대안 2는 허가권자의 재량 편차와 제재 기준의 공백을 초래하므로, 규제대안 1이 최적의 대안임
- 규제의 수준은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의 영농병행 태양광 기준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농지법」 등 국내 유사입법의 규제수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아니하며, 종합 판단 규정과 고시 위임, 관계 법령 우선 규정을 통해 경직성과 중복 규제의 우려를 해소하였음
- 아울러 재검토기한(2027년 1월 1일부터 3년)을 설정하여 실증연구와 기술 발전의 결과를 반영해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동 규정은 농지 보전과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의 동시 달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 구조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분석방법) 정성분석 — 제도 신설로 발전사업 실적이 없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표준모델과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정량분석이 곤란
- (비용) 피규제자에게 지지구조 자재 · 기초공사비 증가(설비), 구조검토서 및 설계도서 작성(외부서비스), 발전설비계획 · 산정자료 제출(행정부담) 비용이 발생
- (편익) 피규제자에게는 허가 예측가능성 확보에 따른 설계 재작업 · 보완요구 감소, 피규제자 이외 기업에는 설계 · 시공 · 구조검토 수요 발생, 일반국민에게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 인접 농지 영농 보호, 농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편익이 발생
- (종합) 비용은 개별 사업자의 설계 · 시공 단계에 한정되는 반면 편익은 농지 보전과 식량 생산기반 유지라는 회복 불가능한 가치에 관한 것으로,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구조 기준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지지구조의 규격과 기초 공사 설치,설계도서의 작성 및 확인
비용항목	설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구조물 최저높이의 상향과 지지대 중심 간 거리의 확대에 따라 지지구조의 자재 규격과 기초 공사의 규모가 증가 - 구조검토서의 작성 및 전기·구조·건축 각 분야 자격자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확인 - 발전설비계획, 배치도·평면도·단면도·구조도·기초도, 차광률 및 시설물 점유면적 산정자료의 작성·제출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허가기준 명확화
편익항목	허가기준 명확화로 인한 설계 비용 감소에 따른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허가기준의 명확화로 설계 재작업, 보완요구 및 반려가 감소하고, 종합지원센터의 표준설계·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설계비용을 절감 - 허가 단계에서 영농 가능성이 확인됨으로써 사업 개시 후 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사업정지·과징금·허가 취소의 위험이 감소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점유면적 제한에 따른 발전수익 감소
비용항목	기회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차광률 및 시설물 점유면적의 제한에 따라 단위면적당 설치용량이 축소되어 발전수익이 감소할 가능성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태양광 설비 제조·시공업체, 구조·전기 분야 설계사무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폐모듈·폐기물 처리업체
활동제목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의 법령 규정
편익항목	영농형 태양광 설비 관련 업체의 매출 증대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산업육성) 영농형에 특화된 지지구조·모듈 등 설비 시장이 형성되어 관련 제조·시공업체의 사업기회가 확대 － (매출증가) 구조검토, 설계도서 작성, 전기안전관리,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가 발생

③정부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활동제목	발전사업 감독 및 고시 제정 및 운영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발전사업 허가 심사와 현장확인에 소요되는 인력·시간, 세부 판단기준의 고시 제정 및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	----------------

활동제목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의 법령 규정
편의항목	사전적 사회적 갈등 해소 편의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허가 단계의 판단 기준이 확보되어 심사 부담과 허가 관련 분쟁·민원이 감소하고, 사후 이행점검 및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

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의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의 법령 규정
편의항목	영농 손실 회피, 안전사고 예방,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편의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비용 절감)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은 일조·통풍·배수의 저해와 낙수·토양유실에 따른 피해가 방지되어 영농 손실을 회피 - (안전사고 예방) 농기계 통행공간과 농작업자 안전시설의 확보로 발전사업부지 및 인접 농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 - (기타)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기반이 유지되고, 경관·환경에 대한 영향이 저감되며,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업인의 거주요건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동 조항은 발전사업자 중 농업인에 대한 필수 거주기간을 정하여 해당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활동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7.규제내용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업인은 허가신청일 전 계속하여 3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규정함. ○ 농업경영 사실을 농업경영정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대장, 농산물 판매·농자재 구입자료 등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농업인 ○ 이해관계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농업인, 발전부지 소재 지역의 농촌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규제목표	○ 목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해온 농업인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농업인 참여를 방지함. ○ 기대효과: 지역 농업인 중심의 사업 추진과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투기적 사업 참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규제의	10.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적정성 11.비용편의 분석 (정성분석)	-(비용) 농업인의 거주기간 증명 및 농자재 구입 증명서 구비 과정에서 행정 비용 및 부담 발생 가능 -(편익)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 가능 -(종합)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발전사업 허가 신청 과정에서 최소 거주기간 입증 및 농자재 구입 증빙 등 영농 지속성 증명에 따른 입증 서류 발급·제출에 일시적 행정 부담 및 비용이 발생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효성 있는 증빙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요구됨. 농업경영 실적의 명확한 증명을 통해 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별 재량권 행사에 따른 판단 편차를 해소함. 또한, 투기 목적의 태양광 사업 진입을 차단하여 실질적 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함. 주민 중심의 발전사업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내 반발 및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영농 활동과 안정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로서, 규제로 인한 행정 부담 대비 농지 보전 및 정책 신뢰도 제고 효과가 매우 큼.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농업인의 거주기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신청일 전 계속하여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자료로 증명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확인서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그 밖에 농지대장, 농산물 출하·판매 증명서, 농자재 구입 증명서, 영농일지 등 실제 농업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와 농업경영의 계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조회 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농업인 대상 필수 거주기간을 구체화하고 있음
 - 특히, 발전사업자로서 농업인의 영농활동 확인을 위한 생활권 등 영농 기반 조성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규정은 영농형태양광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필수 영농기간과 동일한 거주기간(3년)을 설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농업인의 거주요건
	내용	허가 신청 전 3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주민등록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의무 부과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실경작자 중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투기적 진입 및 명의 대여 가능성 감소	귀농·귀촌 농업인의 참여가 일정기간 제한될 우려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발전사업자 중 농업인의 거주기간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발전사업자의 영농 활동 증빙 및 지속적 영농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여부 확인을 위해 영농기간과 동일한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	하위법령 반영

		규모 발전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작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발전사업자의 지속적 영농 활동 보장과 그에 따른 식량안보 유지 등이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의 목적인바,
- 사업자는 기존 영농 기간을 입증하면서 그 영농 기반으로서 농촌 생활권(발전사업부지가 속한 읍·면·동 및 그와 연결한 읍·면·동) 내 거주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 법률상 규정된 최소 영농기간과 동일한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발전사업자로서 농업인의 영농 기반 조성 가능성 확인을 위한 최적 조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발전사업자로서 농업인 대상 거주기간(3년) 설정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영농 활동 지속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법률에 정한 필수 영농 기간과 동일한바, 동시 달성이 가능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농업인의 거주기간 등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농업인의 거주기간 등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농업인의 거주기간 등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창업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농업인의 거주기간 등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 등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하는 농업인 관련업종: 농업및태양력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농업인의 거주기간 등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프랑스·독일·대만 등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한 국가들은 발전사업자와 농업경영인이 분리될 수 있어 동일한 거주기간 규제를 일반적으로 두지 않음

○ 타법사례

-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가중치 관련 지침 내 주민 거주기간(1년) 규정

< 참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의2 >

제7조의2(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 ①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비고 제16호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 비율별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비율 산정시 고려되어 추가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는 주민(이하 "참여주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참여주민등의 자격 입증 방법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1. 별표2의2에 따른 지역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축산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거주기간이 3년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농업경영 사실도 기존 농업경영정보·농지대장 등 다양한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증명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관계기관 자료조회도 가능하므로 피규제자가 별도의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주민등록·농업경영 관련 행정정보와 제출자료를 통해 거주 및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행정정보 조회 및 허가업무를 활용하므로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로서 농업인 대상 필수 거주기간(3년) 요건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에 대한 영농 지속 기반(발전사업부지가 포함된 농촌 생활권 내 거주)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른 농업인 필수 영농기간과 동일한 기간인바 일반적 영농활동 증빙을 위한 최적 기준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농업인의 거주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농업인의 거주기간 증명 및 농자재 구입 증명서 구비 과정에서 행정 비용 및 부담 발생 가능
- (편익)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 가능
- (종합)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발전사업 허가 신청 과정에서 최소 거주기간 입증 및 농자재 구입 증빙 등 영농 지속성 증명에 따른 입증 서류 발급 · 제출에 일시적 행정 부담 및 비용이 발생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효성 있는 증빙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요구됨.

농업경영 실적의 명확한 증명을 통해 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별 재량권 행사에 따른 판단 편차를 해소함. 또한, 투기 목적의 태양광 사업 진입을 차단하여 실질적 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함. 주민 중심의 발전사업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내 반발 및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영농 활동과 안정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로서, 규제에 의한 행정 부담 대비 농지 보전 및 정책 신뢰도 제고 효과가 매우 큼.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농업인의 거주요건>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거주요건 사실 증명
비용항목	거주기간 증명 및 농자재 구입 증명서 등 구비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령 제4조의 거주요건 증명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거주요건 검증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및 지속 추진
편익항목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발전사업 지속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영농활동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청년농업인의 거주·농업경영 요건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특례를 정하지 아니하면 청년농어업인에게도 본문의 3년 거주·3년 농업경영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농을 개시한 초기 단계의 청년농어업인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		
	7.규제내용	○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안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허가신청일 전 계속하여 3년) 및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3년간의 농업경영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다만 허가신청일 현재 ① 발전사업부지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②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 ○ 위 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① 청년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주소 및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행령안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로서 허가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목표) 영농을 개시한 초기 단계의 청년농어업인이 3년의 대기기간 없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 연고와 농업경영		

		의 실재는 허가신청 시점에 확인되도록 하는 상태 - 발전사업 허가 건 중 청년농어업인 특례를 적용받은 비율 및 그 사업의 영농 이행을 달성 여부를 측정 ○ (기대효과) 청년농어업인의 농촌 정착 유인 제공, 장기간의 사업 기간 동안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사업 주체의 확보, 청년농어업인 해당 여부에 관한 허가권자별 판단 편차의 해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발전사업자가 청년농업인 확인 서류, 주소·실거주 확인 서류의 준비·제출 부담 발생 - (편익)발전사업 참여가 즉시 가능하고 청년농의 농촌 정착 등의 편익 발생 - (종합)허가신청 서류 준비 등의 부담보다 즉각적인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편발전사업자가 허가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청년농어업인 확인 서류, 주소·실거주 확인 서류 및 농업경영 확인 서류의 준비·제출 부담 발생이 가능함. 발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의 3년 거주·3년 농업경영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특례가 없었다면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했을 발전사업 참여가 즉시 가능해지는 편익이 발생하고,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게는 청년농어업인의 농촌 정착과 장기 영농 이행 주체의 확보라는 편익이 발생함. 이 규제는 상위법의 요건을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 배제하는 완화적 성격의 규정으로, 비용은 허가신청 시 1회의 서류 제출에 한정되고 그 서류도 일반 농업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청일 현재분만 요구되는 반면, 편익은 3년의 대기기간이 제거되는 진입 시점의 결정적 차이에 해당하므로 편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함.익이 커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청년농어업인의 거주기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및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3년간의 농업경영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발전사업부지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2.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청년농어업인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주소 및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자료로서 허가신청일 현재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정부는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라는 3대 원칙 아래 농지에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6.16. 제정, 법률 제21804호)을 마련
 - 이 법은 발전사업자를 ①지역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②지역주민 10인 이상의 주민참여협동조합 ③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의 3가지 유형으로 한정하여(법 제5조제1항), 외부 자본의 농지 잠식을 차단하고 발전사업의 이익이 지역에 내재화되도록 설계
- (필요성)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다르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례의 내용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만 정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의 자격은 법 제5조가 직접 정하는 사항이고 그 위반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필요적 허가취소 사유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청년농업인의 거주 · 농업경영 요건
	내용	○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안 제4조제1항의 거주기간 3년 및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의 농업경영 기간 3년을 적용하지 않음 ○ 허가신청일 현재 ①발전사업부지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②「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하고 있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 ○ 청년농어업인 확인 서류, 주소·실거주 확인 서류, 시행령안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허가신청일 현재의 농업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신청서에 첨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청년농업인의 절차적 참여에 대해 특례를 보장하여 농촌 정착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케 함	일반 발전사업자 간의 의견 충돌 등 사업 추진 이전 주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 대안의 선택 근거

-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는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 기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은 위임의 이행에 해당하며, 정하지 아니하면 단서 규정이 사문화됨
- 특례는 “기간” 요건만을 배제하고, 지역 연고(발전설비 소재 또는 연접 읍·면·동의 주소·실거주)와 농업경영의 실재는 그대로 유지함

- 첨부서류 중 농업경영 확인 자료는 시행령안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농업경영정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대장·출하판매 증명서·농자재 구입 증명서·영농일지 등) 중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고, 그 대상 기간도 3년이 아니라 “허가신청일 현재”에 한정되므로, 일반 농업인이 3년간의 농업경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에 비하여 부담이 작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 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기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하위법령 반영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치농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영농을 개시한 초기 단계의 청년농어업인이 3년의 대기기간 없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가 지역 연고와 실제 농업경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상태
- 청년농어업인 해당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법령에 제시됨으로써 허가권자별 판단 편차가 해소되고, 신청인이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상태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각 요건은 기간 요건을 배제하는 대신 허가신청 시점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다음의 근거에 따라 설정하였음

기준	설정 근거	완화가 곤란한 사유
지역 연고 (주소 + 실제 거주)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이 정한 지역 범위(발전설비 소재 읍·면·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동)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간 요건만 배제. 영농형 태양광은 지역 농업인·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발전사업의 이익을 지역에 내재화하는 제도이므로 지역 연고는 제도의 본질적 요소	지역 연고 요건까지 배제하면 외부 자본이 청년농어업인의 명의를 빌려 진입하는 통로가 되어, 법 제5조가 발전사업자를 3개 유형으로 한정된 자격 제한 자체가 무력화됨
농업경영을 하고 있을 것	기간(3년)이 아니라 허가신청일 현재의 상태만을 요구하고, 그 개념도 「농지법」 제2조제4호의 정의를 그대로 원용하여 별도의 기준을 창설하지 않음	법 제13조제1항은 영농계획에 따른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하도록 하고 시행령안 제19조제1항제1호는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므로, 허가 시점에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영농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허가신청일 현재 (판단 시점)	요건의 충족 시점을 허가신청일로 특정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자격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함	판단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마다 기준 시점이 달라져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필요적 허가취소 사유와 연결되어 법적 불안정이 발생
첨부서류 3종	① 청년농어업인 확인은 별도 법률에 따른 확인 서류를 활용하고 ② 주소·실거주는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하며 ③ 농업경영은 시행령안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증빙을 창설하지 않고 기존 서류를 원용	기간 요건을 배제한 이상 허가신청 시점의 실질을 확인할 최소한의 수단은 필요하며, 이를 생략하면 요건의 존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특례가 형해화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청년농어업인의 거주기간 등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 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청년농어업인의 거주기간 등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청년농어업인의 거주기간 등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창업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청년농어업인의 거주기간 등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하는 청년농어업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청년농어업인의 거주기간 등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규모 구조의 차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한 주요국은 발전사업자와 농업경영인이 분리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음
 - (일본) 농지 일시전용 허가의 심사에서 하부 농지의 실경작자를 대상으로 영농 계속 여부를 확인하며, 발전사업자 자체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은 두지 않음
 - (대만)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기간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를 요건으로 함
- (시사점) 이 법은 법 제5조에서 발전사업자를 지역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으로 한정하여 발전사업과 영농의 주체를 일치시키는 구조를 채택하였으므로 거주·농업경영 요건이 제도의 핵심 축을 이루는바, 그 구조에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특례는 제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에 해당함
 - 이 규정이 채택한 “기간이 아니라 허가신청일 현재의 실거주·농업경영을 확인하는 방식”은 대만의 규율 방식과 같은 계열에 있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구분	같은 시행령안 제4조 (일반 농업인)	「신·재생에너지법」 RPS 주민참여 가중치	이 규정 (시행령안 §5, 청년농)
거주기간	허가신청일 전 계속하여 3년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	기간 요건 없음. 허가신청일 현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할 것
영농·농업경영 요건	3년간 「농지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농업경영 사실의 증 명	해당 없음(주민등록 요건만 규정)	허가신청일 현재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 을 하고 있을 것

구분	같은 시행령안 제4조 (일반 농업인)	「신·재생에너지법」 RPS 주민참여 가중치	이 규정 (시행령안 §5, 청년농)
확인 시점	허가신청일 전 3년의 기간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허가신청일 현재의 상태
증빙 방식	농업경영정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경작사실확 인서, 농지대장·출하판매 증 명서·영농일지 등 중 어느 하나	주민등록 자료(공급인증기관 의 장이 정하는 자격 입증 방법)	좌측 서류 중 어느 하나로 갈음하되 허가신청일 현재분 만 요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으로 확인되면 제출 불요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청년농어업인 여부와 현재의 거주·영농 사실은 연령,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 관련 자료로 확인 가능함
- 3년 요건 자체를 면제하고 현재의 실제 거주 및 농업경영 여부만 확인하므로 일반 농업인에 비해 부담이 완화되어 있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청년농어업인 자격, 거주 및 농업경영 여부를 관련 서류와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행정정보 및 허가심사 체계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큰 재정 부담 없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이 규제는 상위법이 정한 요건을 배제하는 완화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부담이 증가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용은 허가신청 시 1회의 서류 제출에 한정되는 반면 편익은 3년의 대기기간이 제거되는 진입 시점의 결정적 차이에 해당하므로 편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함
- 아울러 이 규정은 실효될 경우 청년농어업인에게 본문의 3년 요건이 다시 적용되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되므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특례의 운영 실태는 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종합정보시스템의 축적자료를 통하여 계속 점검할 계획인바, 동 규정은 청년농어업인의 농촌 정착과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개방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청년농업인의 거주·농업경영 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발전사업자가 청년농업인 확인 서류, 주소·실거주 확인 서류의 준비·제출 부담 발생
- (편익)발전사업 참여가 즉시 가능하고 청년농의 농촌 정착 등의 편익 발생
- (종합)허가신청 서류 준비 등의 부담보다 즉각적인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편발전사업자가 허가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청년농어업인 확인 서류, 주소·실거주 확인 서류 및 농업경영 확인 서류의 준비·제출 부담 발생이 가능함.

발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의 3년 거주·3년 농업경영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특례가 없었다면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했을 발전사업 참여가 즉시 가능해지는 편익이 발생하고,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게는 청년농어업인의 농촌 정착과 장기 영농 이행 주체의 확보라는 편익이 발생함.
이 규제는 상위법의 요건을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 배제하는 완화적 성격의 규정으로, 비용은 허가신청 시 1회의 서류 제출에 한정되고 그 서류도 일반농업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청일 현재분만 요구되는 반면, 편익은 3년의 대기기간이 제거되는 진입 시점의 결정적 차이에 해당하므로 편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함.익이 커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청년농업인의 거주·농업경영 요건>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청년 농업인
활동제목	거주요건, 농업경영 요건 증빙
비용항목	각종 증빙서류 준비·제출 등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령 제5조의 증빙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청년 농업인
활동제목	거주요건, 농업경영 요건 증빙에 따른 사업 추진
편익항목	발전사업 사전 자격 검증 및 안정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 지속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공정한 사전 행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구성 및 자격유지 요건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 · 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기간, 조합원 수 산정시점 및 사업기간 중 유지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자격을 일관되게 심사 ·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구체적 기준 설정이 필요함		
	7.규제내용	○ 허가신청일 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명 이상으로 주민참여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함 ○ 조합원 수 산정일을 허가 · 변경허가 · 발전사업기간 연장 신청일, 준수사항 확인일 및 사업자 자격 확인일로 구체화 ○ 발전사업기간 동안 적격 지역주민 조합원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10명 미만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10명 이상으로 회복하도록 함 ○ 정관 또는 규약에 영농관리체계, 조합원 운영, 주민환원계획, 회계 구분관리, 안전 · 민원 · 원상회복 · 정보공개, 조합원 현황의 작성 · 보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목표: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실질적인 지역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최소한의 조합원 구성 및 운영기준을 마련함 ○ 기대효과: 외부 사업자의 형식적인 조합 운영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와 이익 공유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주민참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 발생 가능 -(편익)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속가능성 향상 가능 -(종합)주민참여협동조합의 자격 유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 지역 주민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입지에 따른 반발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극대화함. 또한 발전 수익의 일부가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 환원되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에 기여함. 주민참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관 작성, 조합원 자격 검증, 출자금 관리 및 정기 총회 개최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발생함. 법적 요건인 발전설비 소재지 내 거주기간 등 유지를 위한 정주 비용이 필요할 수 있음. 다만,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해당없음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거주기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허가신청일 전 계속하여 1년 및 조합원 수 산정일 전 계속하여 1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조합원 수 산정일”이란 허가신청일, 변경허가 신청일,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일,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확인일 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날을 말한다. ③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발전사업기간 동안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제1항의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조합원 1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10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0명 이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④ 주민참여협동조합은 정관 또는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목적, 사업구역 및 발전사업 부지에서의 영농관리체계 2. 지역주민 조합원의 가입·탈퇴, 출자, 의결권 및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발전사업 회계와 주민환원사업 회계의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5.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민원처리, 원상회복

현 행	개 정 안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명부, 주소지 변동, 출자 및 의결 권 현황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정부는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 환원)라는 3대 원칙 아래 농지에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6.16. 제정, 법률 제21804호)을 마련
 - 이 법은 발전사업자를 ①지역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②지역주민 10인 이상의 주민참여협동조합 ③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의 3가지 유형으로 한정하여(법 제5조제1항), 외부 자본의 농지 잠식을 차단하고 발전사업의 이익이 지역에 내재화되도록 설계
- (필요성) 법 제5조제1항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거주기간과 조합원 수 회복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행정지침이나 개별 허가조건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만 정할 수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구성 및 자격유지 요건
	내용	허가신청일 및 조합원 수 산정일 전 계속하여 1년 거주하고, 적격조합원 10명 이상을 사업기간 동안 유지, 10명 미만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회복, 정관·규약에 주민환원·회계·안전·조합원 관리 등 필수사항 명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지역 연고의 실질성·지속성 확보와 동시에 일시적 조합원 감소에 대한 회복기회 보장	거주기간 확인 및 조합원 관리 부담 발생

o 대안의 선택 근거

- 법 제5조제1항제2호가 주민의 거주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을 이행하는 것임.
-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발전사업부지 주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사업주체이므로, 허가 직전의 형식적 전입을 배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속 거주기간이 필요함.
- 1년은 일반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3년 거주기간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참여 문턱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으면서 지역 연고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 6. 12., 6. 18.)	발전사업자의 참여 요건 등	·시행령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농촌진흥청		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에 농업인·청년 농어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을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 하위 법령 제정 관련 협의 ('26. 8. 12.)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 필요	·특례의 적용 범위를 기간 요건으로 한정하고 지역 연고(주소·실거주)와 농업경영의 실재는 그대로 유지하여, 자격 완화가 우회 진입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설계

3. 규제목표

- 발전사업부지 소재 또는 연접 지역에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둔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참여협동조합을 통하여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 주민참여 구조가 발전사업기간 동안 유지되는 상태를 확보함
- 주민환원계획과 회계·안전·조합원 관리체계를 정관 또는 규약에 명확히 하여 주민의 사업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 내 환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각 요건은 기간 요건을 배제하는 대신 허가신청 시점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다음의 근거에 따라 설정하였음

기준	설정 근거	완화가 곤란한 사유
계속 거주 1년	지역주민의 실질적 연고를 확인하되 일반 농업인의 3년보다 완화된 기간	현재 주소만 확인하면 허가 직전 형식적 전입으로 주민참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적격 조합원 10명 이상 유지	법 제5조제1항제2호가 예정한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최소 인적 기반을 사업기간 중에도 유지	허가 시에만 확인하면 이후 주민참여가 사실상 소멸하여도 발전사업자 자격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
10명 미만 시 1년 내 회복	사망·전출·탈퇴 등 불가피한 변동에 대응할 충분한 기간 부여	즉시 취소는 과도하고, 지나치게 긴 기간은 법정 최소 조합원 요건을 장기간 형해화
정관·규약 필수사항	주민환원·회계·안전·조합원 관리의 기본 내부통제 확보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면 장기간 사업에서 분쟁·회계 불투명·주민환원 미이행 가능성이 커짐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거주기간 등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거주기간 등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거주기간 등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창업,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거주기간 등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거주기간 등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구분	같은 시행령안 제4조 (일반 농업인)	「신·재생에너지법」 RPS 주민참여 가중치	이 규정 (시행령안 §5, 청년농)
거주기간	허가신청일 전 계속하여 3년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	기간 요건 없음. 허가신청일 현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영농·농업경 영 요건	3년간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 사실의 증명	해당 없음(주민등록 요건만 규정)	허가신청일 현재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하고 있을 것
확인 시점	허가신청일 전 3년의 기간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허가신청일 현재의 상태
증빙 방식	농업경영정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대장·출하판매 증명서·영농일지 등 중 어느 하나	주민등록 자료(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격 입증 방법)	좌측 서류 중 어느 하나로 같음하되 허가신청일 현재분만 요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제출 불요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조합원 수·거주기간 등 요건이 객관적 수치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준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음
- 조합원이 10명 미만이 된 경우에도 1년의 회복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조합원 구성을 보완할 수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조합원 명부, 주소 및 정관·규약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허가·사후관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하여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법 제5조제1항제2호는 지역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이 설립한 주민참여협동조합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거주기간과 조합원 수 산정·유지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임.
- 시행령안 제6조는 조합원의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허가 직전의 형식적 전입을 방지하면서도 일반 농업인의 3년 거주기간보다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 연고 확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기준임.

- 또한 주민환원계획, 회계 구분관리, 조합원 관리, 안전관리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에 포함하도록 하여 장기간의 발전사업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수익환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이 규제는 외부 자본의 형식적 주민참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운영기준으로서, 규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이 인정되고 집행가능성과 규제순응도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구성 및 자격유지 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주민참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 발생 가능
- (편익)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속가능성 향상 가능
- (종합)주민참여협동조합의 자격 유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

지역 주민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입지에 따른 반발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극대화함. 또한 발전 수익의 일부가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 환원되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에 기여함.

주민참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관 작성, 조합원 자격 검증, 출자금 관리 및 정기 총회 개최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발생함. 법적 요건인 발전설비 소재지 내 거주기간 등 유지를 위한 정주 비용이 필요할 수 있음.

다만,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구성 및 자격유지 요건>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참여협동조합
활동제목	협동조합의 발전사업 추진 시 필요 유지 요건
비용항목	요건 충족을 위한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령 제6조의 협동조합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참여협동조합
활동제목	발전사업 사전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대안 검토 및 사업 추진
편익항목	발전사업 사전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안정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 지속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사전 행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 조합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자격요건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 · 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발전사업이 가능한 농업법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발전사업 규모화 · 집적화를 달성하면서, 외부 투기자본이 아닌 농업인 중심으로 발전사업 추진 필요

7.규제내용

○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업법인의 세부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법인을 일정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수행능력, 주민환원계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및 회계 구분관리 체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발전사업의 규모화 · 집적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 또한, 외부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국가관리간척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293.69		293.69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본 규제에서는 농업법인의 범위를 농업경영정보 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음. 피규제 자인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는 농업경영정보 신청, 정관·등기 변경 비용, 영농계획·사업 계획 작 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환원계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작성에 대한 자료는 미비하여 정량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본 규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법인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편익이 있음. 특히 농업경 영정보 등록,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위한 인 력·장비·재배기술 및 영농계획, 농촌공간계획과 의 정합성, 발전사업과 농업생산활동 및 주민환원 관련 회계의 구분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건 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 및 관 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미해당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293.69		37.11	
15.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농업법인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정관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에 농업경영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당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것 3. 발전사업부지에서 소속 조합원·사원·임직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장비·재배기술 및 영농계획을 갖출 것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의 지정 목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5. 발전사업 회계와 농업생산활동·주민환원 관련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6. 농업회사법인은 발전사업부지가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된 매립지등은 제외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의 범위와 요건의 위임 규정으로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을 정의하고 있음
 -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를 위해 영농형태양광법은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을 발전사업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 농업법인 범위 설정 필요
 - 이 경우, 기존 농촌 태양광 사업 확산 당시 외부 투기자본의 유입과 그에 따른 발전수익 유출 문제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자격요건
	내용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사업 지역이 국가관리간척지로 한정된 농업회사법인의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실질 영농요건, 인력·장비·회계·주민환원 체계 구축을 사업 신청 요건으로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자격요건 미설정(완화)
	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농 인력, 장비, 재배기술 및 사업계획 등 일부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간 공동영농을 가능케 하면서 외부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농지 개발 억제 가능	국가관리간척지 외 사업을 하려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참여 제한 발생
규제대안2	농업법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 사업 준비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	형식적 영농이나 영농 지속성 저하 발생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하위법령 반영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농업법인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것으로,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발전사업 규모화·집적화를 통한 농업인·농촌 주민의 소득 제고와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 등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허용이 타당하며,
- 비농업인의 참여가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외부 투기자본의 유입에 따른 발전수익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침 등을 통해 관리 가능한 국가관리간척지에 한정하여 발전사업을 허용할 필요

3. 규제목표

- 농지로서 발전사업부지 내 농업인 등의 영농활동과 발전사업 병행 보장과 해당 발전사업의 규모화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의 소득 제고를 위해 농업법인의 제한적인 발전사업 참여 필요
 - 이 경우, 농업인 5인 이상이 설립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영농 및 발전사업 규모화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어 별도의 제한 없이 참여를 허용하여야 하며,
 - 비농업인의 출자 및 참여가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은 정부가 지침을 통해 관리 가능한 국가관리 간척지에 한정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필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 및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제한적 발전사업 참여가 필요
 - 다만, 발전수익 외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정부가 관리 가능한 국가관리간척지에만 사업 지역을 한정할 필요
- 본 규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업생산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실제 농업경영 및 지속적인 영농 활동 수행능력을 갖춘 농업법인에 한하여 사업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유지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각 요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 및 규제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자의 영농 수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농업법인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농업법인의 범위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창업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농업법인의 범위는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 등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농업법인의 범위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규제 차등화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 및 농업인 등 소득 제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조건으로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26년 6월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으로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병행을 위하여 도입된 신규 제도로 '26년 12월 법령에 따른 관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일몰 설정 어려움

또한 농업법인의 범위 및 자격요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가 실질적인 농업경영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 자격에 관한 기준이며,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성 확보 및 형식적인 농업법인의 사업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몰 설정이 어려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 규정은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열거
유연한 분류 체계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발전사업자의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분류 필요
네거티브 리스트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 등 발전사업의 도입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 허용 범위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바,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이 어려움
사후 평가관리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 등 발전사업의 도입 목적과 발전사업자 대상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유지할 필요
규제 샌드박스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 등 발전사업의 도입 목적과 발전사업자 대상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유지할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프랑스, 대만 등은 발전부지 기준 발전사업자와 농업경영인 분리 가능, 농업법인 외 일반법인도 발전사업 허용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구분 없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자격요건>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93.69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자격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93.69		293.6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93.69		293.69
기업순비용		293.69	연간균등순비용	37.11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인 법인 운영 능력을 갖춘 농업법인은 인력·영농계획·회계 등 발전사업 참여 요건 준수 가능
- 본 규제의 각 요건은 농업법인의 기존 농업경영 활동 및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충족할 수 있고, 신규 제도의 도입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됨
- 또한,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됨.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법인의 경우 해당 규제의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인등기, 농업경영정보, 사업계획 등 제출자료를 통해 농업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행정정보와 허가절차를 활용하는바, 추가적 재정소요 없이 농업법인 대상 요건 확인 등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기준 설정을 위한 다수의 논의 진행
- (전문가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등 포함한 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26.7월~10월)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 영농형 태양광 제도 관련 권역별 설명회, 농업인 등 대상 교육·컨설팅 등과 함께 제도개선 수요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	—	—	—

4.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로서 농업법인의 범위와 사업 신청 요건은 발전사업 규모화·집적화와 더불어 발전수익에 따른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 특히, 기존 농촌 태양광 확산 당시 발생한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발전수익 유출 문제가 영농형 태양광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비농업인의 출자·참여가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업영역을 정부가 지침 등으로 관리 가능한 국가관리간척지에 한정할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자격요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93.69		293.6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93.69		293.69
기업순비용		293.69	연간균등순비용	37.11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본 규제에서는 농업법인의 범위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음. 피규제자인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는 농업경영정보 신청, 정관·등기 변경 비용, 영농계획·사업 계획 작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환원계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작성에 대한 자료는 미비하여 정량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본 규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법인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편익이 있음. 특히 농업경영정보 등록,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위한 인력·장비·재배기술 및 영농계획,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 발전사업과 농업생산활동 및 주민환원 관련 회계의 구분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자격요건>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농업경영정보 신청에 따른 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6,896,96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건당 농업경영정보 신청 인건비 x 연간 피규제건수 (4315*202)										
근거설명	○ 본 규제에서는 농업법인의 범위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음. 피규제자인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는 농업경영정보 신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건당 농업경영정보 신청 인건비) 4,315원 * 연간 투입인원 1명 x 투입시간 10분 x 25,839원 - (연간 투입인원) 농업경영정보 관련 자료 준비는 법인 대표 등 1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연간 투입 인원은 1명으로 가정 - (연간 투입시간) 농업경영정보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완 또는 작성·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으로 가정 - (시간당 근로임금) 농림어업 분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5,839원('25년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산정 - (연간 피규제건수) 피규제자 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건*의 1%(18,377건) x 청년농업인(약 1.1%)로 약 202건 산정 * 농업경영체 등록 건 : 1,837,748건 (개인 1,819,484 / 법인 18,264건) ** 농업경영정보는 기 보유 서류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약 1%)와 신규신청이 필요한 청년농업인을 고려하여 피규제자 산정										
< 농업경영정보 신청에 따른 비용 > <table><tr><td>년도</td><td>건당</td><td>연간</td><td>비용</td><td>현재가치</td><td>할인율</td></tr></table>						년도	건당	연간	비용	현재가치	할인율
년도	건당	연간	비용	현재가치	할인율						

	농업경영 정보 신청 인건비 (A, 원)	피규제 건수 (B, 건)	(E=A*B*C*D, 백만 원)	(F=E*G, 백만 원)	(G)
1년차	4,315	202	0.87	0.83	0.957
2년차	4,315	202	0.87	0.80	0.916
3년차	4,315	202	0.87	0.76	0.876
4년차	4,315	202	0.87	0.73	0.839
5년차	4,315	202	0.87	0.70	0.802
6년차	4,315	202	0.87	0.67	0.768
7년차	4,315	202	0.87	0.64	0.735
8년차	4,315	202	0.87	0.61	0.703
9년차	4,315	202	0.87	0.59	0.673
10년차	4,315	202	0.87	0.56	0.644
총비용				6.89	

(정량)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 목	정관·등기 변경 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62,902,58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건당 정관·등기 변경 인건비+건당 기타 발생 비용) x 연간 피규제건수 ((51678+50240)*202)
근거설명	○ 본 규제에서는 농업법인의 범위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음. 피규제자인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는 정관·등기 변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건당 정관·등기 변경 비용) <u>101,918원</u> ※ (건당 인건비) 51,678원 * 투입인원 1명 x 투입시간 120분 x 25,839원 － (연간 투입인원) 정관·등기 변경 관련 작성은 1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연간 투입 인원은 1명으로 가정 － (연간 투입시간) 정관·등기 변경에 대한 작성 시간을 약 2시간으로 가정 － (시간당 근로임금) 농림어업 분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5,839원('25년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산정 － (연간 피규제건수) 피규제자 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의 1%(18,377건) x 청년농업인(약 1.1%)로 약 202건 산정 * 농업경영체 등록 건 : 1,837,748건 (개인 1,819,484 / 법인 18,264건)

** 농업경영정보는 기 보유 서류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약 1%)와 신규 신청이 필요한 청년농업인을 고려하여 피규제자 산정

※ (기타 발생 비용) = 50,240원

-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목적변경을 위한 등록면허세 40,200원
-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 수수료 2,000원 산정

< 정관·등기 변경에 따른 비용 >

년도	건당 정관 등기 변경 인건비 (A, 원)	건당 기타 발생 비용 (B, 원)	연간 피규제 건수 (C, 건)	비용 (D= (A+B)*C, 백만 원)	현재가치 (E=D*F , 백만 원)	할인율 (F)
1년차	51,678	50,240	202	20.59	19.70	0.957
2년차	51,678	50,240	202	20.59	18.85	0.916
3년차	51,678	50,240	202	20.59	18.04	0.876
4년차	51,678	50,240	202	20.59	17.26	0.839
5년차	51,678	50,240	202	20.59	16.52	0.802
6년차	51,678	50,240	202	20.59	15.81	0.768
7년차	51,678	50,240	202	20.59	15.13	0.735
8년차	51,678	50,240	202	20.59	14.48	0.703
9년차	51,678	50,240	202	20.59	13.85	0.673
10년차	51,678	50,240	202	20.59	13.26	0.644
총비용					162.9	

(정량)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 목	영농·사업 계획 작성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23,900,77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건당 영농·사업계획 작성 인건비 x 연간 피규제건수 (77517*202)
근거설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허가 세부기준(별표1)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 · 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통일적, 구체적 허가 기준 설정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농지에서 20년 이상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바, 농지 보전, 식량안보 유지 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선정은 필수적														
	7.규제내용	○ 법 제8조제3항의 허가 심사요소를 시행령(안) 제11조 및 별표1에서 구체화 ○ 발전설비 구조·규격, 영농계획 이행가능성, 경관·생태계·농지보전, 송·배전설비 이용가능성 및 공익상 기준을 종합 심사 ○ 법 제8조제4항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제한 또는 허가조건 설정 가능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농업인단체 등</td><td></td></tr><tr><td>관련기관</td><td>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농업인단체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농업인단체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															

		○ 기대효과: 허가기준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92997.64		92997.64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본 규제에서는 발전사업자의 세부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피규제자인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는 영농계획·사업 계획, 발전설비·안전·환경, 영농실적·회계 관리 자료 작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농지보전·원상회복 계획 및 주민협의·주민환원계획 작성에 대한 자료는 미비하여 정량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본 규제는 허가 세부기준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역량과 사업계획을 심사할 수 있게 되므로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허가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형		44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70101~20291231	3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92997.64		11752.93
	15.규제정비 계획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1조 및 별표 1, 제12조제1항제2항(허가기준,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허가 기준)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해야 한다. 다만,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 판단 참고기준, 자료 작성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u>허가기준(제11조제1항 관련)</u> 1. 일반기준 가. 이 표의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허가요건 및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허가 여부의 판단,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의 설정에 적용한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의 전체 구역과 각 필지별 영농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이 표를 적용해야 한다.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주민 의견수렴 결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현장확인 결과, 지역별·작물별 영농 여건, 발전설비의 구조·안전성 및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표의 세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표의 세부 기준 중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요건 또는 농업생산활동의 지속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 여부,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주민환원계획의 구체성, 회계 구분관리 및 정보공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고,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 또는 이행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세부기준 <table> <tr> <th>구분</th><th>세부기준</th></tr> <tr> <td>1. 신청인 및 사업수행능력</td><td> 가. 법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영농책임자 지정 등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영농기술 및 영농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채원조달, 보험가입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 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라. 발전사업자의 명의대여, 허가요건 회피를 위한 사업분할, 위장 임대차, 거짓 영농계획 또는 형식적 주민참여 등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 </td></tr> <tr> <td>2.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td><td> 가.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요건에 적합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td></tr> </table>	구분	세부기준	1. 신청인 및 사업수행능력	가. 법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영농책임자 지정 등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영농기술 및 영농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채원조달, 보험가입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 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라. 발전사업자의 명의대여, 허가요건 회피를 위한 사업분할, 위장 임대차, 거짓 영농계획 또는 형식적 주민참여 등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	2.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가.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요건에 적합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구분	세부기준						
1. 신청인 및 사업수행능력	가. 법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영농책임자 지정 등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영농기술 및 영농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채원조달, 보험가입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 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라. 발전사업자의 명의대여, 허가요건 회피를 위한 사업분할, 위장 임대차, 거짓 영농계획 또는 형식적 주민참여 등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						
2.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가.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요건에 적합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현행	개정안	
		수 있을 것 나. 소유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권원을 발전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임차농지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가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의 존속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농지의 집단화, 배수·관수 체계, 농로, 농업용수 이용, 인접 농지의 일조·통풍 및 주변 농지의 농업생산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라. 발전사업 종료, 허가취소 또는 사용권원 소멸 시 농지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원상회복 계획, 복구비용 산정 및 비용 확보방안이 적정할 것 마. 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발전사업부지가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 발전설비 및 안전관리계획	가. 발전설비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조로 설치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적합할 것 나. 발전설비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 구조안전, 화재예방, 풍수해 예방, 감전·누전 방지 및 계통연계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시공·운영·유지관리 과정에서 토양오염, 농지 훼손, 배수 장애, 농업용수 오염, 폐기물 발생 또는 인접 농지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 라.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조치, 관계기관 보고, 설비 차단, 영농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계획이 적정할 것
	4. 영농계획	가. 재배 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작부체계, 재배면적, 영농책임자, 참여인력, 노동력 확보방안, 농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 및 이용계획, 주요 농자재·영농비용의 조달계획 및 생산물의 수확·판매·자가소비 등 처분계획이 구체적일 것 나. 발전설비의 차광, 통풍, 배수, 농기계 작업성 및 농작업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영 제21조에 따라 재배가 제한되는

현행	개정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영농활동 일지, 사진·영상자료, 농산물 출하·판매자료, 자가소비 확인자료, 농자재 구입자료 등으로 영농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마.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생육관리, 수확 또는 생산물 처분 계획이 명확할 것
	5. 농지보전·환경·원상회복	가. 발전설비의 기초공사, 배선공사, 관리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설치가 농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을 것 나. 토양유실, 토양다짐, 배수불량, 농업용수 오염, 폐기물 방치 및 농업생산기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일 것 다. 주변 경관, 주거환경, 생태계, 문화재, 재해위험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라. 발전사업 종료, 허가취소 또는 농지 임대차 종료 시 설비 철거, 폐기물 처리, 토양 복구 및 농업생산기반 회복 절차가 명확할 것
	6. 주민수용성 및 주민환원	가. 제9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적절하게 거치고,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가 합리적으로 제시될 것 나.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안전사고, 경관·환경 영향 및 인접 농지 피해에 대한 예방·처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다.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이 구체적이고, 환원재원의 산정·집행·공개 및 회계관리 체계가 투명할 것
	7. 공익상 기준	가. 농업생산기반 보전,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할

현행	개정안	
		것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목적, 법 제 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관계 법령상 토지이용 규제와 정합성이 있을 것 다.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지역, 개발행위 제한, 환경·재해·문화재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거나 필요한 인허가·협의의 이행 가능성이 있을 것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판단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발전사업의 허가)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발전사업부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비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발전설비가 농기계 등의 운용, 일조량 확보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와 규격을 갖추었

법령명	조문내용
	2. 발전사업부지에서 영농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주변 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호 및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을 위하여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이 가능할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9조에 따른 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 허가 신청·심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는 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 허가 심사와 그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을 영농태양광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구체화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허가 세부기준(별표1)
	내용	발전설비가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영농계획의 지속적 이행이 가능하며, 농지 보전·주변 환경 및 안정적인 발전사업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규제대안2	대안명	허가 세부기준 완화
	내용	안전 및 발전설비 설치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영농계획 이행 및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시행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허가의 예측가능성과 지역 간 일관성을 높이고 부실사업·난개발을 사전에 차단 가능	신청인이 다수 분야의 계획과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초기 행정 부담 발생
규제대안2	허가단계에서 사업자의 준비 및 행정부담 감소	영농 지속성 및 사업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약화되어, 형식적 영농이나 농업 생산기반 훼손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하위법령 반영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발전사업부지(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 * 신청인의 사업수행 능력, 부지의 사용권원, 발전설비 안전, 영농계획, 농지 보전·환경·원상회복 가능성, 주민수용성 및 주민환원계획 등 포함

3. 규제목표

- 발전사업자가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장기간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필요

- 신청요건으로서 발전사업자의 자격확인 외 앞으로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은 필수적이며,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허가 기준 및 절차는 발전사업자가 20년 이상 해당 부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최소 규정임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내 허가기준

1. 신청인 및 사업수행능력

- 가. 법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나.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영농책임자 지정 등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영농기술 및 영농관리체계를 갖출 것
- 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재원조달, 보험가입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 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 라. 발전사업자의 명의대여, 허가요건 회피를 위한 사업분할, 위장 임대차, 거짓 영농계획 또는 형식적 주민참여 등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

2.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 권원

- 가.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요건에 적합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 나. 소유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권원을 발전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임차농지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가 확인되고, 임대차 계약의 존속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다. 농지의 집단화, 배수·관수 체계, 농로, 농업용수 이용, 인접 농지의 일조·통풍 및 주변 농지의 농업생산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라. 발전사업 종료, 허가취소 또는 사용권원 소멸 시 농지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원상회복계획, 복구비용 산정 및 비용 확보방안이 적정할 것
- 마. 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발전사업부지가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 발전설비 및 안전관리계획

- 가. 발전설비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조로 설치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발전설비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 구조안전, 화재예방, 풍수해 예방, 감전·누전 방지 및 계통연계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시공·운영·유지관리 과정에서 토양오염, 농지 훼손, 배수장애, 농업용수 오염, 폐기물 발생 또는 인접 농지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

라.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조치, 관계기관 보고, 설비 차단, 영농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계획이 적정할 것

4. 영농계획

가. 재배 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작부체계, 재배면적, 영농책임자, 참여인력, 노동력 확보 방안, 농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 및 이용계획, 주요 농자재·영농비용의 조달계획 및 생산물의 수확·판매·자가소비 등 처분계획이 구체적일 것

나. 발전설비의 차광, 통풍, 배수, 농기계 작업성 및 농작업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영 제21조에 따라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영농활동 일지, 사진·영상자료, 농산물 출하·판매자료, 자가소비 확인자료, 농자재 구입자료 등으로 영농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마.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생육관리, 수확 또는 생산물 처분 계획이 명확할 것

5. 농지 보전·환경·원상회복

가. 발전설비의 기초공사, 배선공사, 관리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설치가 농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을 것

나. 토양유실, 토양다짐, 배수불량, 농업용수 오염, 폐기물 방치 및 농업생산기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일 것

다. 주변 경관, 주거환경, 생태계, 문화재, 재해위험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라. 발전사업 종료, 허가취소 또는 농지 임대차 종료 시 설비 철거, 폐기물 처리, 토양 복구 및 농업생산기반 회복 절차가 명확할 것

6. 주민 수용성 및 주민 환원

가. 제9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적정하게 거치고,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가 합리적으로 제시될 것

나.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안전사고, 경관·환경 영향 및 인접 농지 피해에 대한 예방·처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다.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이 구체적이고, 환원재원의 산정·집행·공개 및 회계관리 체계가 투명할 것

7. 공익상 기준

가. 농업생산기반 보전,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할 것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목적,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관계 법령상 토지이용 규제와 정합성이 있을 것

다.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지역, 개발행위 제한, 환경·재해·문화재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거나 필요한 인허가·협의를 이행 가능성이 있을 것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발전사업자 허가기준은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발전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의무 부과를 위한 조항의 성격이 아님
- 동 시행령의 허가기준 및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여 20년 이상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규정
- 세부 허가기준은 주민 수용성, 영농활동 지속 가능성, 발전설비 관리 역량 등 발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판단 기준임
- 따라서, 동 규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장기적 안정성과 농지 보전,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목적에 비해 피규제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아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허가 기준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허가 기준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허가 기준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진입규제
② 규제 방식	허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나 준수 수준이 달라지지 않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 또는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공통 기준임.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광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허가 기준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규제 차등화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지속을 위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요건으로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재검토기한 설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은 2027년 1월1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검토기한 설정)**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역별·작물별 사업여건과 적정 사업규모에 관한 경험 축적이 되지 않는 만큼, 실제 운영결과에 따라 제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 병행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심사 기준은 동 규정에서 모든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 최소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 상태임
유연한 분류 체계		발전사업 허가 심사 기준 구체화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분류 필요
네거티브 리스트		영농활동 유지, 주민수용성 확보 및 발전설비 관리 등 발전사업의 안정적 운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 심사 관련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바,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이 어려움
사후 평가관리		영농활동 유지, 주민수용성 확보 및 발전설비 관리 등 발전사업의 안정성과 발전사업자 대상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요건을 명확히 유지할 필요
규제 샌드박스		영농활동 유지, 주민수용성 확보 및 발전설비 관리 등 발전사업의 안정성과 발전사업자 대상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요건을 명확히 유지할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허가 조건에 작물 생산 계획(생산성, 수익성 등), 농업인 자격 증명, 원상 복구 가능성 등을 규정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허가 심사 기준으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전기사업의 계획적 수행, 공급구역 중복 배제(배전사업 등), 공급능력 확보(구역전기사업) 등을 규정

< 참고 : 전기사업법 제7조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전기사업법은 허가기준 내 공익상 필요에 대해 전력 계통 및 전력수급 안정 중심으로 규정

< 참고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허가 세부기준(별표1)>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92,997.64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허가 세부기준(별표1)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92,997.64		92,997.6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92,997.64		92,997.64
기업순비용		92,997.64	연간균등순비용	11,752.93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발전사업의 허가 심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발전사업자가 영농형 태양광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 등을 통해 입증가능한 바, 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 능력을 갖춘 사업자는 해당규정 준수 가능
- 본 규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발전설비 및 안전관리계획, 영농계획, 농지보전·환경·원상회복, 주민수용성 및 주민환원, 공익상 기준 등 7개 분야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허가 신청 시 관련 계획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 내 허가 자료, 관계기관 의견, 현장확인 및 종합지원센터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허가행정과 관계기관 협업을 활용하여 별도의 재정 소요 없이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허가 심사 기준 설정을 위한 다수의 논의 진행
- (전문가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등 포함한 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26.7월~10월)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 해당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농업인 등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
- * 수도권(화성, 안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개선 등 진행할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업여건과 적정 사업규모에 관한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은 만큼, 실제 운영 결과에 따라 제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1조 및 별표 1, 제12조제1항제2항(허가기준,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허가 운영실적과 보완, 불허 사례 등을 분석하여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허가기준을 정비한다. 사업 규모 제한과 허가조건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명확	2027년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 최초 검토는

		히 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심사요건과 조건은 축소, 완화 검토	2029년까지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 추진
--	--	---	--

4.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심사 기준은 해당 발전사업부지 내 발전사업자의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 병행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 20년 이상 발전사업자가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 기준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허가 세부기준(별표1)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92,997.64		92,997.6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92,997.64		92,997.64
기업순비용		92,997.64	연간균등순비용	11,752.93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허가 세부기준(별표1)>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영농·사업 계획 작성 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1,247,368,89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건당 영농·사업계획 작성 인건비 x 연간 피규제자 수 (77517*18337)																																		
근거설명	○ 본 규제에서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피규제자인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는 영농·사업 계획 작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건당 영농·사업계획 작성 비용) 77,517원 ※ (1건당 인건비) 77,517원 * 투입인원 1명 x 투입시간 180분 x 25,839원 - (투입인원) 영농·사업계획 내용 관련 작성은 1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연간 투입 인원은 1명으로 가정 - (투입시간) 영농·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작성 시간을 약 3시간으로 가정 - (시간당 근로임금) 농림어업 분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 25,839원('25년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산정 - (연간 피규제건수) 피규제자 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건 *의 1%(18,377건)로 가정함. * 농업경영체 등록 건 : 1,837,748건 (개인 1,819,484 / 법인 18,264건) < 영농·사업 계획 작성에 따른 비용 > <table border="1"> <thead> <tr> <th>년도</th><th>건당 영농·사업 계획 작성 인건비 (A, 원)</th><th>연간 피규제 건수 (B, 건)</th><th>비용 (C=A*B, 백만 원)</th><th>현재가치 (D=C*E, 백만 원)</th><th>할인율 (E)</th></tr> </thead> <tbody> <tr> <td>1년차</td><td>77,517</td><td>18,337</td><td>1,421.43</td><td>1,360.22</td><td>0.957</td></tr> <tr> <td>2년차</td><td>77,517</td><td>18,337</td><td>1,421.43</td><td>1,301.65</td><td>0.916</td></tr> <tr> <td>3년차</td><td>77,517</td><td>18,337</td><td>1,421.43</td><td>1,245.59</td><td>0.876</td></tr> <tr> <td>4년차</td><td>77,517</td><td>18,337</td><td>1,421.43</td><td>1,191.96</td><td>0.839</td></tr> </tbody> </table>					년도	건당 영농·사업 계획 작성 인건비 (A, 원)	연간 피규제 건수 (B, 건)	비용 (C=A*B, 백만 원)	현재가치 (D=C*E, 백만 원)	할인율 (E)	1년차	77,517	18,337	1,421.43	1,360.22	0.957	2년차	77,517	18,337	1,421.43	1,301.65	0.916	3년차	77,517	18,337	1,421.43	1,245.59	0.876	4년차	77,517	18,337	1,421.43	1,191.96	0.839
년도	건당 영농·사업 계획 작성 인건비 (A, 원)	연간 피규제 건수 (B, 건)	비용 (C=A*B, 백만 원)	현재가치 (D=C*E, 백만 원)	할인율 (E)																														
1년차	77,517	18,337	1,421.43	1,360.22	0.957																														
2년차	77,517	18,337	1,421.43	1,301.65	0.916																														
3년차	77,517	18,337	1,421.43	1,245.59	0.876																														
4년차	77,517	18,337	1,421.43	1,191.96	0.839																														

	5년차	77,517	18,337	1,421.43	1,140.63	0.802
	6년차	77,517	18,337	1,421.43	1,091.51	0.768
	7년차	77,517	18,337	1,421.43	1,044.51	0.735
	8년차	77,517	18,337	1,421.43	999.53	0.703
	9년차	77,517	18,337	1,421.43	956.49	0.673
	10년차	77,517	18,337	1,421.43	915.30	0.644
	총비용				11,247.39	

(정량)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 목	발전설비·안전·환경 자료 작성 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36,760,818,84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건당 발전설비·안전·환경 자료 작성 비용 x 연간 피규제자 수 (253356*18337)										
근거설명	○ 본 규제에서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피규제자인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안전·환경 자료 작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1건당 발전설비·안전·환경 자료 작성) <u>253,356원</u> ※ (건당 인건비) 103,356원 * 투입인원 1명 x 투입시간 240분 x 25,839원 - (연간 투입인원) 발전설비·안전·환경 내용 관련 작성은 1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연간 투입 인원은 1명으로 가정 - (연간 투입시간) 발전설비·안전·환경 내용에 대한 작성 시간을 약 4시간으로 가정 - (시간당 근로임금) 농림어업 분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5,839원('25년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산정 - (연간 피규제건수) 피규제자 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건 *의 1%(18,377건)로 가정함. * 농업경영체 등록 건 : 1,837,748건 (개인 1,819,484 / 법인 18,264건) ※ (외부전문가 자문비용) 150,000원 * 자료의 적정성 관련 외부 전문가 1인에게 1시간 자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정, 정부기관 외부(민간) 전문가 자문수당 기준 최초 1시간 150,000원 적용 < 발전설비·안전·환경 자료 작성에 따른 비용 > <table> <tr> <th>년도</th><th>발전설비·안전·환</th><th>연간 피규제</th><th>비용 (E=A*B*C*D,</th><th>현재가치 (F=E*G,</th><th>할인율 (G)</th></tr> </table>					년도	발전설비·안전·환	연간 피규제	비용 (E=A*B*C*D,	현재가치 (F=E*G,	할인율 (G)
년도	발전설비·안전·환	연간 피규제	비용 (E=A*B*C*D,	현재가치 (F=E*G,	할인율 (G)						

	경 자료 작성 비용 (A, 원)	건수 (B, 건)	백만 원)	백만 원)	
1년차	253,356	18,337	4,645.79	4,445.73	0.957
2년차	253,356	18,337	4,645.79	4,254.29	0.916
3년차	253,356	18,337	4,645.79	4,071.09	0.876
4년차	253,356	18,337	4,645.79	3,895.78	0.839
5년차	253,356	18,337	4,645.79	3,728.02	0.802
6년차	253,356	18,337	4,645.79	3,567.48	0.768
7년차	253,356	18,337	4,645.79	3,413.86	0.735
8년차	253,356	18,337	4,645.79	3,266.85	0.703
9년차	253,356	18,337	4,645.79	3,126.17	0.673
10년차	253,356	18,337	4,645.79	2,991.55	0.644
총비용				36,760.82	

(정량)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 목	영농실적·회계 관리 자료 작성 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44,989,475,59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건당 영농실적·회계관리 작성 자료 비용 x 연간 피규제자 수 (310068*18337)
근거설명	○ 본 규제에서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피규제자인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는 영농실적·회계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영농실적·회계 관리 작성 비용) 310,068원 * 연간 투입인원 1명 x 투입시간 720분 x 25,839원 － (연간 투입인원) 농업경영정보 관련 자료 준비는 법인 대표 등 1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연간 투입 인원은 1명으로 가정 － (연간 투입시간) 농업경영정보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완 또는 작성·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으로 가정 － (시간당 근로임금) 농림어업 분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5,839원('25년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산정 － (연간 피규제건수) 피규제자 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의 1%(18,377건) x 청년농업인(약 1.1%)로 약 202건 산정 * 농업경영체 등록 건 : 1,837,748건 (개인 1,819,484 / 법인 18,264건)

< 영농실적·회계 관리 작성에 따른 비용 >					
년도	건당 영농실적·회계 관리 작성에 따른 비용 (A, 원)	연간 피규제 건수 (B, 건)	비용 (E=A*B*C*D, 백만 원)	현재가치 (F=E*G, 백만 원)	할인율 (G)
1년차	310,068	18,337	5,685.72	5,440.88	0.957
2년차	310,068	18,337	5,685.72	5,206.58	0.916
3년차	310,068	18,337	5,685.72	4,982.37	0.876
4년차	310,068	18,337	5,685.72	4,767.82	0.839
5년차	310,068	18,337	5,685.72	4,562.51	0.802
6년차	310,068	18,337	5,685.72	4,366.04	0.768
7년차	310,068	18,337	5,685.72	4,178.03	0.735
8년차	310,068	18,337	5,685.72	3,998.11	0.703
9년차	310,068	18,337	5,685.72	3,825.94	0.673
10년차	310,068	18,337	5,685.72	3,661.19	0.644
총비용				44,989.47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 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 목	발전사업자의 세부 허가기준 규정
편익항목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 · 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통일적, 구체적 허가 기준 설정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농지에서 20년 이상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바, 농지 보전, 식량안보 유지 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선정은 필수적		
	7.규제내용	○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의 적용기준·방식을 구체화 ○ 부지면적·발전용량 등 규모가 영농계획·농지·지역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 ○ 허가조건은 허가목적과 직접 관련되고 구체적·이행 가능한 사항으로 설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기업 · 소상공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 － (일반국민)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개인 농업인 ○ 피규제자 이외 이해관계자 － (기업 · 소상공인) 발전설비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업체, 전기안전관리 업체 등 － (일반국민) 발전사업부지 및 인접 농지의 소유자 · 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지역주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 ○ 관련기관 － (허가 · 관리) 시장 · 군수 · 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개인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발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 업체, 전기안전관리 업체, 전사업부지 및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지역주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신청인의 영농능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전사업을 허용함 ○ (기대효과) 무리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영농 부실, 농지 훼손 및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영농활동의 지속성, 발전설비의 안전성, 농지 보전 및 필요한 행정절차의 객관적 확인에 기여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본 규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신청인의 농업경영 여건, 작물 특성, 농업생산기반, 안전 및 주민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허가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임. － 동 조항은 발전사업자에게 별도의 자료 작성·제출, 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며,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또한 개별 사업여건과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므로 본 조항 자체로 인해 모든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움. － 개별 허가 과정에서 발전설비, 영농관리, 보험가입, 주민환원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조건이 설정되는 경우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각		

			조건의 적용 여부와 수준이 사업별로 상이하고, 통상적인 사업운영비와 본 규제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정량산정이 곤란함. － 편익 측면에서는 사업규모 및 허가조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허가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간 허가심사의 편차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훼손·부실사업·난개발 및 지역주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규 도입되는 제도로 허가기준 명확화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규모, 부실사업 및 난개발 예방건수, 인접 농지 및 주민피해 감소 규모 등 편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위한 실적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편익 또한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규제의 비용 및 편익은 별도의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피규제자의 부담 가능성과 허가기준 명확화 및 피해예방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형	44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70101~20291231	3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1조 및 별표 1, 제12조제1항제2항(허가기준,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전사업부지의 면적 및 발전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농업경영 규모, 영농경력, 노동력 및 농기계 보유·이용 여건 2. 작물별 재배 특성, 차광 영향, 수확량 저하 가능성 및 농업생산활동의 객관적 확인 가능성 3. 농업용수·배수, 농로, 농기계 통행, 인접농지의 일조·통풍 및 농업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 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가능성, 전기안전, 재해예방 및 원상회복 가능성 5. 발전사업부지 주변의 경관, 주거환경, 생태계, 역사·문화자원 및 주민 의견 6.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 주민환원계획의 실현 가능성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1. 발전설비의 구조·규격, 설치 간격, 배치, 차광률, 통행로, 배수·관수시설 및 안전시설에 관한 조건 2.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성, 의결권 구조, 사업운영 방식 및 주민환원계획에 따른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보에 관한 조건 3. 재배 작물, 재배방법, 영농기록, 수확·출하 증빙 및 현장확인에 관한 조건 4. 발전설비의 공사기간, 설치·유지관리, 정기점검, 사고보고 및 보험가입에 관한 조건 5. 주민 의견의 반영, 민원처리, 주민환원계획의 이행 및 공개에 관한 조건 6. 발전사업 종료, 허가취소, 사용권원 소멸 또는 임대차 종료 시 발전설비 철거, 폐기물 처리, 토양 복구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에 관한 조건 7.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보전, 농업생산활동의 지속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규모 제한과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발전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별·작물별 영농 여건, 발전설비의 기술 수준, 농업생산기반 및 농업소득의 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를 제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판단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발전사업의 허가)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발전사업부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비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법령명	조문내용
	1. 발전설비가 농기계의 운용, 일조량 확보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와 규격을 갖추는 것 2. 발전사업부지에서 영농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주변 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호 및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을 위하여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이 가능할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9조에 따른 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 허가 신청·심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는 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 허가 심사와 그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을 영농형태양광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구체화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내용	신청인의 영농능력, 작물특성, 농업생산기반, 안전, 주민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제한하도록 하고, 발전설비, 영농, 안전, 주민환원, 원상회복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

규제대안2	대안명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완화
	내용	사업규모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고, 안전·농업생산기반 보호 등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허가조건을 부과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허가의 예측가능성과 지역 간 일관성을 높이고 부실사업·난개발을 사전에 차단 가능	신청인이 다수 분야의 계획과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초기 행정 부담 발생
규제대안2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과도한 사업규모로 인한 영농 부실 및 농업생산기반 훼손 등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	하위법령 반영

		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발전사업부지(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 특히, 개인사업은 규모 제한없이 운영될 경우, 설비 난립, 외부자본 개입, 계통 독·과점 등 사업 편중에 따른 공동체 와해 문제 우려, 발전수익이 영농소득을 과도하게 상회하거나, 특정 주체에 편중되어 농업생산·농촌유지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규모 상한 설정

3. 규제목표

- 발전사업자가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장기간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필요
 -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은 필수적이며,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허가 기준 및 절차는 발전사업자가 20년 이상 해당 부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최소 규정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발전사업자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기준은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발전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의무 부과를 위한 조항의 성격이 아님
- 동 시행령의 허가기준 및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여 20년 이상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규정
- 따라서, 동 규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농업 생산활동의 지속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별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규제목적에 비해 피규제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아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에 필요한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사업운영
② 규제 방식	사업규모 제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나 준수 수준이 달라지지 않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 또는 추가비용을부과하지 않는 공통 기준임.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광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규제 차등화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지속을 위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요건으로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재검토기한 설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은 2027년 1월1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검토기한 설정)**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역별·작물별 사업여건과 적정 사업규모에 관한 경험 축적이 되지 않는 만큼, 실제 운영결과에 따라 제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 병행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심사 기준은 동 규정에서 모든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 최소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 상태임
유연한 분류 체계		발전사업 허가 심사 기준 구체화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분류 필요
네거티브 리스트		영농활동 유지, 주민수용성 확보 및 발전설비 관리 등 발전사업의 안정적 운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 심사 관련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바,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이 어려움
사후 평가관리		영농활동 유지, 주민수용성 확보 및 발전설비 관리 등 발전사업의 안정성과 발전사업자 대상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요건을 명확히 유지할 필요
규제 샌드박스		영농활동 유지, 주민수용성 확보 및 발전설비 관리 등 발전사업의 안정성과 발전사업자 대상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요건을 명확히 유지할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허가 조건에 작물 생산 계획(생산성, 수익성 등), 농업인 자격 증명, 원상 복구 가능성 등을 규정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허가 심사 기준으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전기사업의 계획적 수행, 공급구역 중복 배제(배전사업 등), 공급능력 확보(구역전기사업) 등을 규정

< 참고 : 전기사업법 제7조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전기사업법은 허가기준 내 공익상 필요에 대해 전력 계통 및 전력수급 안정 중심으로 규정

< 참고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업규모 제한 시 고려사항과 허가조건의 범위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발전사업자가 허가 신청 전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의 농업경영 여건, 작물특성, 농업생산기반, 안전 및 주민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와 허가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사업의 여건에 맞게 적용될 수 있음.
- 사업규모 제한과 허가조건은 발전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전사업자가 해당 기준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 내 허가 자료, 관계기관 의견, 현장확인 및 종합지원센터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허가행정과 관계기관 협업을 활용하여 별도의 재정 소요 없이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허가 심사 기준 설정을 위한 다수의 논의 진행
- (전문가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등 포함한 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26.7월~10월)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 해당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2개소)을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농업인 등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
- * 수도권(화성, 안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개선 등 진행할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업여건과 적정 사업규모에 관한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은 만큼, 실제 운영 결과에 따라 제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1조 및 별표 1, 제12조제1항제2항(허가기준, 사업규모 제한	허가 운영실적과 보완, 불허 사례 등을 분석하여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허가기준을 정비한다. 사업 규모 제한과 허가조건은 사업 목적 달성에	2027년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 최초 검토

	및 허가조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명확히 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심사요건과 조건은 축소, 완화한다	는 2029년까지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 추진
--	---------	---	---

4.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심사 기준은 해당 발전사업부지 내 발전사업자의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 병행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 20년 이상 발전사업자가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 기준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본 규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신청인의 농업경영 여건, 작물특성, 농업생산기반, 안전 및 주민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허가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임.
- 동 조항은 발전사업자에게 별도의 자료 작성·제출, 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며,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또한 개별 사업여건과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므로 본 조항 자체로 인해 모든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움.
- 개별 허가 과정에서 발전설비, 영농관리, 보험가입, 주민환원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조건이 설정되는 경우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각 조건의 적용 여부와 수준이 사업별로 상이하고, 통상적인 사업운영비와 본 규제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정량산정이 곤란함.
- 편익 측면에서는 사업규모 및 허가조건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허가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간 허가심사의 편차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훼손·부실사업·난개발 및 지역주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규 도입되는 제도로 허가기준 명확화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규모, 부실사업 및 난개발 예방건수, 인접 농지 및 주민 피해 감소 규모 등 편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위한 실적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편익 또한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규제의 비용 및 편익은 별도의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피규제자의 부담 가능성과 허가기준 명확화 및 피해예방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 조건 적용
비용항목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 조건 준수에 따른 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사업규모 제한 또는 발전설비·영농·안전·주민환원·원상회복 등에 관한 허가조건이 설정될 경우 일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조문상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업여건에 따라 적용 여부와 수준이 달라 직접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또한,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신청한 사업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별 여건 및 제한 수준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비용 산정이 곤란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허가기준 사전 확인 및 사업계획 조정
편익항목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의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어 사업자가 허가 신청 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조정·보완할 수 있음. ○ 또한 허가심사 시 고려사항이 사전에 명확해져 허가기준의 불확실성과 사업계획의 반복적인 수정·보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기준 및 절차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농지전용 방식의 농촌 태양광 확산에 따른 농지 훼손·식량안보 우려에 대응하여, 농지에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6.6월)됨 － 법 제7조는 발전사업의 기간을 허가일부터 30년 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최초 허가기간과 연장의 기준·절차에 관한 기존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 (정부개입 필요성) 발전사업 허가는 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의제하므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사실상 무기한 지속되어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아울러 법 제13조의 영농 의무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기가 없으면 사후 제재처분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허가기간과 연장의 기준·절차를 법령으로 정할 필요		
	7.규제내용	○ 발전사업의 최초 허가기간을 허가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기간,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 존속기간 또는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발전사업자가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기간의 총합은 18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천재지변·재난·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준수사항 이행 실적, 농업생산활동의 계속 가능성 및 발전설비의 안전성, 사용권원 및 임대차계약의 존속 가능성, 주민환원 이행 실적, 농지의 보전상태·원상회복 가능성 및 복구비용 확보 여부, 전기사업 관련 절차의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기업 · 소상공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 (일반국민)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 피규제자 이외 이해관계자 － (기업 · 소상공인) 발전설비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 업체, 금융 · 보험기관 － (일반국민) 농지 임대인, 인접 농지의 소유자 · 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 · 면 · 동 주민 ○ 관련기관 － (허가 · 감독) 시장 · 군수 · 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발전설비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 업체, 금융 · 보험기관, 농지 임대인, 인접 농지의 소유자 · 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 · 면 · 동 주민 등</td><td></td></tr><tr><td>관련기관</td><td>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이해관계자	발전설비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 업체, 금융 · 보험기관, 농지 임대인, 인접 농지의 소유자 · 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 · 면 · 동 주민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이해관계자	발전설비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 업체, 금융 · 보험기관, 농지 임대인, 인접 농지의 소유자 · 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 · 면 · 동 주민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발전사업의 기간과 연장의 기준 · 절차를 명확히 하여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무기한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연장 심사를 통해 영농 의무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 － 연장 신청 건 중 준수사항 이행이 확인되어 연장된 비율 및 농지 원상회복 이행률로 달성 여부를 측정 ○ (기대효과) 사업자에게는 연장 요건과 절차가 사전에 제시되어 사업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이행 실적이 부실한 사업이 연장 단계에서 정리되어 농지 보전과 인접 농지 피해 예방 효과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분석방법) 정성분석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규 제도로 현재 허가·연장 실적이 없고, 피규제자도 기존 허가사업자 중 실제 연장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어 연도별 대상자 수와 비용 발생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연장신청 시 기존 허가대장·준수사항 이행자료·관계 행정정보를 우선 활용하고 기 제출자료의 재제출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추가 행정부담의 규모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 ○ (비용) － 허가기간 연장신청 시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정리·제출에 따른 행정부담이 발생하며, 사업기간의 상한 설정으로 장기 투자·금융조달 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비용은 실제 연장신청자에게 한정되어 발생하고, 기존 자료 활용 및 재제출 금지 등을 통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편익) － 연장 기준·절차 및 고려사항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사업자는 연장을 통해 최장 23년의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연장심사를 통해 영농 의무 이행, 농지 보전상태, 사용권원 및 임대차 존속 가능성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실사업의 장기화, 농지 훼손 및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 (종합) － 연장신청에 따른 행정부담 등 비용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피규제자 수 및 추가 업무량에 관한 실적자료가 없어 정량산정이 곤란함. － 반면 사업기간의 예측가능성 제고, 농지 보전 및 부실사업 예방 등의 편익이 기대되므로 비용·편익을 정성적으로 분석함. ○ (향후 계획) － 법 시행 이후 허가·연장 실적과 서류 준비 부담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재검토기한에 맞추어 정량분석 가능 여부와 허가기간·연장기간		

		의 적정성을 재검토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행	44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70101~20291231	3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발전사업의 기간)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발전사업의 최초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기간,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 존속기간 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가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의 총합은 1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가 천재지변, 재난,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실적 2. 농업생산활동의 계속 가능성 및 발전설비의 안전성 3.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 및 임대차계약의 존속 가능성 4. 주민환원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이행 실적 및 향후 이행 가능성 5. 농지의 보전상태, 원상회복 가능성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 여부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계통연계 및 전기안전 관련 절차의 유지 여부

현 행	개 정 안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의 방법, 연장 여부의 심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이 농지전용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농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 536% 증가

- 농지전용 방식은 해당 농지에서의 농업생산활동이 종료되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지 보전·식량안보 유지가 상충하는 구조

- (제도 도입) 정부는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라는 3대 원칙 아래 농지에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6.16. 제정, 법률 제21804호) 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범위, 발전사업 허가, 준수사항, 제재처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같은 법 제7조는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허가일부터 30년 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발전사업의 기간)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부지에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년 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기존 규제 및 자율규제 등의 운영실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최초 허가기간과 연장의 기준·절차에 관한 기존 규제는 존재

하지 않으며, 현재는 다음의 상태에 있음

- (실증사업·시범사업) 사업별로 정한 기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법령상의 허가기간이 아니어서 연장의 기준·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농지법」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사용목적별로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인 영농 의무의 이행 실적을 연장 심사에 반영하는 구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전기사업법」 발전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에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어, 농지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함

○ (문제점) 기존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사업 허가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사실상 무기한 지속되어,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과 농업생산기반의 보전을 담보할 수 없음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농지법」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의 영농 의무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기가 없어 시정명령·사업정지·과징금 등 사후 제재처분에만 의존하게 되고, 위반이 확인되기 전까지 농지 훼손이 누적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장의 기준과 절차가 없으면 허가권자별 판단 편차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사업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발전설비 투자와 금융조달 계획을 세우기 어려움
- 농지 임차인이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를 확인할 계기가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

나. 정부개입 필요성

- (시장실패) 발전사업자는 사업기간을 길게 확보할수록 유리하므로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과 인접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고려할 유인이 없으며,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기반은 개별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외부효과이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 농지 훼손과 원상회복 불능은 사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므로,

사업기간의 상한과 주기적인 연장 심사를 통해 사전에 규율할 필요

○ (비규제대안의 한계) 다음의 비규제적 수단을 검토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 (허가조건을 통한 개별 규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개별 허가조건으로 기간을 정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 편차가 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발전사업의 허가)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발전사업부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비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발전설비가 농기계의 운용, 일조량 확보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와 규격을 갖추는 것 2. 발전사업부지에서 영농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주변 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호 및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을 위하여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이 가능할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9조에 따른 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 허가 신청·심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후 이행점검과 제재처분) 시행령안 제24조의 이행 확인과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제재처분만으로는 위반이 확인된 이후에야 개입할 수 있어 농지 훼손의 사전 예방에 한계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된 발전사업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발전사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발전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의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조합원이 10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10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주민참여협동조합을 말한다.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허가된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발전사업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과징금 부과·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5억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령명	조문내용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횟수 ③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4조(준수사항 이행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의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제출자료의 검토 2. 농업경영정보, 전력거래자료, 전기사업 허가자료, 농지대장 등 관계자료의 확인 3. 현장확인, 사진촬영, 위치정보 확인 및 관계자 면담 4. 지원센터, 감독대행기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한국전기안전공사”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5. 원격탐사, 항공사진, 전자영농일지,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발전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수사항 이행 확인의 세부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표준계약서·컨설팅 등 지원수단) 법 제18조제3항의 표준계약서 보급과 법 제23조의 컨설팅은 임대차 분쟁의 예방에 기여하나 허가기간을 규율하는 수단이 되지 못함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차인 보호 등) ① 농지 임대인은 제8조에 따라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농지 임차인이 같은 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 및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가 유효한 범위에서 이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지 임차인이 농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농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농지 임대인이 농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법령명	조문내용
	4. 농지 임차인이 농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그 밖에 농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농지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지 임차인이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때에 임차인 보호 및 발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농지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3조(컨설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입의 근거) 법 제7조가 발전사업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기간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과 같도록 규정되어 있어(시행령안 제14조제3항) 농지 보전 체계와 직결되므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발전사업의 기간)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부지에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0년 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농지법」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때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관련 서류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함께

법령명	조문내용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농지전용·농지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은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기간과 같다. ④ 법 제15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도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복구비용 예치, 토양보전, 배수관리, 농지전용 방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정·예치·반환에 관하여는 「농지법」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기준 및 절차
	내용	최초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 3년 이내로 연장하되 연장기간의 총합을 18년으로 제한하며, 준수사항 이행 실적 등 6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
규제대안2	대안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기준 및 절차 미설정
	내용	법 제7조의 30년 범위에서 최초 허가기간을 장기로 부여하고 연장 절차를 두지 않되, 시행령안 제24조의 준수사항 이행 확인과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제재처분으로 사후 규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연장 심사를 통해 준수사항 이행 실적과 사용권원·임대차 존속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영농 지속과 농지 원상회복 가능성을 담보하고, 사업자에게는 연장 요	3년마다 연장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기간의 총합이 법정 상한(30년)보다 짧아 장기 금융조달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건과 절차가 사전에 제시되어 예측 가능성이 확보됨	
규제대안2	사업자의 사업기간이 장기간 확정되어 투자와 금융조달 여건이 유리하고, 연장신청에 따른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영농 이행이 부실한 사업을 중간에 정리할 계기가 없어 사후 제재처분에만 의존하게 되고, 농지 훼손이 장기간 누적될 위험이 크며, 사용권원·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및 전기사업 허가와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단이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영농형 태양광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시행령안 제8조제2항에 1회 3년 이내, 연장기간 총합 18년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반영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26.6.12, '26.6.18)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시행령안 제8조제4항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등 연장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열거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규제대안 1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기준 및 절차의 법령 규정”을 선택
- (근거 1 - 문제 해결의 실효성) 기존 규제가 없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무기한 지속되어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법 제13조의 영농 의무 이행 실적을 확인할 계기가 없어 제도 전

체가 사후 제재에만 의존하게 됨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농지법」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거 2 - 규제대안 2와의 비교) 장기 허가 후 사후점검만으로 규율하는 경우 영농 이행이 부실한 사업을 중간에 정리할 수 없어 농지 훼손이 장기간 누적되고, 사용권원·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및 전기사업 허가와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단이 없음
- 다만 규제대안 2의 장점인 사업기간의 안정성은 연장기간의 총합을 18년까지 인정하여 이행 실적이 확인되는 사업자가 최장 23년의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대안 1 안에서

상당 부분 반영하였음

- (근거 3 - 이해관계자 의견) 농협 조합장 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효율성이 다소 낮더라도 발전사업의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연장 제도를 두되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식과 부합
- (근거 4 - 국내의 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음)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하여 농지 일시전용 허가기간을 정하고 요건 충족 시 갱신하는 구조를, 프랑스는 허가기간 종료 시 연장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어, 기간을 정하고 갱신하는 방식 자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율 방식임
- 국내에서도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산지관리법」의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사용기간을 정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유사하며, 특히 「농지법 시행령」 제38조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최초 5년 이내·연장기간 총합 18년 이내(1회 3년 이내)를 이미 정하고 있어 이 규정의 기간 체계와 동일
- (규제로서의 성격) 동 조항은 법 제7조의 위임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동시에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연장에 심사를 요구하는 신설 규제에 해당함
- 다만 그 수준은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과 영농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설정하였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신청

기한의 예외와 기 제출자료의 재제출 금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였음

3. 규제목표

- **(주된 목표)** 발전사업의 기간이 정해지고 연장 단계에서 영농 의무 이행이 확인됨으로써,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무기한 지속되지 않고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이 유지되는 상태
 - (지표 1) 연장 신청 건 중 준수사항 이행이 확인되어 연장된 비율
 - (지표 2) 허가기간 만료·연장 거부 시 농지 원상회복 이행을 및 복구비용 확보율
- **(부수 목표)** 사업자의 사업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및 농지 임대차 관계의 안정
 - (지표 3) 연장 신청 처리기간 및 보완요구 비율
 - (지표 5) 임차농지에서 임대차계약의 존속이 확인되어 연장된 비율 및 임대차 관련 민원 건수
- **(측정 방법)** 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2년 주기), 시행령안 제24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확인(연 1회 이상), 시행규칙안 제13조에 따른 허가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축적자료를 통해 측정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규제수단의 최소성

- 각 기준은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과 영농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다음의 근거에 따라 설정하였음

기준	설정 근거	완화가 곤란한 사유
최초 허가기간 5년 이내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라목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설정. 아울러 시행령안 제24조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법 제19조는 2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5년이면 영농 의무의 이행 실적을 반복적으로 축적하여 연장심사에서 판단할 수 있음. 또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기간,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 존속기간 및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관계와의 정합을 확보	최초 허가기간을 길게 할 경우 영농 의무의 이행이 부실한 사업을 중간에 정리할 계기가 없어져, 법 제13조의 준수사항과 법 제15조의 허가취소 규정이 사후 제재에만 의존하게 됨
1회 연장기간 3년 이내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나목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에 대하여 1회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설정. 아울러 시행규칙안 제6조제1항제5호가 최근 3년간의 준수사항 이행자료를 연장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연장 단위를 3년으로 하면 직전 허가기간의 이행 실적 전부가 심사 대상이 되어 심사와 자료 제출의 범위가 일치	연장 단위를 길게 하면 준수사항 이행 실적과 사용권원의 존속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주기가 길어져 연장 심사가 형식화되고, 제출자료의 대상기간과 심사 기간이 어긋나게 됨
연장기간 총합 18년 이내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나목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연장기간 총합을 18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설정. 그 결과 최초 허가기간과 합한 최장 23년은 현행 「농지법」령이 태양에너지 발	총합 상한을 두지 않으면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사실상 영구화되어 농지의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기준	설정 근거	완화가 곤란한 사유
	전설비에 대하여 이미 인정하고 있는 최장 일시사용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며, 법 제7조가 정한 30년의 범위 내에 있음	구조와 상충
만료 90일 전 연장신청	법 제8조제5항의 허가 처리기간(신청일부터 30일 이내)과 보완에 걸리는 기간, 시행령안 제8조제4항의 6개 고려사항에 대한 심사 및 관계 행정정보 확인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	신청기한을 단축하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발전사업이 중단되는 공백이 발생.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천재지변·재난·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나. 상위법령 위임범위와의 관계

- 법 제7조는 발전사업의 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년 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여, 30년을 상한으로 하되 그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간과 정하는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안은 이 범위에서 최초 허가기간 5년과 연장기간 총합 18년을 정하여 최장 23년의 사업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30년을 그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이 발전사업의 기간과 같도록 규정되어 있어(시행령안 제14조제3항)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통상적인 내용 연수를 고려할 때 최장 23년이면 설비의 수명 범위에서 사업이 완결될 수 있으며 ▲영농 의무의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채택하였기 때문임

- 특히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법」 제36조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용기간을 최초 5년 이내(제1항제1호라목), 연장기간 총합 18년 이내·1회 3년 이내(제2항제1호나목)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안 제8조가 이와 동일한 기간 체계를 채택한 것은 의제 제도의 정합상 필연적인 결과임
- 만일 시행령안이 이와 다른 기간을 정하였다면 본 허가의 기간과 의제되는 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이 어긋나 법 제10조의 의제가 형해화되었을 것인바, 동 규정은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정합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에 해당함
- 이행 실적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연장을 통해 최장 23년의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연장 여부의 고려사항이 시행령안 제8조제4항에 열거되어 있어 사업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지 않음

다. 경직성 완화 장치

- 시행령안 제8조제3항 — 천재지변·재난·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의 구제 수단을 마련
- 시행령안 제8조제4항 — 연장 여부를 획일적 요건이 아니라 준수사항 이행 실적 등 6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 시행규칙안 제2조제4항 — 전기·건축·소방·재난안전·환경 등 관계 법령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중복·

상충 규제를 방지

- 시행규칙안 제6조제2항·제3항 — 기존 허가대장, 준수사항 이행 확인 결과 및 관계 행정정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이미 제출되어 보관 중이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재제출을 금지
- 법 제18조 — 농지 임차인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용 권원의 존속 가능성이라는 연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발전사업의 기간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발전사업의 기간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발전사업의 기간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사업운영
② 규제 방식	허가기간 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나 준수 수준이 달라지지 않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 또는 추가비용을부과하지 않는 공통 기준임.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광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발전사업의 기간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규제 차등화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정책자금·보험 연계 등 유인수단을 통해 영농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은 사후 회복이 곤란한 사항이어서 허가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 불가피

- 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발전사업의 최초 허가기관과 연장기간 및 연차요건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농업생산활동의 지속 여부, 발전설비의 안전성, 부지 사용권원 및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기준으로 일몰 설정이 어려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 규정은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자의 기준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발전사업자 기준을 정의하여 발전사업자의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분류 필요
네거티브 리스트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 등 발전사업의 도입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바,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이 어려움
사후 평가관리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 등 발전사업의 도입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명확할 필요
규제 샌드박스		발전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 등 발전사업의 도입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명확할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농림수산성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한 농지 전용 허가 제도상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2024년~)을 통해 농지 일시전용의 허가기간을 정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허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음
- 재허가 시 영농성과와 농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프랑스) 「영농형태양광 개발 및 농업·자연·산림지역 태양광 설치조건에 관한 시행령」(2024)에서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치 전후의 농업소득 유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구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사업 허가	이 규정 (시행령안 §8)
기간의 정합	제36조제1항 및 영 제 38조제1항제1호라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최초 5년 이내	허가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음	최초 5년 이내, 1회 3년 이내 연장, 연장기간 총합 18년 이내(최장 23년) →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와 동일
연장·갱신 심사	영 제38조제2항제1호나목: 연장기간 총합 18년 이내, 1회 연장기간 3년 이내. 다만 연장 시 요구되는 것은 제36조제4항의 복구비용 재산정·추가 예치이고, 영농 이행 실적을 심사하는 절차는 없음	해당 없음. 다만 준비기간 내 사업 미개시 등의 경우 허가취소 가능	준수사항 이행 실적, 영농 계속 가능성, 사용권원·임대차 존속 가능성, 주민환원 이행 실적, 원상회복 가능성, 전기사업 절차 유지 여부를 종합 고려
원상회복	제36조제1항·제3항: 사용기간 만료 시 농지로 복	해당 없음	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법」의 복구비용 관련 규

구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사업 허가	이 규정 (시행령안 §8)
	구할 의무, 복구계획 제 출 및 복구비용 예치(미 이행 시 복구대행비로 사용)		정을 준용하고, 허가기 간 만료 시 의제된 일시 사용허가도 효력을 잃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기준 및 절차의 법령 규정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기준 및 절차의 법령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최초 허가기간과 연장기간의 상한, 연장신청의 기한 및 고려사항이 법령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사업자가 연장 가능 여부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음
- 연장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는 대부분 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령안 제22조에 따라 이미 작성·보관하고 있는 준수사항 이행자료이므로, 통상적인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사업자는 준수가 가능한 수준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연장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여서 별도의 조사 없이 집행이 가능
- (기존 자료의 활용) 시행규칙안 제6조제2항은 연장신청을 심사할 때 기존 허가대장, 준수사항 이행 확인 결과 및 관계 행정정보를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
- (허가대장) 시행규칙안 제13조제4항은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발전사업기간의 연장,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허가 취소·과징금 등 사후관리 조치를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여 연장 심사의 기초자료가 축적됨
- (이행 확인) 시행령안 제24조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있어, 연장 심사에서 새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제

한적

- (전문기관 활용) 시행령안 제40조에 따른 감독대행기관이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을 대행할 수 있고,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지원 센터의 기술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
- 연장신청을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하도록 하여 허가 처리기간(30일)과 보완기간을 확보하였으므로, 허가기간의 공백 없이 심사를 완료할 수 있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의 허가 행정과 준수사항 이행 확인 체계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대규모 재정 투입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시행령안 제40조에 따른 감독대행 비용이 발생하며, 감독대행 비용은 법 제26조제5항에 지원 근거가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할 계획
 - 연장 심사를 통해 이행 실적이 부실한 사업이 정리됨으로써 허가취소 처분과 원상회복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기준 설정을 위한 다수의 논의 및 연구용역 등 진행
- (전문가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등 포함한 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26.7월~10월)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 해당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농업인 등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
- * 수도권(화성, 안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개선 등 진행할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해당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	—	—	—

4. 종합결론

-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 하도록 하는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는 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의제하므로 사업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제도의 전제인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이 유지될 수 없음

- 법 제7조가 정한 30년의 범위에서 최장 23년을 인정한 것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이행 실적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연장을 통해 그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아울러 이 기간 체계는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법」 제36조의 일시사용허가에 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이미 정하고 있는 기간(최초 5년 이내, 연장기간 총합 18년 이내, 1회 3년 이내)과 동일한 것으로, 현행 규제수준을 넘는 새로운 부담을 창설하지 아니함

○ 기존 규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현행유지안은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무기한 지속되는 결과를 낳고, 장기 허가 후 사후점검만으로 규율하는 규제대안 2는 영농 이행이 부실한 사업을 중간에 정리할 수단이 없으므로, 규제대안 1이 최적의 대안임

○ 규제의 수준은 사업기간을 정하고 영농성과를 확인하여 갱신하는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의 규율 방식 및 「농지법」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체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신청기한의 예외, 연장 여부의 종합 판단, 기 제출자료의 재제출 금지를 통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기준 및 절차의 법령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분석방법) 정성분석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규 제도로 현재 허가·연장 실적이 없고, 피규제자도 기존 허가사업자 중 실제 연장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어 연도별 대상자 수와 비용 발생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연장신청 시 기존 허가대장·준수사항 이행자료·관계 행정정보를 우선 활용하고 기 제출자료의 재제출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추가 행정부담의 규모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
- (비용)
 - 허가기간 연장신청 시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정리·제출에 따른 행정부담이 발생하며, 사업기간의 상한 설정으로 장기 투자·금융조달 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비용은 실제 연장신청자에게 한정되어 발생하고, 기존 자료 활용 및 재제출 금지 등을 통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편익)
 - 연장 기준·절차 및 고려사항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사업자는 연장을 통해 최장 23년의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연장심사를 통해 영농 의무 이행, 농지 보전상태, 사용권원 및 임대차 존속 가능성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실사업의 장기화, 농지 훼손 및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 (종합)

－ 연장신청에 따른 행정부담 등 비용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피규제자 수 및 추가 업무량에 관한 실적자료가 없어 정량산정이 곤란함.

－ 반면 사업기간의 예측가능성 제고, 농지 보전 및 부실사업 예방 등의 편익이 기대되므로 비용·편익을 정성적으로 분석함.

○ (향후 계획)

－ 법 시행 이후 허가·연장 실적과 서류 준비 부담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재검토기한에 맞추어 정량분석 가능 여부와 허가기간·연장기간의 적정성을 재검토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기준 및 절차의 법령 규정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허가기간 연장 신청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연장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확인·정리·제출에 따른 행정 부담이 발생함. 다만 기존 허가대장, 준수사항 이행 확인 결과 및 관계 행정정보를 우선 활용하고 기 제출자료의 재제출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추가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정성)영향집단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사용권원·원상회복 관련 자료 확인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원상회복 비용 확보상태 증명 과정에서 일부 외부 자문 또는 증명서류 발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발생 여부와 수준이 사업자별로 달라 정량산정은 곤란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연장 여부 판단 및 사업계획 수립
편익항목	예측가능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최초 허가기간, 연장기간, 신청기한 및 연장 여부 판단기

	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사업자가 연장 가능성과 사업기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
--	---

(정성)영향집단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허가기간 연장
편익항목	사업기간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준수사항 이행실적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연장을 통해 최장 23년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장기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 계획 수립과 투자회수 가능성이 높아짐.

(정성)영향집단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연장신청 자료 준비
편익항목	신청부담 경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기존 허가대장 및 준수사항 이행자료의 우선 활용과 기재출자료의 재제출 금지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작성·제출 부담이 줄어듦.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사업기간 설정 및 연장
비용항목	투자·금융조달 영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최초 허가기간 및 연장기간의 상한 설정이 장기적인 투자·금융조달 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자별 투자구조·신용도·금융조건 등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달라 일률적인 비용 산정은 어려움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발전설비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 업체, 금융 · 보험기관
활동제목	관련 계약 체결 · 관리
편익항목	시장안정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사업기간과 연장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발전설비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 및 금융 · 보험 관련 계약기간을 사업기간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어 계약 및 사업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

(정성)영향집단명	발전설비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 업체, 금융 · 보험기관
활동제목	발전사업자와의 장기 계약관계 유지
편익항목	계약 안정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발전사업자의 사업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유지관리 · 금융 · 보험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③정부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활동제목	연장신청 심사 및 관계정보 확인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연장신청 시 준수사항 이행실적, 사용권원, 농지 보전상태 및 관계 행정정보 등을 확인 ·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행정인력과 시간이 소요됨.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활동제목	발전사업자의 이행실적 정기 확인
편익항목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허가기간 연장심사를 통해 영농 의무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행실적이 부실한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활동제목	연장기준 및 절차 운영
편익항목	허가행정의 일관성 제고 및 분쟁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연장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허가권자별 판단 편차를 줄이고 허가기간 만료·연장 거부·원상회복 등을 둘러싼 행정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활동제목	기존 허가·사후관리 자료 활용
편익항목	행정부담 경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기존 허가대장, 준수사항 이행 확인 결과 및 관계 행정정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 연장심사를 위해 별도의 자료 조사나 동일 자료를 반복적으로 확보하는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음.

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농지 임대인,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 주민
활동제목	농지 임대차계약 유지·관리

편의항목	임대차 관련 비용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연장심사 시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 및 임대차계약의 존속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불확실성과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정성)영향집단명	농지 임대인,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 주민
활동제목	영농 의무 및 농지상태 확인
편의항목	농지 훼손 및 인접 농지 피해 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연장심사 시 준수사항 이행실적, 농업생산활동의 계속 가능성 및 농지의 보전상태 등을 확인하므로 이행실적이 부실한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농지 및 인접 농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정성)영향집단명	농지 임대인,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 주민
활동제목	허가기간 만료 및 원상회복
편의항목	농업생산기반 보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발전사업 기간을 정하고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함으로써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무기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허가기간 종료 시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유지하여 농업생산기반 보전에 기여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주민설명회 개최 기준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발전사업 신청을 위해 발전사업자는 주민의견수렴을 수행해야 하는바, 그 절차 및 의견수렴 방식 등 규정 필요											
	7.규제내용	○ 시행령(안) 제9조에서 주민의견 수렴의구체적 절차와 주민설명회 개최기준을 규정 ○ 사업의 주요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주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 ○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과 추가 의견수렴 실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9.규제목표	○ 목표: 사업 추진 이전에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기대효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초기부터 갈등 요인을 파악·조정함으로써 지역수용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사업 내용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 비용 발생 가능 -(편익)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수용성 확보 -(종합)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사업 계획 공고, 주민 열람 절차, 설명회·공청회 개최에 따른 장소 대여, 홍보물 제작 및 행정 인력 투입 등 초기 절차 수행 비용이 발생함. 의견수렴을 위한 법정 기간(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준수로 인해 사업 착수까지의 준비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보 불균형을 방지함.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사전에 예방함.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인허가 지연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인 영농형 태양광 운영 과정에서의 안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임.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해당없음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민 의견수렴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주민이 발전사업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발전사업부지의 위치·면적, 발전설비의 종류·용량·배치 및 사업기간 3. 영농계획의 주요 내용, 재배 예정 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농기계 이용계획 및 농업용수·배수계획 4. 발전설비의 구조·규격, 안전관리계획, 경관·환경 및 인접 농지 영농활동에 대한 영향 저감계획 5.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환원계획 6. 의견 제출기간·제출방법 및 열람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4일 이상 해야 한다. 1.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신청인이 공고 내용을 게재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게재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고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해당 발전사업부지가 속한 리·통의 게시판, 마을회관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게시 3. 해당 발전사업부지가 소재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1. 발전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2. 발전사업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3.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해당 발전사업부지가 소재한 행정리·행정동에 거주하는 20명 이상의 주민이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신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주민설명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제출된 주민 의견의 주요 내용,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포함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를 작성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의 작성방법, 주민 설명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대상 주민 의견수렴의 위임 규정으로서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수용성 확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법령에서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려는 발전사업의 내용을 발전사업부지를 포함한 생활권으로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주민설명회 개최 기준
	내용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부지를 포함한 읍·면·동 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발전사업의 내용을 공고·열람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그 의견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 등을 결과서에 기재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주민의 알권리와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케 함	발전사업자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준비에 시간·비용이 소요되며, 발전사업 추진 이전 주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발전사업자 대상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식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특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전에 공고·열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차후 안정적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	하위법령 반영

		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발전사업자 대상 주민 의견수렴 방식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필요
 - 기존 농촌태양광에 따른 농지·경관 훼손, 환경피해 등 농촌 주민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낮은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사전에 발전사업의 내용 등을 알릴 필요성 증대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 추진 시 단순한 발전사업 내용 공고·열람 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발전사업에 반영할 필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공고·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며,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 지역 주민의 구체적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의무를 부과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사회적 규제
② 규제 방식	의견수렴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나 준수 수준이 달라지지 않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 또는 추가비용을부과하지 않는 공통 기준임.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광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식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의 경우 ‘지역계획’ 내 농지에 대해서 협의·동의를 전제함

* [프랑스] 영농형태양광 개발 및 농업자연산림지역 태양광 설치조건에 관한 시행령(2024)

* [일본]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한 농지 전용 허가 제도상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2024년~)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은 주민 의견수렴·공익상 필요 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로서 발전소 입지 지역의 일간신문을 활용

< 참고 : 전기사업법 제7조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
 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고기간·방법과 설명회 개최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어 중복 부담도 완화되어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고,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결과서 제출 여부를 허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주민 의견수렴은 사업자가 수행하고 행정기관은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자 대상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식은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농촌 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내용 공고·열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발전사업부지 내 마을 주민 등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주민설명회 개최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사업 내용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과정에서 행정절차 비용 발생 가능
- (편익)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수용성 확보
- (종합)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사업 계획 공고, 주민 열람 절차, 설명회·공청회 개최에 따른 장소 대여, 홍보물 제작 및 행정 인력 투입 등 초기 절차 수행 비용이 발생함. 의견수렴을 위한 법정 기간(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준수로 인해 사업 착수까지의 준비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 불균형을 방지함.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사전에 예방함.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인허가 지연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인 영농형 태양광 운영 과정에서의 안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주민설명회 개최 기준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발전사업 사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 추진
비용항목	협의 추진에 따른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규칙 제7조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발전사업 사전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대안 검토 및 사업 추진
편익항목	주민 수용성 사전확보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영농 및 발전사업의 안정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주민설명회 등으로 발생하는 부담보다는 공정한 사전 행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신고의 절차 및 수리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변경의 범위와 절차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적 수단으로 정할 필요		
	7.규제내용	○ 발전사업 내용 변경 중 사업자 연락처 변경, 면적·용량의 경미한 감소, 일정 범위의 설비교체 등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함. ○ 그 밖에 허가기준이나 영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변경신고는 원칙적으로 변경 전에 하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목표) 사업의 실체에 변경이 없거나 허가기준의 충족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변경은 신고로 처리되고, 실질적 영향이 있는 변경은 변경허가로 심사되도록 하여 변경의 성격에 상응하는 절차가 적용되는 상태 － 변경신고 수리율 및 처리기간, 변경신고에서 변경허가 대상으로 전환된 비율로 달성 여부를 측정 ○ (기대효과) 경미한 변경에 대한 서류 부담과 심사 대기의 경감, 경미한 사항 해당 여부에 관한 허가권자별 판단 편차의 해소, 사업자가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발생하던 위법상태의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발전사업자가 변경신고서 및 증명자료의 마련·제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편익) 발전사업자가 변경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종합)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 발전사업자가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서 및 관련 증명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이행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적법한 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발전사업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변경사항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 위험을 예방함. 따라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규제로, 공익적 편익이 큼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발전사업자의 성명·명칭, 대표자 또는 연락처의 변경. 다만, 법 제12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전사업부지 면적 또는 발전용량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변경 3.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으로서 발전사업부지의 실질적 위치, 영농계획 및 발전설비 배치에 변경이 없는 사항 4. 발전용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설비로 교체하는 변경. 다만, 영농활동·경관·안전 또는 인접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영 제21조에 따라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 농작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농계획의 목적과 영농 여부 확인 가능성이 유지되는 변경 6. 영농책임자의 연락처 변경 또는 대체인력 지정의 변경으로서 영농계획의 주요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사항 7. 착공·준공·수확 등 세부 일정의 변경으로서 총 사업기간 및 허가조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8. 법령명, 지번 표기, 도면 기호, 오기·누락 등 명백한 착오의 정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영농활동·경관·안전 또는 인접 농지의 영농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해당 사항을 변경

현행	개정안
	하기 전에 해야 한다. 다만, 성명·명칭, 대표자 또는 연락처 변경 등 그 성질상 변경 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사항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 또는 정정은 변경신고가 수리된 후 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의 신청, 변경신고의 수리, 주민 의견수렴의 실시 여부·범위, 처리기간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변경허가”로, “허가신청”은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로, “허가신청서”는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로 본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6.16. 제정, 법률 제21804호)은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법 제8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11조제1항 본문)
- (필요성) 발전사업 변경 전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사용권원, 원상회복계획 등 광범위한 사항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신고의 절차 및 수리
	내용	○ (신고 시기) 원칙적으로 변경 전에 신고하되, 성질상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항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신고 ○ (수리 및 통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함께 통지.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 ○ (제출서류) 시행규칙안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기존 허가증의 2종으로 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발전사업자가 변경 사유 발생시 서류 구비·제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함	발전사업자가 변경신고서 및 증명자료의 마련·제출에 행정적 부담이 발생 가능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법 제11조제1항 단서는 경미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특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은 위임의 이행에 해당하며, 정하지 아니하면 단서 규정이 사문화되어 모든 변경이 변경허가 대상이 됨
- 변경을 위한 필요 서류 열거 방식은 사업자가 신고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판단 편차를 해소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 6. 12., 6. 18.)	· 영농 이행점검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및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의 명확성 확보 필요 · 종합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한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시행령안 제16조제1항에 경미한 사항을 열거하여 현장에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실질 기준에 따른 예외를 두어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 시행규칙안 제13조제4항제1호에 변경신고 수리 내역을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여 관리체계에 편입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 ('26. 8. 12.)	·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시행령안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변경신고 대상에

			서 제외하여, 사업자 변경이 신고로 우회되지 않도록 함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하위법령 관련 농협 조합장 회의 (26. 8. 31.)	· 영농 이행의 무 지속을 위 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 제는 필요	· 시행령안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재배 농작물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하되 재배 제한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영농여부 확인 가능성이 유지되는 범위로 한정하여, 영농 이행 확인 체계가 유지되도록 함

3. 규제목표

- 사업의 실체에 변경이 없거나 허가기준의 충족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변경은 신고로 처리되고, 실질적 영향이 있는 변경은 변경허가로 심사되어, 변경의 성격에 상응하는 절차가 적용되는 상태
- 사업자가 변경 실행 전에 신고 대상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경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던 시정명령·사업정지 사례가 예방되는 상태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열거된 8가지는 모두 ①사업의 실체(부지·설비·영농)에 변경이 없거나 ②변경의 방향이 허가기준의 충족에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었으며, 각 호의 설정 근거는 다음과 같음

기준	설정 근거	완화가 곤란한 사유
1. 성명·명칭, 대표자·연락처의 변경	사업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의 변경으로서 발전사업부지·발전설비·영농계획 어느 것에도 변경이 없음	법 제12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자의 실질적 변경이 신고로 우회되지 않도록 함
2. 부지 면적·발전용량의 100분의 10 미만 감소	감소 방향의 변경은 농지의 타용도 사용 범위와 발전설비의 영향을 축소 시키므로 법 제8조제3항의 허가기준 충족에 불리한 영향이 없음. 100분의 10은 시행규칙안 제2조제1항제4호가 시설물 점유면적의 상한으로 정한 비율과 같은 기준	“감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증가는 제외. 100분의 10 이상의 감소는 영농계획·발전설비 계획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므로 변경허가 대상
3.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경계의 정정	공부(公簿)의 기재를 실제에 맞추는 정정으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	발전사업부지의 실질적 위치, 영농계획 및 발전설비 배치에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4. 동등 이상 성능 설비로의 교체	설비의 규격이 아니라 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성과기준 방식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설비 교체를 매번 변경허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함	발전용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영농활동·경관·안전 또는 인접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5. 재배 농작물의 변경	작부체계와 시장 여건에 따른 작물 변경은 정상적인 영농활동의 일부로서, 이를 변경허가 대상으로 하면 영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안 제21조에 따라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

기준	설정 근거	완화가 곤란한 사유
	농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약됨	고, 영농계획의 목적과 영농 여부 확인 가능성이 유지되는 경우로 한정
6. 영농책임자의 연락처·대체인력 지정 변경	영농관리체계의 세부 사항으로서 시행령안 제19조제2항에 따른 영농책임자 지정 자체가 유지되는 한 영농계획의 실질에 변경이 없음	영농계획의 주요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사항으로 한정 — 영농책임자를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7. 착공·준공·수확 등 세부 일정의 변경	영농은 기상·병해충 등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따라 일정이 변동하므로, 세부 일정의 변경을 변경허가 대상으로 하면 제도의 운영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총 사업기간 및 허가조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 — 사업기간 자체의 변경은 시행령안 제8조의 연장 절차에 따름
8. 명백한 착오의 정정	법령명·지번 표기·도면 기호의 오기·누락 등 표기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음	“명백한” 착오로 한정 — 실질적 내용의 변경을 착오 정정의 형식으로 처리할 수 없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변경신고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변경신고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사업운영
② 규제 방식	변경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나 준수 수준이 달라지지 않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 또는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공통 기준임.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광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변경신고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 「행정기본법」 제34조 신고의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서, 이 규정은 같은 조의 취지에 따라 신고의 처리기간과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신고가 방치되거나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였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0조제4항은 보완 요구 시 보완할 사항과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의 산정을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보완 절차(시행령안 제16조제5항)도 같은 체계를 따름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구분기준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사업자가 변경 전에 절차를 판단할 수 있음
- 연락처 등 사전신고가 곤란한 변경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의 신고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준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변경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기존 허가내용과 비교·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허가·신고 처리체계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큰 재정 소요 없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변경허가를 요구하고 같은 항 단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경미한 사항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연락처 변경이나 도면 기호의 오기 정정과 같은 사항까지 변경허가 대상이 되어 사업자와 허가권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함
- 시행령안 제16조제1항은 ①사업의 실체에 변경이 없거나 ②변경의 방향이 허가기준의 충족에 불리하지 아니한 8가지 사항만을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식적으로 열거에 해당하더라도 허가기준·허가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영농활동·경관·안전·인접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여, 열거의 예측가능성과 실질 판단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였음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신고의 절차 및 수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비용) 발전사업자가 변경신고서 및 증명자료의 마련·제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편익) 발전사업자가 변경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종합)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 발전사업자가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서 및 관련 증명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이행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적법한 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발전사업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변경사항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 위험을 예방함. 따라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규제로, 공익적 편익이 큼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신고의 절차 및 수리>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사업 변경 신고 절차 등
비용항목	사업자 변경 신고·완료·확인 등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령(안) 제16조의 변경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증빙 및 관계 절차 이행에 수반되는 비금전적 부담이며,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사업 변경 신고 절차 등
편익항목	승계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사업·행정 공백 감소, 안정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 지속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변경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을 통일하고, 적격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수행과 지속적인 영농을 지원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승계 기준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 농촌 재생에너지가 농지전용형 태양광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난개발, 농지경관 훼손 및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외부 투기성 자본 및 비농업인 개인사업자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로 발전수익이 농업·농촌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함 (정부개입 필요성) ○ 농업인이 농지에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격 및 지위승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발전사업부지에서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외부 투기성 자본과 비농업인 사업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기존사업자의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등 지위승계 상황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및 행정처리의 공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 요건 및 결격사유, 발전사업부지에 대한 안정적 권원 확보, 종전 사업자의 허가조건·영농계획·발전설비 유지관리계획·주민환원계획의 승계·이행 가능성 「전기사업법」 상 필요한 절차의 완료 여부 등을 사업자 지위승계 기준으로 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의 농촌 주		
	9.규제목표	○ 지위 승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외부 투기성 자본 및 비농업인 사업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고, 농지보전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유도함 ○ 사업자 지위승계 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승계에 따른 혼란, 행정 착오 및 사업 공백을 최소화함		
규제의	10.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적정성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지위 승계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자는 권원, 종전 사업계획의 승계·이행 가능성, 전기사업 관련 절차 등을 확인·준비해야 하므로 일정한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편익)기준의 명확화로 승계 과정의 오류와 행정 공백을 줄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 및 농지 보전을 유도하며, 외부 투기성 자본과 비농업인 사업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는 편익이 기대됨 -(종합)본 규제는 금전적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비용과 편익의 성격 및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함 지위 승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자는 설비에 대한 정당한 권원 확보 증명, 종전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 검토,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절차 및 요건 확인·준비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시간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지위 승계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승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절차적 오류, 행정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여 승계 업무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영농의 연속성 확보와 농업인 중심의 사업 질서 확립이라는 법적·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므로 규제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 가능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업자 지위승계의 기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부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발전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임차권·사용대차권 등 발전사업의 잔여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것 3. 종전 발전사업자의 허가조건, 영농계획, 발전설비 유지관리계획 및 주민환원계획을 승계하여 이행할 수 있을 것 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대한 인가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당시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신청·신고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했으나, 외부 투기성 자본 및 개인사업자(비농업인) 중심의 발전사업 증가로 태양광 발전 수익이 농업·농촌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함
 - 사업자의 지위 승계는 타법에서도 규율되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은 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발전사업과 농업생산활동을 병행하여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 영농의 기반인 농지는 부동산으로서 개발 기대에 따른 외부 투기성 자본 또는 영농의지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유입될 경우 농업생산활동이 약화되고, 태양광 발전사업 종료 후 농지 회복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음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필요성)**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적법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업자 지위승계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사업부지에서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 시행령(안) 제17조에 기존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승계과정의 착오와 행정 공백을 방지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 승계 기준
	내용	발전사업의 잔여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 종전 사업자의 허가조건·영농계획·발전설비 유지관리 계획·주민환원계획을 승계·이행하며, 「전기사업법」상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도록 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부 투기성 자본 및 비농업인 사업자의 무분별한 유입 방지 ○지위 승계 기준을 갖춘 사업자의 지속적인 영농으로 농지 보전 ○태양광 발전수익의 농업·농촌 외부 유출 방지	○지위승계 요건을 확인·충족해야 하므로 비농업인 또는 외부 투기성 자본의 사업 참여는 제한될 수 있음

o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지위승계 기준을 두지 않을 경우 사업현장에 투기성 외부 자본과 비농업인 사업자들이 유입되어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 및 농업생산활동의 약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사업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등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처리기준이 없으면 승계과정의 혼란, 사업의 연속성 저하 및 행정처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지위승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작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시행령 제17조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위승계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 간의 승계 오류를 줄이고, 사업 및 행정처리 공백을 최소화함
- 지위승계 기준을 통해 투기성 외부 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고,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통해 농지 보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승계 기준은 농업생산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환경을 마련하고, 승계 과정의 행정상 하자과 공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함
- 세부 기준은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자 자격, 사업부지 권원, 종전계획의 승계·이행 가능성 및 전기사업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규제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사업자 지위승계의 기준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사업자 지위승계의 기준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사업자 지위승계의 기준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사업전환/승계/폐업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사업자 지위승계의 기준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사업자 지위승계의 기준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사업의 승계와 지위승계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전제로 함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의 승계와 지위승계 신고 등을 규정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전제로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9조제4항,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사업의 승계와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의 신고를 규정하며, 등록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전제로 함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사업의 승계와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의 신고를 규정하며, 허가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전제로 함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승계인은 자격, 부지 사용권원, 기존 계획 및 전기사업 관련 절차를 양도인과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확보할 수 있음. 승계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면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승계인의 자격요건, 사용권원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관련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허가 및 행정정보 확인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위승계 기준은 사업 수행 중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등 승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과 영농 지속성을 갖춘 자가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명확한 지위승계 기준을 통해 사업 공백과 행정상 혼란을 줄이고,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기존 농촌 태양광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외부 투기자본 유입 및 발전수익의 농업·농촌 외부 유출 문제를 영농형 태양광 제도에 서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 승계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지위 승계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자는 권원, 종전사업계획의 승계이행 가능성, 전기사업 관련 절차 등을 확인·준비해야 하므로 일정한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편익)기준의 명확화로 승계 과정의 오류와 행정 공백을 줄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 및 농지 보전을 유도하며, 외부 투기성 자본과 비농업인 사업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는 편익이 기대됨
- (종합)본 규제는 금전적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비용과 편익의 성격 및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함

지위 승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자는 설비에 대한 정당한 권원 확보 증명, 종전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 검토,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절차 및 요건 확인·준비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시간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지위 승계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승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절차적 오류, 행정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여 승계 업무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영농의 연속성 확보와 농업인 중심의 사업 질서 확립이라는 법적·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므로 규제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 가능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 승계 기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사업자 지위 승계 요건 확인 및 관련 절차 이행
비용항목	사업자 자격 확인, 발전사업부지 권원 확보·증빙, 종전 사업자의 계획승계·이행준비, 「전기사업법」상 절차의 신청·신고·완료·확인 등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령(안) 제17조의 지위승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증빙 및 관계 절차 이행에 수반되는 비금전적 부담이며,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명확한 기준에 따른 사업 지위승계
편익항목	승계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사업·행정 공백 감소, 안정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 지속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지위승계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을 통괄하고, 적격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수행과 지속적인 영농을 지원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상속·법인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발전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 변경 이후에도 사업자 자격·사업부지 권원·종전 계획의 승계·이행 및 전기사업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정부개입 필요성) ○ 지위승계는 사업의 법적 주체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신고기한·제출서류·처리기한·통지 및 관계기관 통보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미신고·지연신고와 행정처리 편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전기사업 절차가 신고 당시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사후제출의무와 미완료 시 조치까지 규정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 양도·법인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양수일·합병일 또는 분할로 인한 설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되, 상속개시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 사실 및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가 제17조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수리·통지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수리 시 전기사업 허가권자, 농지전용·농지보전 담당부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 관련 절차가 미완료 상태에서 수리된 경우 결과 확정 또는 신청·신고 취하일부터 15일 이내 결과 증빙서류를 제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상속인·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승계 법인 등 ○ 이해관계자: 종전 발전사업자, 농업인, 발전부지 소재 지역 주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련 인허가 행정기		
	9.규제목표	○ 승계사유별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처리기한 및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고 누락·지연과 행정 착오를 최소화 ○ 적절한 승계인이 중단 없이 영농과 발전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 ○ 관계기관 간 승계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미완료 절차에 대한 사후 확인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발전사업자는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 증명서류 준비 및 행정 이행이 필요하므로 시간적·절차적 비용이 소요됨 -(편익) 법정 요건을 명확히 하여 행정지연과 불확실성을 해소함 -(종합) 사업자의 서류 준비 등 최소한의 행정 부담 대비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규제 타당성 확보 가능 발전사업 수행 중 양도·양수, 상속 등 지위변동 사유 발생 시 명확한 승계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 가능함 사업부지 내에서 실제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제한·검증함으로써, 무자격자의 투기성 진입이나 관리 소홀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전설비 난개발 및 농지 유실을 방지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게 함 지위승계 신청 시 자격 요건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등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의 적법한 승계와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임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업자 지위승계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 사실 및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양수일, 합병일 또는 분할로 인한 설립일부터 30일 2.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17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과 종전 발전사업자(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 농지전용·농지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7조제4호 단서에 따라 승계신고가 수리된 승계인은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절차의 결과가 확정되거나 그 신청·신고를 취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증

현 행	개 정 안
	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확인 결과 같은 항에 따른 절차가 허가·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종료되어 승계인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위승계 신고의 방법, 심사,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제12조제1항은 양도·상속·법인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실제 승계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신고기한·제출서류·처리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지위승계는 새로운 발전사업을 처음 허가하는 경우와 달리 종전사업의 법률관계와 영농·발전계획을 이어가는 절차이므로, 불필요한 사업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승계인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절차가 필요함
 -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이 결합되어 있어 사업자 변경 정보가 발전사업 허가권자, 농지전용·농지보전 담당부서 등 관련 행정절차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필요성)** 신고기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을 경우 승계사실의 장기간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가 발생할 수 있고, 행정기관별로 처리기준이 달라져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승계사유별 신고기한, 첨부서류, 15일의 처리기한, 보완기간의 처리기간 제외, 수리결과 통지, 관계기관 통보 및 사후 제출의무를 일관된 기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고 당시 관련 전기사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아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 결과서류 제출과 자격 미충족 시 허가취소를 연계하여 사업 연속성과 규제 실효성을 함께 확보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 승계 기준
	내용	승계사유별 신고기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15일의 수리기한, 수리결과 통지와 관계기관 통보, 미완료 절차에 대한 사후 제출·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신고의무와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 승계사실의 신속한 반영 및 사업 공백 최소화 ○ 행정기관별 처리기준 통일 ○ 관계기관 간 승계정보 정합성 및 사후관리 강화	○ 신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제출 부담 ○ 사안에 따라 보완 또는 사후 결과서류 제출 필요 ○ 행정기관의 심사·통지·통보 업무 발생

o 대안의 선택 근거

- 지위승계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주체가 변경되는 절차이므로,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동일한 승계사실에 대해서도 신고 시점과 행정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승계사유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승계사실 및 제17조 요건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단계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행정기관의 처리기한을 15일로 정하고 수리결과 통지와 관계기관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정보의 일관성

을 높일 수 있음

- 관련 절차가 신고 당시 미완료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되, 결과 확정 후 15일 이내 증빙 제출과 자격 미충족 시 허가취소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공백을 방지함
- 따라서 대안1은 지위승계 신고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부담으로 사업 연속성, 행정 일관성 및 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승계사유별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여 신고 누락·지연 및 사업자의 절차상 혼란을 최소화
- 15일의 처리기한과 보완기간 산정방식을 명시하여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신고수리를 보장
- 수리결과 통지 및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발전사업·농지 관련 행정 정보의 정합성을 확보
- 미완료 절차의 사후 결과 제출과 자격 미충족 시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승계인이 지속적으로 영농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의 목적은 지위승계가 발생한 경우 승계사실을 적시에 행정기관에 반영하고, 적격 승계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신고의무는 양도·상속·법인 합병 또는 분할 등 실제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상시적·반복적 의무가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일시적으로 발생함
- 신고기한은 양도·합병·분할의 경우 30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상속개시일부터 최대 1년)로 구분하여 승계사유의 특성을 반영함
- 제출서류는 승계사실과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하고, 행정기관의 처리기한을 15일로 정하여 사업자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함
-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심사기간을 확보하되, 보완이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수리하도록 하여 행정편의와 사업자 권익을 균형 있게 고려함
- 관련 전기사업 절차가 미완료된 경우 사후 제출의무를 두되, 결과가 확정되거나 신청·신고를 취하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정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허가취소와 연계하므로 규제수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사업자 지위승계의 신고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사업자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사업자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사업전환/승계/폐업
② 규제 방식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사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는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 등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사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사업의 승계와 지위승계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전제로 함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의 승계와 지위승계 신고 등을 규정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전제로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9조제4항,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의 승계와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의 신고를 규정하며, 등록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전제로 함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사업의 승계와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의 신고를 규정하며, 허가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지위승계의 신고를 규정 함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승계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상속·양도 등 승계 과정에서 통상 작성되거나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승계 유형별 신고기한과 사후 보완 절차가 명확하므로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지위승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접수·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존 행정 체계를 통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신고처리 업무로 수행 가능하여 별도의 큰 재정 부담이 발생 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제도는 양도·상속·법인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승계사실을 적시에 행정기관에 반영하고 적격 승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
- 승계사유별 신고기한, 제출서류, 15일의 처리기한, 통지·관계기관 통보 및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고인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기관별 처리편차를 줄일 수 있음
- 특히 신고 당시 미완료된 관련 절차를 일정 조건 아래 사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연계하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함
- 규제에 따른 비용은 지위승계 발생 시의 일시적·비금전적 행정부담이 중심이며, 사업 연속성·법적 안정성·행정 일관성·농지 및 영농의 지속성 확보에 따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 승계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발전사업자는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 증명서류 준비 및 행정 이행이 필요하므로 시간적·절차적 비용이 소요됨
- (편익) 법정 요건을 명확히 하여 행정지연과 불확실성을 해소함
- (종합) 사업자의 서류 준비 등 최소한의 행정 부담 대비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규제 타당성 확보 가능

발전사업 수행 중 양도·양수, 상속 등 지위변동 사유 발생 시 명확한 승계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 가능함

사업부지 내에서 실제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제한·검증함으로써, 무자격자의 투기성 진입이나 관리 소홀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전설비 난개발 및 농지 유실을 방지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게 함

지위승계 신청 시 자격 요건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등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의 적법한 승계와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임

☐직접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지위 승계 기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사업자 지위 승계 요건 확인 및 관련 절차 이행
비용항목	사업자 자격 확인, 발전사업부지 권원 확보·증빙, 종전 사업자의 계획승계·이행준비, 「전기사업법」상 절차의 신청·신고·완료·확인 등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규칙 제15조의 지위승계 신고 필요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증빙 및 관계 절차 이행에 수반되는 금전적 부담이며,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명확한 기준에 따른 사업 지위승계 및 사업 추진
편익항목	승계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사업·행정 공백 감소, 안정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 지속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지위승계에 필요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기준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영농형태양광법」은 발전사업자에게 영농활동을 지속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 설정 필요		
	7.규제내용	○ 시행령(안) 제19조에서 지속적 농업생산활동은 영농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을 실제 경작 또는 재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작물의 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파종·정식·재배관리·수확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료로 영농활동 확인 가능 ○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은 영농책임자를 지정하고, 실제 경작 또는 재배 면적의 확인방법, 작물별 재배기간, 기준 수확량, 증명방법 및 영농실적 판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목표: 태양광 발전을 이유로 영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생산활동이 지속되도록 함 ○ 기대효과: 농지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적 취지를 확보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 (비용) 태양광 발전사업과 농업경영활동 병행에 따른 작업동선		

	분석 (정성분석)	제약, 농기계 생산성 저하 측면에서 비용발생 예상됨 - (편익) 식량안보 및 농지 보전에 따른 편익과 영농활동 지속 자체가 조합원 일자리·소득원 유지수단으로 기능하는 등 편익발생 예상됨 - (종합)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대비 추가비용이 발생되나,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정의를 유지하는 필수 조항이면서 식량안보·농지보전의 상위 공익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발전사업과 농업경영활동 병행이라는 이중사업의 특성상 개별사업 운영에 비해 생산성 저하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됨. 추가로, 조합원 개개인의 영농활동 지속 여부를 조합 차원에서 관리·감독해야하는 내부적인 행정비용도 예상되며 농촌 특성상 고령 조합원의 영농 지속 곤란 시 조합 전체의 요건 미충족 리스크의 확산 우려도 예상됨.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명칭과 정책 취지 자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조항으로 이 요건이 없으면 ‘농지 위 태양광 발전소’로 변질되어 정책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필수적 조항임. 추가로, 농지의 비농업적 전용 확산을 억제하여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 및 농지 보전 편익의 발생이 예상됨. 따라서, 본 조문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정책 정체성 유지조항의 성격으로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능하여 국가적 차원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전사업자 차원에서도 순편익 발생이 예상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형	시행령44조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험	20270101~20291231	3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은 법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 또는 재배가 이루어질 것 2. 해당 작물의 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파종·정식·재배관리·수확 또는 다년생 식물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 3. 제22조에 따른 자료로 농업생산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은 발전사업부지에서의 영농계획 수립·이행과 영농실적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영농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제 경작 또는 재배 면적의 확인방법, 작물별 재배기간, 기준 수확량, 증명방법 및 영농실적 판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중 지속적 농업생산활동의 위임 규정으로서 발전사업자의 실질적 영농활동 확인 기준을 정의하고 있음
 - 특히, 영농형태양광법은 발전사업자에게 지속적 영농의무를 부여하며, 불이행 시 사업정지·취소,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부과 가능한바 해당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 대상 지속적 농업생산 활동 기준 설정이 필수적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기준
	내용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실제 영농을 하여야 하며, 영농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파종·정식·관리·수확을 실시하고, 영농일지,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영상, 농자재·출하자료 등으로 확인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형식적 영농을 방지하고 농지와 식량생산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	영농 자료 작성·보과과 일정 수준의 재배면적 유지 부담 발생

○ 대안의 선택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여부 확인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 등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발전사업자의 영농여부 등 확인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하위법령 반영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농지로서 발전사업부지 내 지속적 영농활동의 확보와 그에 따른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의 목적으로,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발전사업부지에서 최소한도의 영농활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 기준 설정은 필수적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기준은 발전사업자 대상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 유지 담보를 위한 필요 최소 기준

「영농형태양광법」 상 영농의무 부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위임사항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 또는 재배가 이루어질 것 2. 해당 작물의 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파종·정식·재배관리·수확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 3. 제22조에 따른 자료로 농업생산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발전사업자 대상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확인 기준은 발전사업부지 내 발전사업자의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며,
 - 해당 확인 기준은 영농활동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이며, 자연재해·질병·휴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속적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연간 데이터·점검보고서 제출 의무, 영농 지속 의무 및 수확량 기준 등 규정하여 영농여부를 확인
- (일본) 매년 농업위원회에 영농활동 보고서 제출, 지역 평균 대비 수확량 20%이상 감소 금지
- (프랑스) 비교 부지 평균 수확량의 90% 이상 유지 필요 및 결과보고서, 농업생산량·발전량 통계 제출, 발전사업 개시 후 6년째 사후점검, 이후 설치비율에 따라 매년(40% 초과), 3년마다(40% 이하) 점검
- (독일) 농업생산량이 기준생산량의 66% 이상 유지 필요, 농경지 감소율 15% 미만 시 직불금 유지

○ 타법사례

- 공익직불법은 직불금 지급 여부 판정을 위한 최소한도의 영농 지속 여부 확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을 위한 영농 여부 등 확인

< 참고 : 공익직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법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시행령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할 것
 - 가.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
 - 나. 잡목 제거
 - 다. 피복식물(被覆植物) 식재
 -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휴경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 : 농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실제 경작·재배 면적 80% 이상이라는 객관적 기준과 일반적 재배 방법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제20조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고 세부 판정기준도 마련할 수 있어 현실적인 준수가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영농자료, 농업경영정보 및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농업생산 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농업행정 및 점검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지속적 농업생산 활동 확인 기준은 해당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 유지와 그에 따른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영농의무 부과와 그에 따른 사업정지·취소 및 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정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태양광 발전사업과 농업경영활동 병행에 따른 작업동선 제약, 농기계 생산성 저하 측면에서 비용발생 예상됨

－ (편익) 식량안보 및 농지 보전에 따른 편익과 영농활동 지속 자체가 조합원 일자리 · 소득원 유지수단으로 기능하는 등 편익발생 예상됨

－ (종합)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대비 추가비용이 발생되나,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정의를 유지하는 필수 조항이면서 식량안보 · 농지보전의 상위 공익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발전사업과 농업경영활동 병행이라는 이중사업의 특성상 개별사업 운영에 비해 생산성 저하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됨. 추가로, 조합원 개개인의 영농활동 지속 여부를 조합 차원에서 관리 · 감독해야하는 내부적인 행정비용도 예상되며 농촌 특성상 고령 조합원의 영농 지속 곤란 시 조합 전체의 요건 미충족 리스크의 확산 우려도 예상됨.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명칭과 정책 취지 자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조항으로 이 요건이 없으면 ‘농지 위 태양광 발전소’로 변질되어 정책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필수적 조항임. 추가로, 농지의 비농업적 전용 확산을 억제하여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 및 농지 보전 편익의 발생이 예상됨.

따라서, 본 조문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정책 정체성 유지조항의 성격으로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능하여 국가적 차원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전사업자 차원에서도 순편익 발생이 예상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기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발전사업자 대상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준수
비용항목	이중 사업 운영에 따른 상시 비용, 생산성 저하에 따른 기회비용, 미이행 시 리스크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태양광 발전사업과 농업경영활동 병행에 따른 생산성 제약으로 개별사업 추진시 대비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협동조합 자체적인 감시체계 및 고령 조합원 영농 지속 곤란 시 조합 전체의 요건 미충족 리스크로 확산되어 비용 발생 예상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제도의 정당성 확보 및 식량안보·농지보전의 상위가치 수호
편익항목	제도 자체의 정책 정당성 확보, 국가 식량자급률 유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영농형 태양광의 정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항목으로써 정책 정당성 확보라는 편익과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기준 설정으로 농지 본연의 기능인 국가 식량자급률 유지에 기여하는 편익 발생이 예상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신고 및 인정기준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영농형태양광법」은 발전사업자에게 영농활동을 지속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바, 불가피한 일시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 설정 필요		
	7.규제내용	○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신고 및 인정기준을 마련 ○ 특별사유의 존재, 중단기간, 증빙 및 영농재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되 신고항목·증빙은 최소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목표: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일시 중단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외를 마련함 ○ 기대효과: 천재지변·질병 등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영농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절차 이행을 위한 신고 및 입증 비용과 남용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예상됨 - (편익)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리스크 차단으로 제도 신뢰성 및 수용성 제고에서 오는 편익 예상됨 - (종합) 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영농		

		활동 이행 의무 준수 규정의 예외 · 구제조항으로 발전사업자 사업 이행에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일시중단 신고 및 입증을 위한 직접 비용과 인정기준 모호성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인한 간접비용 발생이 예상됨. 추가로, 협동조합 구조의 특성상, 조합원 개인의 사유로 중단이 발생할 경우 조합 전체의 신고 · 소명 책임 및 대응 프로세스 마련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됨 그러나,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 신고 · 인정기준은 재난,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부당한 제재 리스크를 차단함으로써 발전사업자에게 실질적 순편익을 제공하는 조항으로 판단됨. 다만 사유별 인정기준(증빙방법, 최대인정기간)의 구체성이 결여될 경우 예측가능성 저하 및 제도 남용이라는 상반된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유별 세분화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발전사업자가 정상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풍·홍수·호우·강풍·가뭄·대설·냉해·병해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또는 농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확산, 출입통제 또는 공익사업 시행 등 발전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질병·상해, 임신·출산, 병역의무 이행, 취학, 공직취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로서 제19조제2항에 따른 영농책임자에게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대체 영농책임자를 지정할 수 없거나 필요한 영농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5. 발전설비의 안전점검·수리·교체, 농업기반시설의 보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농지개량, 영농준비, 작부체계상 휴경, 토양개량, 객토, 배수개선, 농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절 또는 연작피해 예방을 위하여 일시적 휴경이 불가피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농 지속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 발전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 중단 기간, 영농 재개계획

현 행	개 정 안
	및 증명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의 인정절차와 증명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의 인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공익사업, 질병 등 사유가 계속되어 농업생산활동 재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중 지속적 농업생산활동의 위임 규정으로서 발전사업자가 정상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음
 - 자연재해, 질병, 농작업 여건 및 작부체계 등에 따라 일시적인 영농중단이 불가피 할 경우 예외사유, 신고·확인절차 및 인정기간을 정하여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이 불가피한 발전사업자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장기간 또는 형식적인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영농의무의 실효성을 확보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신고 및 인정기준
	내용	지해, 질병, 출산, 설비수리, 농지개량, 휴경 등 예외 사유를 구체화 하고 30일 이내 자료제출 및 최대 인정기간을 설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농업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자료의 제출과 기가제한으로 형식적 영농중단의 악용을 방지	발전사업자가 자료작성 및 제출의 의무 발생

o 규제 대안의 선택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여부 확인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 등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발전사업자의 영농 일시중단 등 확인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하위법령 반영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농지로서 발전사업부지 내 지속적 영농활동의 확보와 그에 따른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의 목적으로,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발전사업부지에서 최소한도의 영농활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확

인하기 위한 판단 기준 설정은 필수적

-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이 불가피한 발전사업자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장기간 또는 형식적인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지속적인 영농의무의 실효성 확보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발전사업자 대상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 기준은 발전사업자의 영농활동 유지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 자연재해뿐 아니라 질병·임신·출산·영농시설 보수·토양개량 등 현실적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다만 형식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설정 및 증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는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공익직불법은 직불금 지급 여부 판정을 위한 최소한의 영농 지속 여부 확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을 위한 영농 여부 등 확인

< 참고 : 공익직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법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시행령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할 것
 - 가.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
 - 나. 잡목 제거
 - 다. 피복식물(被覆植物) 식재
 -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휴경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 : 농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재해·질병 등 중단사유 의 증빙과 영농 재개계획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기존 자료와 향후 일정으로 작성할 수 있음. 신청기한과 인정기간이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하므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사업자가 제출한 사유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일시중단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사후관리 업무 내에서 처리 가능하여 별도의 큰 재정 소요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농업생산활동 리시중단의 특별한 사유의 기준은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의무를 전제로 하면서도 자연재해, 질병, 출산, 농지개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영농중단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면서 자료제출 및 인정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영농의무의 실효성을 균형있게 확보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신고 및 인정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절차 이행을 위한 신고 및 입증 비용과 남용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예상됨
- (편익)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리스크 차단으로 제도 신뢰성 및 수용성 제고에서 오는 편익 예상됨
- (종합) 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영농활동 이행 의무 준수 규정의 예외·구제조항으로 발전사업자 사업이행에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일시중단 신고 및 입증을 위한 직접 비용과 인정기준 모호성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인한 간접비용 발생이 예상됨. 추가로, 협동조합 구조의 특성상, 조합원 개인의 사유로 중단이 발생할 경우 조합 전체의 신고·소명 책임 및 대응 프로세스 마련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됨

그러나,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 신고·인정기준은 재난,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부당한 제재 리스크를 차단함으로써 발전사업자에게 실질적 순편익을 제공하는 조항으로 판단됨.

다만 사유별 인정기준(증빙방법, 최대인정기간)의 구체성이 결여될 경우 예측가능성 저하 및 제도 남용이라는 상반된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유별 세분화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신고 및 인정기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일시중단 사유 신고
비용항목	신고 및 입증을 위한 행정비용, 협동조합 구조에서 발생하는 조정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중단사유 발생시 이를 신고 및 입증하기 위한 준비비용 및 일시중단 불인정시 야기될 리스크 측면에서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조합차원의 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내부 행정비용 소요 예상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사업중단 사유 발생시 신고를 통한 일시중단 인정
편익항목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제재 리스크 완화, 제도 수용성 및 신뢰도 제고, 분쟁예방 및 행정비용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귀책사유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일시중단이 영농의무 위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측면이 핵심적인 편익으로 예상되며 농지개량·발전설비 점검 등 장기간 사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 점도 편익으로 예상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중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의 기준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수확량 감소 등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어렵거나, 영농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농작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배 제한 기준 설정 필요		
	7.규제내용	○ 농기계 운행·농작업자 안전·일반적인 재배관리가 곤란하거나, 영농실적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농작물,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농작물 및 조경·관상·차폐·발전설비 은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작물의 재배 제한 ○ 작물별 생육특성, 지역별 재배여건, 농작업 방식, 표준재배기술, 실증연구 결과 및 현장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배 제한 작물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목표: 영농형 태양광 설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재배하기 어렵거나 형식적 영농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작물의 재배를 방지함 ○ 기대효과: 농업생산활동의 실효성과 객관적 확인 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편법적 이용을 예방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작목 선택의 자유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과 지역별·농가별 형평성 등에 따른 비용 예상됨 － (편익) 지속적 영농의무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편익발생이 예		

		상됨 － (종합) 사전적으로 작목이 제한되는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되나, 영농지속의무를 현실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보완장치라는 측면에서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선택 가능한 작목의 종류가 정해져있어 이에따른 기회비용이 예상되며 영농실적 파악 기준의 모호성에 따른 분쟁 등으로 비용 발생이 예상됨. 그러나, 발전사업부지 내 재배제한 작물 기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실질적 이행(위장영농 방지)을 담보하고 사업자의 사후 제재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어 순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추가적으로, 계량적 지표 중심으로 기준을 명확화하고 고시를 활용한 탄력적 형식을 통해 재배기술을 반영한 목록 갱신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순편익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이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이외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행	44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70101~20291231	3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 등) ① 발전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발전사업부지에서 재배해서는 안 된다. 1. 발전설비와 병행하여 재배하는 경우 농기계 운행, 농작업자 안전 또는 일반적인 재배관리가 확보될 수 없거나 농지 훼손 또는 인접 농지의 농업생산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농작물 2. 생육상태, 재배면적, 재배관리, 수확량 또는 생산물의 처분 여부 등 영농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현저히 곤란한 농작물 3. 발전설비와 병행하여 재배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배방식에 따른 수확량에 비하여 그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농작물 4. 조경·관상·전시·차폐 또는 발전설비 은폐를 주된 목적으로 식재하거나 재배하는 농작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작물별 생육특성, 지역별 재배여건, 농작업 방식, 표준재배기술, 실증연구 결과 및 현장확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재배가 제한되는 작물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배 제한 농작물의 위임 규정으로서 발전사업부지 내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고 있음

-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시 농지에서 장기간 발전사업이 가능한 만큼 영농 가능성, 농작업자 안전 및 원상 회복 가능성 등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 설정은 필수적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중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의 기준
	내용	재배 제한 작물의 판단 기준 및 고시 근거를 마련, 안전·재배관리·영농실적 확인·수확량 감소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장관이 실증결과 등을 반영해 구체적 재배제한 작물 품목 고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형식적 영농을 방지하고, 검증가능한 작물 중심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사업자의 작물 선택권이 제한되고 지역 특화작물 등 검증자료가 부족한 품목의 참여 제한 가능

o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영농활동과 발전사업 병행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전설비 등에 따른 영농활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작물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 지속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 확인이 어려운 재배작물을 제한하여 농지 보전, 식량안보 유지 등 달성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발전사업부지(농지) 내 농업인 등의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보장하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의 목적인바,
- 해당 발전사업부지에서 수확량이 급감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영농활동 확인이 어려운 작물 등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작물의 재배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영농형태양광법」 작물재배 제한 규정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위임사항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 재배를 제한	1. 발전설비와 병행하여 재배하는 경우 농기계 운행, 농작업자 안전 또는 일반적인 재배관리가 확보될 수 없거나 농지 훼손 또는 인접 농지의 농업생산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농작물 2. 생육상태, 재배면적, 재배관리, 수확량 또는 생산물의 처분 여부 등 영농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현저히 곤란한 농작물 3. 발전설비와 병행하여 재배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배방식에 따른 수확량에 비하여 그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농작물 4. 조경·관상·전시·차폐 또는 발전설비 은폐를 주된 목적으로 식재하거나 재배하는 농작물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재배제한 작물 재배에 대한 기준 등은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활동의 확인을 위해 발전사업자에 대한 필수 규제로 작용하며,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 등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 등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 등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 등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 등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재배제한 작물 종류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

○ 타법사례

- 별도 타법 사례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중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의 기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중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의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제한 기준이 작물의 농작업 가능성, 영농실적 확인 가능성, 수확량 등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있음
- 제한 작물은 고시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농계획 수립단계에서 다른 적합한 작물을 선택할 수 있어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영농계획, 영농실적 자료 및 현장확인을 통해 제한 작물 재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영농 확인 및 현장점검 체계를 활용하므로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기준 설정을 위한 다수의 논의 및 연구용역 등 진행
- (전문가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등 포함한 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26.7월~10월)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 해당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농업인 등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
- * 수도권(화성, 안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개선 등 진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하부 재배제한 작물 선정 기준 등은 해당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활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중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의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작목 선택의 자유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과 지역별 · 농가별 형평성 등에 따른 비용 예상됨
- (편익) 지속적 영농의무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편익발생이 예상됨
- (종합) 사전적으로 작목이 제한되는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되나, 영농지속의 무를 현실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보완장치라는 측면에서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선택 가능한 작목의 종류가 정해져있어 이에따른 기회비용이 예상되며 영농실적 파악 기준의 모호성에 따른 분쟁 등으로 비용 발생이 예상됨.
그러나, 발전사업부지 내 재배제한 작물 기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실질적 이행(위장영농 방지)을 담보하고 사업자의 사후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어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추가적으로, 계량적 지표 중심으로 기준을 명확화하고 고시를 활용한 탄력적 형식을 통해 재배기술을 반영한 목록 갱신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순편익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중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의 기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재배작물 선정 제한
비용항목	작목 선택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및 작목 종류 경직성에 따른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법령상 재배 목록이 경직적으로 고정될 경우, 품종개량·작부체계 개발 등 기술개발에 따라 적용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적용 제한에서 비용 발생이 예상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영농형 태양광 재배 가능 품목 선정
편익항목	장기간 사업 추진방향의 예측가능성 및 영농지속의무 검증가능성 제고, 식량안보·농지보전 목적과의 정합성 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사업자의 예측가능한 손실을 방지하고 영농실적 검증 체계의 효율화로 검증에서 발생하는 비용감소 측면에서 편익발생 예상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전사업자 자료 작성 · 보관 및 제출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률상 계속적 영농 · 적합작물 재배 ·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속적 기록 필요 - 계절별 · 시기별로 발생하는 영농 및 설비관리 사실은 사후 현장점검만으로 충분한 확인이 곤란 - 법률이 자료 작성 · 보관 · 제출 의무를 직접 규정한 만큼 시행령에서 자료 범위 · 보관기간 · 제출절차를 구체화하여 확인기준의 통일성 · 집행의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 영농계획 · 작부체계 · 농작업 · 농자재 · 농기계 · 인력투입 · 경작 · 재배면적 자료 작성 - 촬영일시 ·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부지 사진 · 영상자료 작성 - 재배작물 종류 · 생산량 · 판매 또는 자가소비 실적 자료 작성 - 발전설비 점검 · 보수 · 교체 · 고장 · 사고 · 안전조치 자료 작성 - 작성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요청 시 전년도 준수사항 이행결과 자료를 지정 범위 · 기한 · 방법에 따라 제출 - 세부 작성방법 · 전자보관 · 종합정보시스템 연계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구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시장 · 군수 · 구청장, 농지 소유자 · 임차농, 지역주민, 농업 · 전기안전 관련 기관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목표: 영농활동 및 발전설비 관리 실적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 보관 체계를 마련함 ○ 기대효과: 형식적 영농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준수사항 점검 및 사후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 (비용) 자료 작성 · 정리 · 전자보관 · 사진/영상 기록 · 요청 시 제출에 필요한 반복적 행정시간 및 일부 디지털 활용 부담		

	(정성분석)	－ (편익) 표준화 · 전자연계 · 기존자료 재사용을 통한 중복작성 · 보완요구 · 현장확인 · 분쟁 감소, 객관적 이행점검 및 집행일관성 제고 － (종합) 표준서식 · 전자연계 · 중복제출 방지 원칙이 적용될 경우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연도별 영농계획서 작성, 농자재 · 인력투입 내역 기록, 협동조합 운영 · 관리를 위한 인력투입 등에서 직접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자료 양식이 사전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자별로 상이한 형식의 자료를 준비한 뒤 재작성하게되는 비효율도 예상됨. 그러나, 해당 조문은 영농형 태양광 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와 관련한 것으로 전체 제도의 증거법적 토대로 기능함. 사업자 입장에서 명확한 자료로 영농 이행활동을 입증할 수 있어 사업운영 차원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부당한 제재를 방어하는 수단적 측면에서 편익이 예상됨 따라서, 본 조문은 행정부담적 측면보다는 제도 전체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조문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형	44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70101~20291231	3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해당없음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제22조(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 ① 발전사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1. 연도별 영농계획, 작부체계, 파종·정식·재배관리·수확 시기 및 경작·재배면적에 관한 자료 2. 농자재 투입, 농작업 수행, 농기계 사용 및 인력투입 등에 관한 자료 3. 제1호에 따른 파종·정식·재배관리·수확 시기 및 경작·재배면적과 제2호에 따른 농업생산활동의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발전사업부지의 사진·영상자료. 이 경우 사진·영상자료에는 촬영 일시 및 촬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재배작물의 종류, 생산량, 판매 또는 자가소비 실적 등 농업생산활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발전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고장·사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자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현 행	개 정 안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발전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자료가 작성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준수사항 이행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발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작성방법, 전자적 보관방법 및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연계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전사업자에게 매년 영농계획에 따른 농업생산활동 지속, 부적합 작물 재배 금지, 발전설비의 지속적 점검·유지 의무 부과
 -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작성·보관 및 요청 시 제출 의무를 직접 규정
- 영농 여부와 설비관리 여부는 특정 시점의 현장상태만으로 충분한 확인이 곤란
 - 파종·정식·재배관리·수확, 농작업·인력투입, 생산·판매 등 영농활동이 계절에 따라 순차 발생
 - 설비 점검·보수·사고조치 역시 발생 당시 기록이 없으면 사후 재구성 및 객관적 확인이 곤란
- 사업자별 임의적인 증빙방식에 의존할 경우 동일 준수사항에 대한 증빙수준 편차 및 반복 보완·현장확인 발생 우려
 - 자료 종류·보관기간·제출요청 방식·전자적 관리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거래비용 축소 필요
- 시행령안은 법률상 확인대상인 영농 이행·농업생산 결과·발전설비 유지관리와 직접 연결되는 자료로 작성대상을 한정
 - 자료 제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요청 시 범위·기한·방법을 명시하도록 하여 과도한 제출 방지

- 촬영일시·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영상자료는 특정 사업부지에서 실제 영농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증빙으로 활용
- 시행규칙·운영지침에서 얼굴·차량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촬영범위·보관·접근권한 최소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발전사업자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기준 설정
	내용	○ 법률상 준수 의무와 직접 관련된 최소 증빙자료 중심으로 구성 ○ 자료 범위·5년 보관·요청 기반 제출·전자연계 기준 구체화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확인기준 통일 ○ 사후 입증 가능성 제고 ○ 제출요청 예측가능성 확보 ○ 현장점검·보완요구 감소	○ 정기적 기록·보관 행정부담 ○ 사진·영상 및 전자보관에 일부 디지털 활용부담

○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 법률이 준수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의 작성·보관·제출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어 세부기준 미설정 시 입법목적 달성 및 일관된 집행 곤란
- 자료항목을 법률상 영농·작물재배·설비 유지관리 의무와 직접 대응하도록 제한하여 최소필요 범위 유지

- 5년 보관기간은 다년간 이행추세와 반복 위반 여부 확인 필요성, 상법상 전표 유사서류 5년 및 전기안전관리 기록 4년 등 유사제도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
- 제출은 요청기반으로 운영하고 요청 시 범위·기한·방법을 특정하도록 하여 상시제출보다 부담이 낮은 방식 채택
- 부령·표준서식 설계 시 기존 행정자료 재사용, 동일자료 중복제출 금지, 전자적 보관·제출, 종합정보시스템 입력자료의 대체 활용 원칙 반영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 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하위법령 반영

	협의회('26.8.12)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발전사업자의 계속적 영농·적합작물 재배·발전설비 유지관리 이행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보관·제출체계 구축
-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증빙의 종류·보관기간·제출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및 행정기관별 자료요구·판단기준 편차 최소화
- 전자적 보관과 종합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중복제출·현장확인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보전 및 안전한 발전설비 운영이라는 공익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발전사업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영농계획 수립, 농작업, 생산·판매, 발전설비 점검·보수 등을 통상적으로 수행하므로 작성대상 자료 대부분이 기존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기록·정리 성격
 - － 자료 범위·보관기간·제출방법을 사전에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상시 제출부담 최소화
 - － 표준서식·전자작성·전자보관·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및 농업경영체·전기안전 관련 기존자료 활용을 통해 중복 작성·보관·제출 부담 완화 가능
 - － 촬영일시·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영상자료는 일부 추가 디지털 활용부담을 수반하나 모바일 입력·자동정보 저장·사용자 안내·교육 등으로 준수 지원 가능
 -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촬영대상과 저장정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원본 제출을 제한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최소화 필요
 - － 규제수단이 법률상 준수 의무 확인에 직접 필요한 자료로 한정되고 대체자료 활용·전자화 등 부담완화 수단을 병행할 수 있어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농림수산성은 매년 영농상황 및 수익 등에 관한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은 전압 및 주파수 등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사실조사를 위해 전기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을 명하고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법」 제33조에서는 상인은 상업장부와 중요서류를 10년, 전표 또는 유사서류를 5년 보존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법」 제8조의2에서는 사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 시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항은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동 사항을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을 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영농·설비관리 자료와 사진 등은 일상적인 영농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이며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음. 작성항목과 5년 보관기간이 명확하므로 정기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두면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발전사업자가 작성·보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자료 제출·확인 은 기존 행정업무 및 전자적 방식 활용이 가능하여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하위법령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 작성·보관·제출 기준 마련 논의
- 전문가회의: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하위법령 검토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추진(2026.7.~10.)
- 현장협의: 농업인단체, 농특위, 농협 조합장 등과 영농 이행관리·주민수용성·사업자 부담완화 방안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 해당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2개소)를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농업인 등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
- * 수도권(화성, 안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개선 등 진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법률상 준수해야 하는 실제 영농, 적합작물 재배 및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 증빙체계
- 자료의 종류·5년 보관기간·요청기반 제출·전자연계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의 실효적 집행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확보
- 국내 전기안전·전기사업·농업경영체·상법·농지법의 기록·보존·제출 제도 및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 연례 영농실적 보고제도와 비교할

때 규제수단과 보관기간은 통상적 범위

- 정량비용 산정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부분 기존 영농·설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전자화·기존자료 재사용을 통해 순수 추가부담 최소화 가능
- 표준서식, 전자보관, 종합정보시스템 연계, 중복제출 금지 및 개인 정보 최소수집을 제도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의 필요성·비례성·실효성 인정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발전사업자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기준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자료 작성·정리·전자보관·사진/영상 기록·요청 시 제출에 필요한 반복적 행정시간 및 일부 디지털 활용 부담
- (편익) 표준화·전자연계·기존자료 재사용을 통한 중복작성·보완요구·현장확인·분쟁 감소, 객관적 이행점검 및 집행일관성 제고
- (종합) 표준서식·전자연계·중복제출 방지 원칙이 적용될 경우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연도별 영농계획서 작성, 농자재·인력투입 내역 기록, 협동조합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투입 등에서 직접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자료 양식이 사전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자별로 상이한 형식의 자료를 준비한 뒤 재작성하게되는 비효율도 예상됨.

그러나, 해당 조문은 영농형 태양광 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와 관련한 것으로 전체 제도의 증거법적 토대로 기능함. 사업자 입장에서든 명확한 자료로 영농 이행활동을 입증할 수 있어 사업운영 차원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부당한 제재를 방어하는 수단적 측면에서 편익이 예상됨

따라서, 본 조문은 행정부담적 측면보다는 제도 전체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조문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발전사업자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기준 설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자료 작성 · 정리 · 전자보관 및 요청 시 제출
비용항목	인력시간, 전자저장, 사진 · 영상 기록,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지자체 요청 시 제출자료 선별 · 전송을 위한 영농 · 생산 · 설비관리 활동별 기록 정리 및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제도 숙지 및 업무절차 정비
편익항목	교육 · 학습, 내부 기록방식 조정, 디지털 활용에 따른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감독·제재 조문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증거기반으로 기능하며 사업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경영관리 도구로서의 부가가치 발생에 따른 편익이 예상됨. 추가로, 객관적 영상, 기록 증빙은 향후 원상회복 의무 이행 여부나 손실보상 산정 등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행정심판이나 소송 비용 예방 차원의 편익 발생도 예상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전사업자(협동조합, 농업법인)의 수익에 대한 주민환원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 · 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발전 수익의 주민 수익 내재화 달성을 위해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대상 정부 차원의 주민환원 방법 및 절차 규정		
	7.규제내용	○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이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동기금, 에너지복지, 농업생산기반 · 공동영농, 취약계층 복리 · 정착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도록 규정 ○ 주민환원 대상 · 재원 산정방식 · 환원규모 · 사업내용 · 주민 의견수렴 · 실적공개 · 회계관리 등을 포함한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 ○ 주민환원계획 및 집행실적 등을 매년 공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부실 이행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기업 · 소상공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인 ○ 피규제자 이외 이해관계자 － (일반국민) 주민환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고령농업인, 청년농어업인, 임차농업인, 귀농인 등 ○ 관련기관 － (허가 · 감독) 시장 · 군수 · 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인		
		이해관계자	주민환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고령농업인, 청년농어업인, 임차농업인, 귀농인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의 발전수익 일부가 해당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환원의 방법과 계획 수립 · 집행 ·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함. － 주민 의견수렴과 회계관리 ·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환원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 (기대효과) 발전수익을 공동기금, 농업생산기반, 에너지복지, 생활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가. (분석방법) 정성분석 ○ (측정 기준) 동 규제는 신설 규제로서 기존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 규제 대비 증가분이 아니라 이 규제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함. 나. 피규제자 수 ○ 본 규제의 피규제자는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으로서,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환원의무를 이행하는 발전사업자임. － 허가신청 단계에서는 주민환원계획을 수립 · 제출하고, 사업 운영 이후에는 주민환원계획 · 집행결과 및 관련 수익 · 회계자료를 매년 공개 · 제출해야 함. ○ 다만, 신규 제도 시행 전 단계로 연도별 주민참여협동조합 · 농업법인의 허가건수, 실제 수익 발생 사업자 수 및 누적 운영사업자 수에 관한 실		

			적자료가 없어 연간 피규제자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다. 영향집단별 비용·편익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행정부담) 주민환원계획의 수립·제출, 주민 의견수렴, 회계관리 및 주민환원 실적·수익·회계자료의 매년 공개·제출 등에 따른 행정부담이 발생함. － (직접비용-경제적 부담)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함에 따라 사업자의 가용수익이 일부 감소할 수 있음. － (직접편익-예측가능성 제고) 주민환원의 대상·방법 및 계획 수립·공개·제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환원의무의 내용과 이행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간접편익-주민수용성 제고) 주민 의견수렴과 환원실적 공개를 통해 주민환원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직접편익-주민복지 증진) 발전수익의 일부가 공동기금, 에너지복지, 농업생산기반, 취약계층·청년농어업인 지원, 생활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되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 (간접편익-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발전수익이 지역 내에 재투자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지역공동체 유지·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됨. － (직접편익-정보접근성 제고) 주민환원계획과 집행결과, 관련 수익·회계자료가 매년 공개됨에 따라 주민이 환원 여부와 집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환원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됨. ○ 정부 － (직접비용-행정비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환원계획 및 매년 제출되는 집행실적·회계자료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하는 데 행정인력과 시간이 소요됨.
--	--	--	--

		－ (직접편익-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주민환원계획, 집행실적 및 회계자료를 통해 주민환원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제도의 사후관리와 운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라. 정량분석이 곤란한 사유 ○ 본 규제의 대상은 전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아니라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으로 한정되나, 연도별 신규 허가사업자 중 해당 사업자 유형의 규모와 실제 수익 발생 사업자 및 누적 운영사업자 수에 관한 자료가 없어 연간 피규제자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주민환원계획의 작성·제출, 주민 의견수렴, 회계관리 및 매년 자료 공개·제출 등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은 사업규모와 환원방식에 따라 달라 행정부담의 단위비용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 ○ 주민환원 규모 역시 발전수익과 운영·유지관리비, 전력거래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등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주민 측 편익도 환원방식과 수혜대상이 다양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금전가치화하기 어려움. 마. 향후 정량화 계획 ○ 법 시행 이후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의 허가·운영 현황, 주민환원계획 제출 및 집행실적, 실제 수익 발생 사업자 수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함. ○ 주민환원계획 작성·제출, 주민 의견수렴, 회계관리 및 매년 공개·자료 제출 등에 소요되는 시간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행		44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70101~20291231		3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3조 수익의 주민환원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3조(수익의 주민환원)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환원계획에 따라 그 수익의 일부를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기금의 조성·적립·집행 2. 주민의 전기요금, 에너지 효율개선, 마을 공동시설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에너지복지 지원 3. 농로, 배수로, 공동영농시설, 공동 농기계 이용, 공동작업장 등 농업생산기반 또는 공동영농활동 지원 4. 취약계층, 고령농업인, 청년농어업인, 임차농업인, 귀농인 등에 대한 복리·정착 지원 5. 돌봄·교통·보건·교육·문화·안전 등 생활서비스와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 6. 해당 지역 농업인 또는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영농·가공·유통·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7.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정관·규약 및 총회의결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사업. 다만,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 실적으로 보지 않는다. 8. 그 밖에 주민총회, 조합 총회 또는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주민환원의 대상 지역 및 대상 주민 2. 전력 판매수입, 전력거래 정산금 등 발전사업 수입과 운영·유지관리비, 계통연계·전력거래 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직접 비용을 고려한 환원재원의 산정 방식 및 환원 규모의 결정 기준 3. 주민환원사업의 종류, 시행방법 및 시행 시기 4. 주민 의견수렴 및 환원사업 결정 절차 5. 주민환원 실적의 공개방법 6. 회계관리 및 외부검증 계획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발전사업자는 주민환원계획, 주민환원 집행 결과 및 주민환원 재원의 산정 기초가 되는 발전사업 수익·회계 자료를 해당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매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환원계획 또는 주민환원 실적이 허가조건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환원계획의 수립·변경, 주민총회 또는 주민협의체 운영, 정보공개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농업법인 및 주민참여협동조합 대상 발전사업부지를 포함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수익환원 방식 등을 정의하고 있음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명	조문내용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히, 발전수익을 통한 농촌 주민의 소득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규모화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발전사업자(농업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수익 일부에 대한 주민 환원 방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및 선택의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발전사업자(협동조합, 농업법인)의 수익에 대한 주민환원
	내용	주민환원계획 수립·집행·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하나 이상의 주민수익환원 사업을 선택한 후 주민 의견을 거쳐 환원계획 집행 및 실적 제출
규제대안2	대안명	발전사업자(협동조합, 농업법인)의 수익에 대한 주민환원 미설정
	내용	발전수익의 주민환원 의무는 유지하되, 환원 방법·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발전수익이 농업·농촌에 재투자되며, 주민수용성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향상	발전사업자의 경우 수익 일부의 사용이 제한되고, 계획 수립, 회계분리, 공개 등 절차 신설
규제대안2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 지역	주민환원 기준과 절차가 사업자별로

	및 사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환원 방식 적용 가능	달라질 수 있어 환원의 투명성과 형 평성이 저하되고 주민 간 갈등 발생 우려
--	-----------------------------------	--

o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수익의 주민환원 방법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농촌 주민의 수익 환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등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발전수익의 주민환원 방법 및 절차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
- * ①지역 주민 공동기금, ②에너지복지 지원, ③농업생산기반 또는 공동영농 활동, ④취약계층·청년농업인 등 복리·정착 지원, ⑤공동체 생활서비스 사업 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 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 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 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 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 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 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	하위법령 반영

		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규모화된 발전사업의 추진과 그에 따른 발전수익의 주민 환원은 농촌 주민의 소득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목적에 부합
 -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공동체 단위 발전 수익 환원 방식을 따르는 것이 타당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발전수익의 주민 환원 방식 및 절차는 법률상 규정된 지역 주민 대상 수익 환원을 실현 할수 있는 적절한 절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농업법인 및 주민참여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 수익환원 방식과 절차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른 주민 환원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단위의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 환원 방식 및 규모 등은 지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수익의 주민환원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수익의 주민환원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수익의 주민환원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수익의 주민환원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주민환원 의무가 있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수익의 주민환원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주민 수익 환원을 달성하고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요건으로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주민 수익 환원을 달성하고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요건으로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재검토기한 설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은 2027년 1월1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검토기한 설정)**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역별·작물별 사업여건과 적정 사업규모에 관한 경험 축적이 되지 않는 만큼, 실제 운영결과에 따라 제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규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통일적인 부적합 작물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주민환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호주, 영국, 미국 등 영미권 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중임

구분	개요	주민참여방법	수익공유 방식
(호주) Hepburn Wind Project	5.1MW 규모의 풍력 발전을 통해 약 2,300 가구에 전력을 공급	· 지역주민 출자 투자로서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을 통해 자금 조달 · 주민 1,800명 이상이 자금 투자를 통해 참여 · 1인 1표 의사결정 방식 사용	· 전력 판매 수익은 조합원 배당금 및 지역 발전 기금으로 분배 · 재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반 마련
(영국) Baywind Energy Co-operative	총 2.5MW 규모의 풍력 발전을 통해 전력 판매 1,200명 이상의 협동 조합원 참여	· 협동조합 내 지역주민이 출자 및 지분 투자로 참여	·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조합원 배당으로 분배 · 나머지 수익은 지역 환경 보전 사업 및 커뮤니티 사업에 투자
(미국) Small Town Microgrid	마을 내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과 ESS 시스템으로 지역공동체 주도형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 추진	· 사업주와 주민들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커뮤니티 태양광에너지 협회'를 통해 운영	· 직접적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닌 주민들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력비를 절감해주는 형태 · 운영기관은 수익을 커뮤니티 유지 및 추가 인프라 개선으로 재투자하기도 함

○ 타법사례

- 별도 타법 사례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발전사업자(협동조합, 농업법인)의 수익에 대한 주민환원>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발전사업자(협동조합, 농업법인)의 수익에 대한 주민환원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주민환원은 발전사업 수익을 기초로 계획하고 환원방식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음. 사업자가 수익·비용과 집행내역을 별도 관리하면 되므로 사전에 재원을 반영하고 회계자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주민환원계획, 구분회계, 매년 공개자료와 주민 의견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 수익환원 여부 확인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환원 재원은 사업 수익에서 조성되는바, 별도 재정 소요 없이 집행 및 관리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기준 설정을 위한 다수의 논의 및 연구용역 등 진행
- (전문가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등 포함한 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26.7월~10월)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3. 규제 정비계획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업여건과 적정 사업규모에 관한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은 만큼, 실제 운영 결과에 따라 제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3조 수익의 주민환원	법률에서 정한 주민환원 의무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사업규모·수익 수준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환원방식과 이행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2027년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 최초 검토는 2029년까지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 추진
--	--	--	---

4.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주민참여협동조합 대상 주민 수익환원 방식 및 절차 규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공동체 단위 공동기금 등 조성을 통한 농촌 공동체 유지, 농촌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른 주민 수익환원 현실화를 위한 최선의 기준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발전사업자(협동조합, 농업법인)의 수익에 대한 주민환원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가. (분석방법) 정성분석

○ (측정 기준) 동 규제는 신설 규제로서 기존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 규제 대비 증가분이 아니라 이 규제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함.

나. 피규제자 수

○ 본 규제의 피규제자는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으로서,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환원의무를 이행하는 발전사업자임.

－ 허가신청 단계에서는 주민환원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사업 운영 이후에는 주민환원계획·집행결과 및 관련 수익·회계자료를 매년 공개·제출해야 함.

○ 다만, 신규 제도 시행 전 단계로 연도별 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의 허가건수, 실제 수익 발생 사업자 수 및 누적 운영사업자 수에 관한 실적자료가 없어 연간 피규제자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다. 영향집단별 비용·편익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행정부담) 주민환원계획의 수립·제출, 주민 의견수렴, 회계관리 및 주민환원 실적·수익·회계자료의 매년 공개·제출 등에 따른 행정부담

이 발생함.

- (직접비용-경제적 부담)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함에 따라 사업자의 가용수익이 일부 감소할 수 있음.

- (직접편익-예측가능성 제고) 주민환원의 대상·방법 및 계획 수립·공개·제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환원의무의 내용과 이행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간접편익-주민수용성 제고) 주민 의견수렴과 환원실적 공개를 통해 주민환원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직접편익-주민복지 증진) 발전수익의 일부가 공동기금, 에너지복지, 농업생산기반, 취약계층·청년농어업인 지원, 생활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되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 (간접편익-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발전수익이 지역 내에 재투자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지역공동체 유지·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됨.

- (직접편익-정보접근성 제고) 주민환원계획과 집행결과, 관련 수익·회계자료가 매년 공개됨에 따라 주민이 환원 여부와 집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환원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됨.

- 정부

- (직접비용-행정비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환원계획 및 매년 제출되는 집행실적·회계자료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하는 데 행정인력과 시간이 소요됨.

- (직접편익-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주민환원계획, 집행실적 및 회계자료를 통해 주민환원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제도의 사후관리와 운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라. 정량분석이 곤란한 사유

- 본 규제의 대상은 전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아니라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으로 한정되나, 연도별 신규 허가사업자 중 해당 사업자 유형의 규모와 실제 수익 발생 사업자 및 누적 운영사업자 수에 관한 자료가 없어 연간 피규제자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주민환원계획의 작성·제출, 주민 의견수렴, 회계관리 및 매년 자료 공개·제출 등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은 사업규모와 환원방식에 따라 달라 행정부담의 단위비용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

- 주민환원 규모 역시 발전수익과 운영·유지관리비, 전력거래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등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주민 측 편익도 환원방식과 수혜대상이 다양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금전가치화하기 어려움.

마. 향후 정량화 계획

- 법 시행 이후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의 허가·운영 현황, 주민환원계획 제출 및 집행실적, 실제 수익 발생 사업자 수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함.

- 주민환원계획 작성·제출, 주민 의견수렴, 회계관리 및 매년 공개·자료 제출 등에 소요되는 시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발전사업자(협동조합, 농업법인)의 수익에 대한 주민환원>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인
활동제목	주민환원계획 수립·제출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발전사업자는 허가신청 시 주민환원 대상지역·대상주민, 환원재원의 산정방식 및 규모 결정기준, 환원사업의 종류·시행 방법, 주민 의견수렴, 실적 공개 및 회계관리 등을 포함한 주민환원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행정부담이 발생함. - 다만 사업규모와 환원방식에 따라 계획의 내용과 작성에 필요한 시간·인력이 달라 비용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인
활동제목	주민환원 실적 및 회계자료 관리·공개·제출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발전사업자는 주민환원계획 및 집행결과와 주민환원 재원의 산정기초가 되는 발전사업 수익·회계자료를 매년 공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자료관리 및 제출 부담이 발생함. - 실제 업무량은 사업규모와 주민환원 방식 등에 따라 달라 정량적인 비용 산정이 곤란함.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인
활동제목	발전수익의 주민환원

비용항목	경제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부를 공동기금, 에너지복지, 농업생산기반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의 형태로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환원규모는 발전사업 수입과 운영·유지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개별 사업의 수익·비용구조에 따라 결정되어 일률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움.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인
활동제목	주민환원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반영
편익항목	예측가능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주민환원의 대상·방법과 계획 수립·공개·제출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주민환원의무와 이행방식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사업운영 및 수익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인
활동제목	주민 의견수렴 및 환원실적 공개
편익항목	주민수용성 제고 및 갈등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주민 의견수렴과 환원실적 공개를 통해 주민환원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이 제고되어 주민과의 갈등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②정부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	----------------

활동제 목	주민환원계획 및 집행실적 확인 · 관리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단계에서 주민환원계획을 확인하고, 이후 매년 제출되는 주민환원 집행실적 및 관련 회계자료 등을 확인·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행정인력과 시간이 소요됨. - 주민환원계획 또는 실적이 허가조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시정명령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활동제 목	주민환원의무 이행실적 관리
편익항목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주민환원계획과 집행실적 및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민환원의무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식적인 주민환원 운영 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해져 제도의 사후관리 실효성이 제고됨.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활동제 목	주민환원 기준 및 절차 운영
편익항목	행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주민환원의 방법과 계획 수립·공개·제출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사업자별 주민환원 여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관리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음.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주민환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농업인 등
-----------	----------------------------

활동제목	발전수익의 지역주민 환원
편의항목	주민복지 증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발전수익의 일부가 공동기금, 에너지복지, 농업생산기반 및 공동영농활동, 취약계층·청년농어업인 등의 복지·정착지원, 생활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되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정성)영향집단명	주민환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농업인 등
활동제목	주민환원계획 및 집행실적 확인
편의항목	정보접근성 및 투명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주민환원계획, 집행결과 및 관련 수익·회계자료가 매년 공개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주민환원의 이행 여부와 집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환원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됨.

(정성)영향집단명	발전사업부지 소재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
활동제목	발전수익의 지역 내 활용
편의항목	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발전수익의 일부가 지역 내 농업생산기반,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사업 등에 재투자됨으로써 지역 내 경제적 편의의 환류와 지역공동체 유지·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조사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재배 제한 농작물 준수, 발전설비 유지·관리,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주민환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정부개입 필요성) 허가 당시의 요건 확인만으로는 장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의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제출자료 검토, 관계자료 확인, 현장확인·사진촬영·위치정보 확인·관계자 면담, 관계기관 의견조치, 원격탐사·항공사진·전자영농일지·종합정보시스템 자료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준수사항 미이행이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및 허가권자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형식적인 영농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생산활동이 지속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목표: 허가 후에도 영농·안전관리·주민환원 등 발전사업자의 법정 의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 확인함 ○ 기대효과: 위반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 (비용) 원격탐사에 오판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명자료 준비 비용 및 감독 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간접비용 예상됨		

		－ (편익) 발전사업자 관점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으로 오판 리스크 감소와 원격탐사를 통한 현장점검 부담 경감이라는 편익 발생이 예상됨 － (종합) 여러 수단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은 개별수단 대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나 교차검증을 통한 오판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연도별 영농계획서 작성, 농자재·인력투입 내역 기록, 협동조합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투입 등에서 직접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자료 양식이 사전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자별로 상이한 형식의 자료를 준비한 뒤 재작성하게되는 비효율도 예상됨. 그러나, 해당 조문은 영농형 태양광 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와 관련한 것으로 전체 제도의 증거법적 토대로 기능함. 사업자 입장에서 명확한 자료로 영농 이행활동을 입증할 수 있어 사업운영 차원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부당한 제재를 방어하는 수단적 측면에서 편익이 예상됨 따라서, 본 조문은 행정부담적 측면보다는 제도 전체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조문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 용·	해당없음		

	사후 규제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4조(준수사항 이행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의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제출자료의 검토 2. 농업경영정보, 전력거래자료, 전기사업 허가자료, 농지대장 등 관계자료의 확인 3. 현장확인, 사진촬영, 위치정보 확인 및 관계자 면담 4. 지원센터, 감독대행기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한국전기안전공사”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 5. 원격탐사, 항공사진, 전자영농일지,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발전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수사항 이행 확인의 세부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는 발전사업자에게 매년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하고,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며, 발전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준수사항의 세부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실제 영농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허가 당시 한 차례의 확인만으로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정기적인 확인절차가 없다면 농업생산활동을 중단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서 발전사업만 계속하는 경우를 적기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사후관리가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조사
	내용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의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제출자료 검토, 관계자료 확인, 현장확인·사진촬영·위치정보 확인·관계자 면담, 관계기관 의견조회, 원격탐사·항공사진·전자영농일지·종합정보시스템 자료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준수사항 미이행이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위반사항 조기 발견, 지속적 영농 확보	확인 대응 및 행정업무 부담 발생

○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발전사업부지(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신고나 민원 발생 시에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다만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매번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고 기존 제출자료, 행정정보 및 원격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 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하위법령 반영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	--	---	--

3. 규제목표

- 발전사업자가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장기간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필요
 -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은 필수적이며,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허가 기준 및 절차는 발전사업자가 20년 이상 해당 부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최소 규정임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매년 1회 이상의 확인은 발전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인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기점검 주기로 볼 수 있음. 또한 모든 경우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제출자료, 농업경영정보, 전력거래자료, 농지대장, 원격탐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준수사항 미이행이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단계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부담을 최소화함. 확인하는 기준으로, 의무 부과를 위한 조항의 성격이 아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준수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준수사항 이행 확인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준수사항 이행 확인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준수사항 이행 확인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준수사항 이행 확인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농림수산성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농지의 적절한 영농 지속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매년 재배실적 및 수치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

○ 타법사례

- 「초지법」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연 1회이상 조사하도록 규정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사업자는 제22조에 따라 보관하는 영농·설비 자료와 현장 상태를 활용하여 정기 확인에 대응할 수 있음. 서류확인, 관계기관 자료 및 현장조사 등 확인방법이 다양하므로 추가 자료부담을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허가권자가 제출자료, 행정정보 및 현장확인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허가권자가 제출자료, 행정정보 및 현장확인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허가 심사 기준 설정을 위한 다수의 논의 진행
- (전문가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등 포함한 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26.7월~10월)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 해당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농업인 등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
- * 수도권(화성, 안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개선 등 진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시행령 제24조는 법 제13조에서 정한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규제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규정임.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사업기간 동안 농업생산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매년 1회 이상 확인하되 기존 제출자료·행정정보·원격탐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따라서 형식적 영농을 방지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조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원격탐사에 오판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명자료 준비 비용 및 감독 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간접비용 예상됨
- (편익) 발전사업자 관점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으로 오판 리스크 감소와 원격탐사를 통한 현장점검 부담 경감이라는 편익 발생이 예상됨
- (종합) 여러 수단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은 개별수단 대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나 교차검증을 통한 오판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연도별 영농계획서 작성, 농자재·인력투입 내역 기록, 협동조합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투입 등에서 직접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자료 양식이 사전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자별로 상이한 형식의 자료를 준비한 뒤 재작성하게되는 비효율도 예상됨.

그러나, 해당 조문은 영농형 태양광 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와 관련한 것으로 전체 제도의 증거법적 토대로 기능함. 사업자 입장에서든 명확한 자료로 영농 이행활동을 입증할 수 있어 사업운영 차원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부당한 제재를 방어하는 수단적 측면에서 편익이 예상됨

따라서, 본 조문은 행정부담적 측면보다는 제도 전체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조문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조사>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자료작성 및 제출
비용항목	다중 자료 교차검증에 따른 비용 및 상시적 피감독 상태에 따른 운영상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등록정보 갱신 지연이나 오기가 다중 자료 교차검증시 문제사안으로 확대되어 소명 부담 발생이 예상되며 이행 확인을 위한 여러 수단이 동시에 작동하여 발전사업자는 상시 피감독 상태에 놓여 운영상 부담에 따른 비용 발생 예상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다각적 검증 및 등록정보 연계 활용
편익항목	교차 검증을 통한 오판 리스크 완화, 원격탐사를 통한 현장점검 부담 경감 등의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교차 검증으로 성실 이행 사업자가 부당하게 의심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원격탐사 활용시 ‘감독 방법·절차’의 현장점검 비용 절감 편익 발생이 예상됨. 추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기존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중복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되는 편익이 예상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시정명령의 기준 및 절차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준수사항 불이행 발전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과 절차를 부여할 필요		
	7.규제내용	○ 시정명령 시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사항, 시정기간, 불이행 시 조치 및 의견 제출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시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6개월 이하로 정하되, 긴급한 경우 3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영농활동 지속 등 발전사업자 대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시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반 상태의 신속한 해소 및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시정명령에 따른 위반사항 및 필요한 경우 신청 - (편익) 시정명령에 대한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주민 피해 확대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됨 - (종합) 동 법에 따른 시정 절차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규제비용은 제한적인 반면, 농업생산기반 보호 및 주민피해 예상		

		의 편익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준수사항 미이행 등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과 검토 방식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서류 작성·보관 등 행정비용 발생 예상되며 협동조합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이사회 등에 따른 내부절차 이행으로 개별사업자 대비 시정기간 내 대응이 더 촉박해지는 구조적 비용 부담도 예상됨. 그러나, 시정명령에 대한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절차적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핵심 편익 발생이 예상되며 기간 연장 제도를 통한 과잉제재 방지를 통한 추가적인 편익 발생이 예상됨 따라서, 동 법에 따른 시정 절차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규제비용은 제한적인 반면, 농업생산기반 보호 및 주민피해 예상의 편익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5조(시정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할 사항, 시정기간, 불이행 시 조치 및 의견 제출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기간은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영농시기, 작물의 생육기간, 시설 보수에 필요한 기간 및 공익상 필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훼손, 전기안전 사고 또는 중대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발전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14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시정명령 등 위임 규정으로서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과 절차를 정의하고 있음
 -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불이행 시 농지 훼손, 식량안보 위협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 발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제재처분 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후속 제재로 연결되는 단계적 관리체계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시정명령의 기준 및 절차
	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해야 할 사항과 시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시정 기회를 부여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발전사업자에게 허가취소 등 제재 처분 이전에 스스로 위반상태를 개선할 기회를 부여 시정기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임	시정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한 인력·행정·설비보수 등의 부담 발생 가능

o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수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 등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체계적 제재 처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	하위법령 반영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회의 2회 (‘26.6.12, ‘26.6.18)	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 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 및 농업인·농촌 주민의 소득 제고 등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 실현 가능
- 또한, 경미한 위반은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중대하거나 반복 위반은 강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체계적 처벌을 전제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료 작성·제출 등 의무 위반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 위반			
주민 환원 의무 위반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허가 조건 위반 등			
영농의무 위반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1년	허가취소
부적합작물 재배 제한 위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 사유로 사업 유지 불가	사업정지 1년	허가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전사업 미수행			
사업 정지 기간 중 발전설비 운영, 전력 판매 수행	허가취소	-	-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의무 불이행 등 위반행위 시 제재처분 기준은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지속 병행토록 유도하는 규정이며,
 - 위반행위의 경중 및 반복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취소 등을 분류하여 위반행위와 발전사업자의 제재처분 간 비례성을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시정명령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시정명령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시정명령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시정명령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 등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시정명령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반적으로 영농 부재, 수확량 미달, 설비 관리 해태 등 사유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사업 취소를 규정

- 사업 취소 외 사업정지와 과징금을 규정(프랑스)도 하거나,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단가 감액 또는 미교부*(독일, 일본)

* (독일) 전력 지원단가 2.5센트/kWh 감액 / (일본) FIT/FIP 교부금 일시 정지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사유와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자격 정지 및 취소 규정

< 참고 : 전기사업법 제12조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참고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0 >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시정명령은 위반내용과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영농시기·시설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이행기한을 정하도록 함. 일정 요건 아래 기한 연장도 가능하므로 피규제자가 구체적인 시정계획을 세워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위반사실 확인 후 시정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업무로 수행 가능하여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기준 설정을 위한 다수의 논의 및 연구용역 등 진행
- (전문가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등 포함한 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26.7월~10월)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 해당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농업인 등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
- * 수도권(화성, 안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개선 등 진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및 절차는 장기간(20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이며,
-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 및 농업인·농촌 주민의 소득 제고 등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 실현을 위한 필수적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시정명령의 기준 및 절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비용)시정명령에 따른 위반사항 및 필요한 경우 신정
 -(편익) 시정명령에 대한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주민 피해 확대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됨
 -(종합) 동 법에 따른 시정 절차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규제비용은 제한적인 반면, 농업생산기반 보호 및 주민피해 예상의 편익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준수사항 미이행 등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과 검토 방식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서류 작성·보관 등 행정비용 발생 예상되며 협동조합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이사회 등에 따른 내부절차 이행으로 개별사업자 대비 시정기간 내 대응이 더 촉박해지는 구조적 비용 부담도 예상됨.

그러나, 시정명령에 대한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절차적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핵심 편익 발생이 예상되며 기간연장 제도를 통한 과잉 제재 방지를 통한 추가적인 편익 발생이 예상됨
 따라서, 동 법에 따른 시정 절차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규제비용은 제한적인 반면, 농업생산기반 보호 및 주민피해 예상의 편익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시정명령의 기준 및 절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지방자치단체
활동제목	발전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기간 설정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정조치를 위한 방법 설계,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직접비용과 시정명령 대상 발전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서면 통지 등 일시적인 행정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발전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기간 설정
편익항목	시정명령의 위반행위 의 내용, 시정사항, 기간, 불이행시 조치기간 및 의견 제출방법 등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적 불확실성 및 주민 수용성 사전확보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영농 및 발전사업의 안정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주민설명회 등으로 발생하는 부담보다는 공정한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별표2)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별표2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 · 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준수사항 불이행 발전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횟수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허가 취소 · 정지 등 객관적이고, 통일적 제재처분 기준 및 절차 수립 필요		
	7.규제내용	○ 발전사업자의 자격 상실, 결격사유 발생, 부정한 허가, 사업 미수행 및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 횟수 · 중대성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을 규정 ○ 반복 위반, 복수 위반 및 위반행위의 동기 · 정도 · 피해 등을 고려한 처분의 가중 · 감경 기준과 사업정지의 범위 · 방법 및 정지기간 중 준수사항을 규정 ○ 허가취소 · 사업정지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허가취소의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처분 절차를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기업 · 소상공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 (일반국민)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 피규제자 이외 이해관계자 － (일반국민) 농지 임대인, 인접 농지의 소유자 · 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 · 면 · 동 주민 ○ 관련기관 － (허가 · 감독) 시장 · 군수 · 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이해관계자	발전설비 유지관리·전기안전관리 업체, 금융·보험기관, 농지 임대인,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 주민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 발전사업자의 법정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위반의 유형·횟수·중대성에 따른 단계적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제재처분의 객관성·예측가능성 및 형평성을 확보함 －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반복적·중대한 위반에는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적용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함. ○ 기대효과 : 영농의무, 재배 제한, 설비 유지관리, 주민환원 등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여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 병행을 확보하고, 농지 훼손·인접 농지 피해·주민 피해 등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가. (분석방법) 정성분석 ○ (측정 기준) 동 규제는 신설 규제로서 기존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 규제 대비 증가분이 아니라 이 규제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함. 나. 피규제자 수 ○ 본 규제의 피규제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중 법령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자임. － 위반행위에는 발전사업자 자격 상실, 영농의무·재배 제한·설비 유지관리·자료 제출·주민환원 의무 위반, 허가조건 위반 및 사업정지기간		

			중 발전사업 수행 등이 포함됨. ○ 다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규 제도로 현재 위반행위 및 제재처분 실적이 없으며, 실제 피규제자 수는 위반행위 발생 여부와 위반유형·횟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도별 대상자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다. 영향집단별 비용·편익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및 피규제 일반국민 － (직접비용-발전수익 감소)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기간 동안 발전설비의 운전 및 해당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판매가 제한되므로 발전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직접비용-사업기회 상실)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어 향후 발전수익 및 사업기회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직접편익-예측가능성 제고) 위반행위별 사업정지·허가취소 기준과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처분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 (직접편익-과도한 제재 방지) 위반행위의 동기·정도·위반기간,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 피해 정도 및 시정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감경·가중할 수 있어 개별 위반행위에 비례한 처분이 가능함.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직접편익-농지 및 인접 농지 피해 예방) 영농의무 및 재배 제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장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의 지속을 방지하고 농지 훼손 및 인접 농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간접편익-주민피해 예방 및 사업 신뢰성 제고) 발전설비 유지관리, 주민환원 및 허가조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안전사고·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 정부 － (직접비용-행정비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	---

		은 위반사실 확인, 시정명령 이행 여부 검토, 사전 통지·의견청취 및 청문, 사업정지·허가취소 처분 등에 일정한 행정인력과 시간이 소요됨. － (직접편익-제재행정의 일관성 제고)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른 통일적인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허가권자별 처분 편차를 줄이고 제재행정의 객관성·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 (직접편익-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단계적 제재와 가중·감경 기준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어 준수사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라. 정량분석이 곤란한 사유 ○ 동 규제에 따른 비용은 전체 발전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한정되어 발생함.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규 제도로 현재 위반유형별 발생건수, 사업정지·허가취소 건수 및 위반횟수별 처분실적 등 기초자료가 없어 연간 피규제자 수를 산정하기 어려움. ○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위반횟수와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위반기간, 피해 정도, 시정노력 등에 따라 사업정지기간의 가중·감경이 가능하여 실제 처분수준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 ○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발전설비 용량, 발전량, 전력판매수입, 처분시점 및 잔여 사업기간 등 개별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금전가치화하기 어려움. 마. 향후 정량화 계획 ○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 유형별 발생건수, 사업정지·허가취소 처분건수, 처분기간 및 가중·감경 적용현황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함. ○ 사업정지 처분 사업자의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미해당

		예외기준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는 처분의 종류, 처분 사유, 처분일, 사업정지기간 또는 허가취소일, 발전사업부지 및 발전설비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이 의제된 주민참여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은 허가취소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지역이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에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u>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u>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현행	개정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둘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중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 중 하나라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한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으며, 가중한 사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위반기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농업생산기반·인접농지·주민에게 미친 영향, 시정명령 이행 노력 및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마. 라목에 따른 감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위반상태를 자진신고하거나 신속히 시정한 경우 2)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농지 훼손, 안전사고 또는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질병, 농업재해 등 위반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정명령 기간 내 대부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작물 생육기간, 계절적 영농 여건 또는 설비 안전조치 등

현행	개정안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이행이 지연된 경우 바. 라목에 따른 가중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자료 은폐·조작 또는 거짓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 3) 농업생산기반 훼손, 안전사고, 인접 농지 피해 또는 중대한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별표 3 제1호나목2)에 따른 위반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5) 시정명령의 이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한 경우 사. 사업정지는 정지대상 발전설비의 운영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지대상 발전설비를 운전하거나 그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등 정지대상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사업정지기간 중 금지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도 농업생산활동,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원상회복 및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해야 한다.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정지기간, 정지대상 발전사업부지 또는 발전설비, 사목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및 아목에 따라 계속해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분서에 적어야 한다. 차. 하나의 허가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위반행위가 일부 발전사업부지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보전 및 공익상 필요를 고려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행정처분 기준</th></tr><tr><th>1차</th><th>2차</th><th>3차</th></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현 행	개 정 안				
		위반	위반	이상 위반	
가. 발전사업 자 자격을 상실한 경 우. 다만, 주민참여협 동 조합 은 지역 거주 조합 원 이 10명 미만 이 된 후 1 년 이내에 10명 이상 이 되지 않 은 경우로 한다.	법 제15조 제1항제 1호	허가취 소	허가취 소	허가취 소	
나. 법 제5조제 2항 각 호 의 결격사유 가 발생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 2호	허가취 소	허가취 소	허가취 소	
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 정한 방법 으로 허가 를 받은 경 우	법 제15조 제1항제 3호	허가취 소	허가취 소	허가취 소	
라. 정당한 사 유 없이 1 년 이상 발 전 사업 을 수 행 하 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 4호	사업정 지 1년	허가취 소	허가취 소	
마. 부도·폐 업·파산· 관 리 부 실 등으로 허 가된 사업 의 목적을 현저히 달 럽다고 판 단되는 경 우	법 제15조 제1항제 5호	사업정 지 1년	허가취 소	허가취 소	

현행	개정안				
	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활동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 6호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1년	허가취소
	사.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재배 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 6호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1년	허가취소
	아.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 6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자.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 6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차.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 6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현행	개정안				
	카. 허가된 발전사업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 6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사업정지기간 중 발전설비를 운전하거나 전력을 판매하는 등 정지대상 발전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 7호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15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제재처분 등 위임 규정으로서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사업정지·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정의하고 있음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명	조문내용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불이행 시 농지 훼손, 식량안보 위협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발전사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령명	조문내용
	하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발전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의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조합원이 10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10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주민참여협동조합을 말한다.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허가된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발전사업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처분 기준 등 규정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별표2)
	내용	시정명령 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횟수 및 중대성 고려 등 단계적 사업정지·허가 취소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규제대안2	대안명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별표2) 기준 미설정
	내용	발전사업자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일정기간 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절차를 행정실무에 맡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위반의 자발적 시정 유도	위반사업자는 전력 판매 중단, 허가 상실 등 비용 부담
규제대안2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로 사업자의 부담 완화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반복되거나, 미이행이 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중대한 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 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하위법령 반영

		필요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수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 등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체계적 제재 처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

3. 규제목표

-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 및 농업인·농촌 주민의 소득 제고 등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 실현 가능
- 또한, 경미한 위반은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중대하거나 반복 위반은 강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체계적 처벌을 전제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료 작성·제출 등 의무 위반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 위반			
주민 환원 의무 위반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허가 조건 위반 등			
영농의무 위반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1년	허가취소
부적합작물 재배 제한 위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 사유로 사업 유지 불가	사업정지 1년	허가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전사업 미수행			
사업 정지 기간 중 발전설비 운영, 전력 판매 수행	허가취소	-	-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의무 불이행 등 위반행위 시 제재처분 기준은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지속 병행토록 유도하는 규정이며,
 - 위반행위의 경중 및 반복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취소 등을 분류하여 위반행위와 발전사업자의 제재처분 간 비례성을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허가취소 등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허가취소 등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허가취소 등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 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 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사업전환/승계/폐업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허가취소 등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의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허가취소 등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지속을 위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요건으로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26년 6월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으로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병행을 위하여 도입된 신규 제도로 '26년 12월 법령에 따른 관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일몰 설정 어려움

또한 허가 요건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발전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을 정하여 영농의 지속성, 발전설비의 안전 및 농지 보전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관리규정임

* **(일몰미설정)** 발전사업자 대상 제재처분 기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요인**이며, 영농활동 및 발전사업 병행 유지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사항**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규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통일적인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사업 취소 외 사업정지와 과징금을 규정(프랑스)도 하거나, 재생 에너지 전력 지원단가 감액 또는 미교부*(독일, 일본)

* (독일) 전력 지원단가 2.5센트/kWh 감액 / (일본) FIT/FIP 교부금 일시 정지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사유와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자격 정지 및 취소 규정

< 참고 : 전기사업법 제12조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참고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0 >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별표2)>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별표2)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	----	----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와 처분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업자는 자격 유지, 영농 지속 및 시정명령 이행으로 처분을 예방할 수 있음. 위반횟수와 정도에 따른 단계적 처분 및 의견제출 절차가 있으므로 준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3년 내 동일 위반 시에만 가중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허가취소 시 청문)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수용성을 극대화함. 사업정지 시 발전설비가 장기 방치될 위험이 있으므로, 별표2 제1호 아목에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농업생산 및 발전설비 안전관리는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여 혼선을 방지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위반자료, 행정조사, 시정결과 등 자료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처분행정은 기존 지자체 인력으로 가능하고, 원상회복 비용은 사업자 부담인바, 별도 재정 소요 없이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기준 설정을 위한 다수의 논의 및 연구용역 등 진행
- (전문가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등 포함한 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26.7월~10월)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 해당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농업인 등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
- * 수도권(화성, 안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개선 등 진행할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	—	—	—

4.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및 절차는 장기간(20년)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제재처분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 단계적 제재와 적법절차, 가중·감경 기준 등 위반행위와 비례한 체계적 제재처분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발전사업자의 권익을 고려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별표2)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가. (분석방법) 정성분석

○ (측정 기준) 동 규제는 신설 규제로서 기존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 규제 대비 증가분이 아니라 이 규제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함.

나. 피규제자 수

○ 본 규제의 피규제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중 법령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자임.

－ 위반행위에는 발전사업자 자격 상실, 영농의무·재배 제한·설비 유지관리·자료 제출·주민환원 의무 위반, 허가조건 위반 및 사업정지기간 중 발전사업 수행 등이 포함됨.

○ 다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규 제도로 현재 위반행위 및 제재처분 실적이 없으며, 실제 피규제자 수는 위반행위 발생 여부와 위반유형·횟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도별 대상자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다. 영향집단별 비용·편익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및 피규제 일반국민

－ (직접비용-발전수익 감소)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기간 동안 발

전설비의 운전 및 해당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판매가 제한되므로 발전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직접비용-사업기회 상실)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어 향후 발전수익 및 사업기회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직접편익-예측가능성 제고) 위반행위별 사업정지·허가취소 기준과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처분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 (직접편익-과도한 제재 방지) 위반행위의 동기·정도·위반기간,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 피해 정도 및 시정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감경·가중할 수 있어 개별 위반행위에 비례한 처분이 가능함.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직접편익-농지 및 인접 농지 피해 예방) 영농의무 및 재배 제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장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의 지속을 방지하고 농지 훼손 및 인접 농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간접편익-주민피해 예방 및 사업 신뢰성 제고) 발전설비 유지관리, 주민 환원 및 허가조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안전사고·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 정부

- (직접비용-행정비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사실 확인, 시정명령 이행 여부 검토,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청문, 사업정지·허가취소 처분 등에 일정한 행정인력과 시간이 소요됨.

- (직접편익-제재행정의 일관성 제고)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른 통일적인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허가권자별 처분 편차를 줄이고 제재행정의 객관성·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 (직접편익-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단계적 제재와 가중·감경 기준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어 준수사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라. 정량분석이 곤란한 사유

- 동 규제에 따른 비용은 전체 발전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한정되어 발생함.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규 제도로 현재 위반유형별 발생건수, 사업정지·허가취소 건수 및 위반횟수별 처분실적 등 기초자료가 없어 연간 피규제자 수를 산정하기 어려움.

-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위반횟수와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위반기간, 피해 정도, 시정노력 등에 따라 사업정지기간의 가중·감경이 가능하여 실제 처분수준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

-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발전설비 용량, 발전량, 전력 판매수입, 처분시점 및 잔여 사업기간 등 개별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금전가치화하기 어려움.

마. 향후 정량화 계획

-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 유형별 발생건수, 사업정지·허가취소 처분건수,

처분기간 및 가중·감경 적용현황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함.
○ 사업정지 처분 사업자의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별표2)>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사업정지 처분에 따른 발전사업 중단
비용항목	발전수익 감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기간 동안 정지대상 발전설비의 운전 및 해당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판매가 금지되므로 발전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횟수 및 가중·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 실제 손실규모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허가취소에 따른 발전사업 종료
비용항목	사업기회 및 향후 수익 상실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원상회복 비용 확보상태 증명 과정에서 일부 외부 자문 또는 증명서류 발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발생 여부와 수준이 사업자별로 달라 정량산정은 곤란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확인
편익항목	예측가능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위반행위별 사업정지·허가취소 기준과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처분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고 사업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

(정성)영향집단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위반행위의 경중 및 시정노력 반영
편의항목	과도한 제재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위반행위의 동기·정도·위반기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피해 정도 및 시정명령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자의 시정노력에 비례한 처분이 가능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할 수 있음

②정부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활동제목	위반사실 확인 및 제재처분 실시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사실 확인, 시정명령 이행 여부 검토,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청문, 사업정지·허가 취소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일정한 행정인력과 시간이 소요됨.

□편의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	----------------

활동제 목	위반행위별 통일적 처분기준 적용
편의항목	제재행정의 일관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른 사업정지·허가취소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허가권자별 처분 편차를 줄이고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처분이 가능함.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활동제 목	단계적 제재 및 가중·감경 기준 운영
편의항목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위반행위의 경중과 반복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하고, 위반 정도·피해·시정노력 등을 고려하여 처분수준을 조정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어 준수사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의

(정성)영향집단명	농지 임대인,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 주민
활동제 목	영농의무 및 재배제한 위반사업 관리
편의항목	농지 및 인접 농지 피해 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영농의무 및 재배 제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단계적인 사업정지·허가취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의 지속을 방지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농지 훼손 및 인접 농지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정성)영향집단 명	농지 임대인,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 주민
활동제목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관리
편의항목	주민피해 예방 및 사업 신뢰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발전설비 유지·관리, 주민환원 및 허가조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주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반복적·중대한 위반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허가취소가 가능해짐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허가최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기준 및 절차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원상회복의 대상·방법·기한을 발전사업자 자율에 위임 할 경우, 복구 수준의 편차 발생 및 장기 지연에 따른 방치 우려		
	7.규제내용	○ 원상회복명령 시 발전설비의 철거·복구 범위와 방법, 이행기간, 원상회복계획서 제출기한 및 이행확인 절차를 명시하도록 규정 ○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절적 영농여건·재해·폐기물 처리·토양복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원상회복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또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발전설비 방치 및 농업생산기반 훼손을 방지하여 사업 종료 부지의 신속한 영농 복귀를 도모하고,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 목표: 발전사업 종료 후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농지가 훼손된 상태로 남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기능을 회복함 ○ 기대효과: 농업생산기반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고 발전사업에 따른 토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발전시설 철거비용 및 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이행기간 중 지속적인 기회비용 및 고정비용의 발생이 예상됨. 또, 협동조합 구조상 원상회복 의무의 최종 책임 주체 불명확성에 따른 내부 분쟁비용 발생도 예상됨 그러나, 규제의 명확성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와 원상회복 의무가 명확히 규정·이행됨으로써 농지 소유자 및 지역사회 신뢰가 유지되어 향후 관련 사업 추진시 주민 수용성 제고로 이어져 순편익 증대가 예상됨. 또 원상회복을 통해 농지가 본래 용도로 신속히 복귀하여 농지 소유자의 향후 활용 선택지가 원복되는 자산가치 측면에서의 편익도 예상됨 따라서, 동 조문은 제재수단이라기 보다는 허가 취소 이후에 책임의 청산 절차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어 순편익 발생이 예상됨 발전시설 철거비용 및 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이행기간 중 지속적인 기회비용 및 고정비용의 발생이 예상됨. 또, 협동조합 구조상 원상회복 의무의 최종 책임 주체 불명확성에 따른 내부 분쟁비용 발생도 예상됨 그러나, 규제의 명확성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와 원상회복 의무가 명확히 규정·이행됨으로써 농지 소유자 및 지역사회 신뢰가 유지되어 향후 관련 사업 추진시 주민 수용성 제고로 이어져 순편익 증대가 예상됨. 또 원상회복을 통해 농지가 본래 용도로 신속히 복귀하여 농지 소유자의 향후 활용 선택지가 원복되는 자산가치 측면에서의 편익도 예상됨 따라서, 동 조문은 제재수단이라기 보다는 허가 취소 이후에 책임의 청산 절차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어 순편익 발생이 예상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7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철거·복구의 범위, 방법, 이행기간, 원상회복계획서의 제출기한 및 이행 확인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적 영농 여건, 재해, 폐기물 처리, 토양복구 또는 행정절차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원상회복계획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지원센터 또는 감독대행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받을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15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제재처분 등 위임 규정으로서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허가취소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기준과 절차를 정의하고 있음
 -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불이행 시 농지 훼손, 식량안보 위협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 발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처분 기준 등 규정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기준 및 절차
	내용	허가 취소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 철거·복구 범위와 방법, 원상회복 이행기간 및 원상회복 계획서 제출 의무 등 절차 구체화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위반의 자발적 시정 유도	위반사업자는 전력 판매 중단, 허가 상실 및 원상회복 비용 부담

o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수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 등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체계적 제재 처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	하위법령 반영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회의 2회 (‘26.6.12, ‘26.6.18)	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 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영농형태양광법 제13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농지보전, 식량안보 유지 및 농업인·농촌 주민의 소득 제

고 등 영농형 태양광 도입 목적 실현 가능

-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종료 또는 허가취소 이후 발전설비를 철거하고 농지를 농업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함으로써 농지와 농업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의무 불이행 등 위반행위 시 제재처분 기준은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지속 병행토록 유도하는 규정이며,
 -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충분한 철거·복구기간을 부여함 또한 계절적 영농여건, 재해, 폐기물 처리 및 토양복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지보전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원상회복명령 등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원상회복명령 등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원상회복명령 등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사업전환/승계/폐업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원상회복명령 등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원상회복명령 등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국가	원상회복 방식	내용
일본	농지법상 일시전용허가 및 재허가 관리	영농 지속을 전제로 허가, 영농상황을 지속 확인 영농의무 불이행시 설비 철거 및 농지 복원을 요구
프랑스	철거·원상회복 의무 및 금융 보증 제도	사업 종료 후 설비 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시 행정기관 대집행, 금융 보증 활용 가능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사유와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자격 정지 및 취소 규정

< 참고 : 전기사업법 제12조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참고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0 >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업자는 설비 철거, 폐기물 처리 및 농지 복구를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할 수 있고, 원상회복 비용도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측·확보할 수 있음. 기본 1년의 이행기간과 부득이한 경우의 연장기간이 있어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허가취소 등 발생 시 원상회복계획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원상회복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행정기관의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기준 설정을 위한 다수의 논의 및 연구용역 등 진행
- (전문가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등 포함한 회의 다수 개최
- (연구용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26.7월~10월)

2. 향후 평가계획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허가 및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 해당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농업인 등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
- * 수도권(화성, 안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개선 등 진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및 절차는 장기간(20년)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제재처분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 발전사업 종료 또는 허가취소 이후 발전설비가 농지에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토지를 농업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기준 및 절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발전시설 철거비용 및 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이행기간 중 지속적인 기회비용 및 고정비용의 발생이 예상됨. 또, 협동조합 구조상 원상회복 의무의 최종 책임 주체 불명확성에 따른 내부 분쟁비용 발생도 예상됨

그러나, 규제의 명확성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와 원상회복 의무가 명확히 규정·이행됨으로써 농지 소유자 및 지역사회 신뢰가 유지되어 향후 관련 사업 추진시 주민 수용성 제고로 이어져 순편익 증대가 예상됨. 또 원상회복을 통해 농지가 본래 용도로 신속히 복귀하여 농지 소유자의 향후 활용 선택지가 원복되는 자산가치 측면에서의 편익도 예상됨

따라서, 동 조문은 제재수단이라기 보다는 허가 취소 이후에 책임의 청산 절차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어 순편익 발생이 예상됨

발전시설 철거비용 및 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이행기간 중 지속적인 기회비용 및 고정비용의 발생이 예상됨. 또, 협동조합 구조상 원상회복 의무의 최종 책임 주체 불명확성에 따른 내부 분쟁비용 발생도 예상됨

그러나, 규제의 명확성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와 원상회복 의무가 명확히 규정·이행됨으로써 농지 소유자 및 지역사회 신뢰가 유지되어 향후 관련 사업 추진시 주민 수용성 제고로 이어져 순편익 증대가 예상됨. 또 원상회복을 통

해 농지가 본래 용도로 신속히 복귀하여 농지 소유자의 향후 활용 선택지가
원복되는 자산가치 측면에서의 편익도 예상됨
따라서, 동 조문은 제재수단이라기 보다는 허가 취소 이후에 책임의 청산 절
차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어 순편익 발생이 예상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기준 및 절차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원상회복명령 이행 비용
비용항목	복구 실행 비용, 원상회복계획서 작성, 책임분담 비용 등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철거 및 원상회복계획서 작성 등 복구 실행에 따른 직접비용과 명령 이행기간 중 기회비용,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며 허가취소 시점에서 담보력 부족에 따른 이행불능 리스크 측면의 비용 발생도 예상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절차적 예측가능성 및 단계적 이행절차, 토지 재활용 가능성 회복
편익항목	명확한 사전 규정에 따른 예측가능성,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따른 지역사회 신뢰 제고, 단계적 이행에 따른 부담완화 등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예측가능성 제고는 명령 이행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며 단계적 이행절차 마련으로 일괄 즉시 복구 대비 사업자의 재무적 충격을 완화해주는 편익이 예상되며, 토지의 기능성 회복과 지역사회 신뢰도 제고는 업계 전체의 사업추진 측면에서의 편익 발생이 예상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감독·조사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발전사업자 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감독 방법 및 절차 등 법제화 필요		
	7.규제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사업자에게 보고·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조사·검사를 하는 경우 그 목적·범위·기간·담당자 및 제출자료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2년마다 발전사업자의 자격·결격사유,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의 자격요건 유지, 영농활동 지속 여부,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안전 관련 검사·점검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 ○ 조사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목표: 허가 이후에도 사업자 자격과 영농·안전 관련 요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 ○ 기대효과: 무자격 사업운영 및 영농 중단 등의 위반사항을 예방·조기 발견하여 사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사전통지에 따른 대응 비용, 주기적 종합감독 대응 비용 등 직접 비용과 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 구성요건 유지를 위한 상시 비용 발생이 예상됨		

		-(편익) 사전통지를 통한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편익이 예상되며 2년 주기 감독의 정례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종합점검을 통한 개별적·산발적 조사 회피 등 편익이 예상됨 -(종합) 절차 이행으로 불가피한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감독의 예측가능성·형평성을 구조화하는 안전장치로서 순편익이 예상됨 통지받은 목적·범위·기간에 맞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통지 내용과 실제 조사 범위가 상이할 경우 추가 대응비용 발생이 예상됨. 추가로, 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구성요건 유지를 위한 상시 비용 지출도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본 조문은 사전통지를 통한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편익이 발생되며, 2년주기 정례적인 감독 및 조사로 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종합점검을 통한 산발적 조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편익이 예상됨 따라서, 감독의 시기·범위·통지방식을 구체화하는 본 조문은 발전사업자의 실질적인 비용 지출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순편익 증대가 예상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해당없음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9조(감독의 방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조사·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목적, 범위, 기간, 담당자 및 제출자료를 미리 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안전사고, 재해위험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발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3.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지역주민 조합원 10명 이상 유지 여부 4. 농업법인의 제7조 각 호의 요건 유지 여부 5. 발전사업부지의 영농활동 지속 여부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유지 여부 및 전기안전 관련 검사·점검 이행 여부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격요건 유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연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및 전자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26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방법 및 절차의 위임 규정으로서 보고·자료제출 등 구체적인 감독 방식과 사전통지·조사 등 절차를 정의하고 있음
 - 발전사업자의 영농활동 및 발전사업 등 운영 실태와 위반행위 여부 확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일적, 체계적 감독이 필수적인바, 해당 규정에 따른 감독 방법 구체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감독·조사
	내용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검사의 사전통지 원칙을 정하고, 지자체가 2년마다 자격요건 등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전국의 사업 현황과 위반 위험을 체계적 파악 가능	사업자는 자료 제출과 필요한 범위의 현장 조사에 대해 대응하여야 함

o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영농확인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방식 등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하위법령 반영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 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자격·영농·안전 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신뢰성과 농지보전 효과 등 확보 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감독 규정을 통해 운영 중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반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 대상 자격요건 및 의무위반 여부 등을 지속 점검 가능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방법은 발전사업자 대상 보고·자료제출 등 필요 최소한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발전사업자 대상 감독은 발전사업 현황 및 위반행위 여부 등을 행정청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 발전사업자는 자료제출, 조사 참여 등 최소한도의 의무를 부과하여 영농형 태양광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가능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감독의 방법 등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감독의 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감독의 방법 등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 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감독의 방법 등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감독의 방법 등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발전설비 사후관리, 영농지속 여부 등 확인을 위한 감독 방법 등 규정

일본	프랑스	독일
농업위원회가 영농활동 보고 접수 및 관리 - 영농 지속 여부, 수확량 유지, 농지 활용 상태, 설비 적정성 점검	사후관리 총괄(국토관리국), 통계 제출(에너지전환청) - 영농 인정기준 충족여부, 허가기준 준수 여부, 생산량·발전량 관리, 시설 철거 및 복구 의무 확인	연방정부지자체 허가체계로 운영 - 생산량 유지 여부, 직불금·보조금 적정성, 설비 운영 적법성 감독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은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

< 참고 : 전기사업법 제22조, 시행령 제10조 >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사실조사)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조사주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고 조사대상도 법령상 이미 준수해야 하는 자격·영농·전기안전 사항에 한정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조사 목적·범위 및 제출자료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므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자료제출, 조사·검사 및 정기 감독을 통해 사업자의 자격·준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감독인력과 행정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대규모 재정 소요 없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발전사업의 현황과 발전사업자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능한바, 공익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규정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감독·조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사전통지에 따른 대응 비용, 주기적 종합감독 대응 비용 등 직접 비용과 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 구성요건 유지를 위한 상시 비용 발생이 예상됨
- (편익) 사전통지를 통한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편익이 예상되며 2년 주기 감독의 정례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종합점검을 통한 개별적·산발적 조사 회피 등 편익이 예상됨
- (종합) 절차 이행으로 불가피한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감독의 예측가능성·형평성을 구조화하는 안전장치로써 순편익이 예상됨

통지받은 목적·범위·기간에 맞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통지 내용과 실제 조사 범위가 상이할 경우 추가 대응비용 발생이 예상됨. 추가로, 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구성요건 유지를 위한 상시비용 지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본 조문은 사전통지를 통한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편익이 발생되며, 2년주기 정례적인 감독 및 조사로 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종합점검을 통한 산발적 조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편익이 예상됨

따라서, 감독의 시기·범위·통지방식을 구체화하는 본 조문은 발전사업자의 실질적인 비용 지출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순편익 증대가 예상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감독·조사>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감독·조사 자료제출 요구 이행
비용항목	감독·조사 대응 서류작업, 인력투입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통지내용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고 실제 조사범위에 따라 대응해야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되며 장기간 발전사업 기간 동안 사업주체(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의 구성요건 유지 확인에 따른 특수 비용 발생이 예상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감독·조사 사전통지, 정례화
편익항목	발전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로 대응비용 절감, 지역적 형평성 확보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불공정성 리스크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예고없는 급작스러운 조사로 인한 업무 마비나 과도한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조사 범위가 사전에 한정되어 목적 외 자료 요구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제기 근거가 명확해지는 편익 발생도 예상됨. 또 감독·조사의 정례화로 발전사업자 입장에 대응여력이 확보되며 상급기관 보고체계로 지역 간 형평성 리스크를 낮추는 편익 발생이 예상됨